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9호 2018.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윤성환 ■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외교와 정국동향 6
황병주 ■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64
윤해동 ■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106
장인성 ■ 냉전과 일본의 자유주의
- 마루야마 마사오의 냉전자유주의와 리얼리즘 150
하종문 ■ 일본의 '교과서우익'과 전쟁 피해의 전략적 활용
-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정치권의 동향을 중심으로 188

자료소개

- 윤명숙 ■ 중국 당안관 자료 현황과 자료 해제
-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중심으로 232

서평

- 박장배 ■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읽기
- 김형중(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54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67

Contents

Articles

- Yun Seonghwan ■ Diplomacy with Tang China (唐) and Political Trends of Koguryo (高句麗) from 624 to 642 6
- Hwang Byeongju ■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rivate Property Discour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Soon After World War II: Focusing on Land Reform Policy 64
- Yun Haedong ■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ost-liberal Turn in Korean Politics: Focusing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106
- JANG In-Sung ■ Cold War Liberalism in Postwar Japan: An Interpretation of Maruyama Masao’s Realistic Liberalism 150
- Ha Jongmun ■ “Textbook Right-wing” and Strategic Use of War Damages: Focussing on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Descriptions and Political Trends 188

Introduction to Documents

- Yun Myungsuk ■ An Introduction to the Bibliography of ‘Comport Women’ in the Archives of ‘Dang An Guan’ 232

Book Review

- Park Jangbae ■ Review of *A study on the Joint-Investigations of Korea-China Borders in the 1880s*: Kim Hyoungchong(2018),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54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외교와 정국동향

윤성환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 I. 머리말
- II. 624~631년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과 성격
- III. 영류왕 말기 대당외교 재개의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구려사에서 영류왕(榮留王)의 재위기간은 642년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영류왕과 대신(大臣) 1백여 명이 피살된 이 사건은, 7세기 고구려사의 향방을 규정지은 ‘정치적 사건’이자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사건’이기도 했다. 정변 직후 고구려의 권력향방과 정치운영은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는 당시 격동의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고구려의 위상과 연결되어 국제적 파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당시 고구려 침공을 구상하고 있던 당(唐) 태종(太宗)은 정변 직후 고구려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당장 사절단을 파견하고, 이어 향후의 대고구려정책 기초를 논의했다.¹

이에 전통시대 이래 많은 지식인·연구자들이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 결과와 의미, 그리고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런 가운데 일견 돌발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논의가 특히 활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변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구려 말기의 정치체제에 주목하는 견해가² 있는 반면, 대당정책(對唐政策)을 둘러싼 영류왕과 연개소문 가문 간의 노선 대립을 상정하거나,³ 전통적 귀족세력(국내성계 귀족세력)과 신흥 귀족세력(평양계 귀족세력) 또는 귀족세력과 왕권 간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상정한

* 투고: 2017년 8월 28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18년 3월 2일

1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2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3 이에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대당관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정변의 主的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정변의 단기적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일제 식민지 시기 申采浩의 연구가 대표적이라면, 후자는 노태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견해들이 제기되었다.⁴ 그리고 이러한 원인 설정에 따라 정변의 의미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졌다. 예컨대 대당정책을 둘러싼 노선 대립에서 정변의 원인을 찾은 경우, 영류왕과 연개소문을 각각 대당온건파와 대당강경파로 지목함으로써 정변이 지닌 자주적 의의를-민족사적(民族史的) 입장에서- 강조하였다.⁵ 반면 정변의 원인을 정치적 대립에서 찾은 경우 정변의 수구성(守舊性)을 지적하거나⁶ 새로운 권력집중체제의 성립으로 파악하였다.⁷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연구들은 영류왕대 정치·외교사를 연개소문 정변의 원인 규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영류왕대 고구려인들은 주도적(主導的) 행위자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근래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영류왕대를 전문(專論)한 논고가 다수 발표되었지만,⁸ 이 시기 대당정책의 실상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 대당정책 노선을 둘러싼 ‘강경(倥)’과

-
- 4 김영하,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한국사연구』 110; 임기환, 2004, 앞의 책.
 - 5 신채호와 북한 학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 6 김기흥, 1992,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 7 李成市, 1993, 「高句麗泉蓋蘇文의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이 경우 이러한 권력집중이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전반적 흐름이었음에도 주목하는데, 이는 주로 일본 학계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연개소문의 정변 역시 7세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쿠데타 및 권력집중화의 연쇄’라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사건이다(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請田正幸, 1979, 「高句麗莫離支考」,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朝鮮歷史論集』 上, 龍溪書舍). 그러나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권력 집중화의 계기·내용·수준·결과가 저마다 상이했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선봉조, 2009, 「榮留王代 政局主導權의 變化樣과 淵氏勢力」, 『고구려발해연구』 33; 방용철, 2011, 「高句麗 榮留王代의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대구사학』 102; 정원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최호원, 2013, 「연개소문의 정변과 高句麗·新羅 關係」, 『사총』 80; 김지영, 2014,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온건(溫)의 이분법적 구도로 이 시기를 설명한 기왕의 담론 역시 일부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당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다. 기실 630년 동돌궐 멸망 이전까지 동아시아 정세는 유동적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고구려인들의 욕망·공포·관념·상황판단·행위 그 자체일 터이다. ‘강경’과 ‘온건’의 프레임은 그러한 고구려인들의 고민을 다 담아내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류왕대 대당관계상에서 나타난 개별 사건들의 의미 규명에 주력함으로써⁹ 당시 고구려가 주도했던 대당외교의 실상과 흐름을 잡고, 그것이 642년 정변 전야 고구려 정국(政局)에서 갖는 의미를 복원하려 하였다.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II. 624~631년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과 성격

1. 624~627년 고구려의 대당외교와 당의 대고구려정책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624년 1월, 당의 삼국왕(三國王) 동시 책봉을¹⁰ 계기로 비로소 ‘조공책봉관계(朝貢冊封關係)’의 외형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당은 고구려왕을 정2품의 ‘상주국(上柱國)’에, 백제·신라왕을 종2품의 ‘주국(柱國)’에 책봉해 걸음으로는 고구려의 우위를 인정했으나¹¹ ‘삼국왕 동시 책봉’은 고대(古代) 한중관계사에서 일찍이 유례가 없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9 단, 글쓴이는 일전에 624년 고구려와 당이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경위를 고찰한 바 있으므로(윤성환, 2013,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 이 글에서는 624년 이후부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642년까지를 대상으로 양국관계의 전개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10 『舊唐書』 卷1, 本紀 第1 高祖 武德 7年 春正月;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9 封冊2 武德 7年 正月.

11 여호규, 2006,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48쪽.

것이였다. 이는 향후 당의 대삼국정책(對三國政策)이 ‘삼국 간 역학관계’에 유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625년과 626년 백제와 신라가 각기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자국의 대당통교를 차단한다며 호소한 사실은¹²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당의 정책기조는 아직 확정된 방침하에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당 조정 내에서 대고구려정책 방침이 결정된 시점은 625년 3월 11일이었던 것이다.¹³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에 고려가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高祖가 群臣들에게 “명분과 실제의 사이는 모름지기 이치가 부합하여야 한다. 고려가 隋에 稱臣하였으나 끝내 煬帝를 거역하였으니 어찌 신하였다고 하겠는가? 짐은 만물의 존경을 받으나 驕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土宇에 살며 인민이 함께 편안하는 데 힘을 뿐, 어찌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칭신케 하여서 존대함을 자처하겠는가? 즉시 詔書로 짐의 이러한 뜻을 조술하라”고 말하였다. 溫彥博이 말하기를, “遼東의 땅은 周代에 箕子の 나라였고 漢代에는 玄菟郡이었을 뿐입니다. 魏·晉 이전에는 영역 안에 가까이 있었으니 不臣을 허락해선 안 됩니다. 만약 고려와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면 (=抗禮) 四夷가 어찌 (중국을) 우러러 보겠습니까? 또한 중국은 태양과 같고 夷狄은 못벌에 비유할 수 있으니 이치상 존엄함을 낮추어 夷狄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조가 이에 (조서를) 중지하였다.¹⁴

1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7年;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7年.

13 『唐會要』卷95, 高句麗 武德 8年 3月 11日.

14 『舊唐書』卷61, 列傳 第11 溫大雅 子 無隱 大雅 弟 彥博. “時高麗遣使貢方物 高祖謂羣臣曰 名實之間 理須相副 高麗稱臣於隋 終拒煬帝 此亦何臣之有 朕敬於萬物 不欲驕貴 但據土宇 務共安人 何必令其稱臣以自尊大 可即為詔 述朕此懷也 彥博進曰 遼東之地 周為箕子之國 漢家之玄菟郡耳 魏晉已前 近在提封之內 不可許以不臣 若與高麗抗禮 則四夷何以瞻仰 且中國之於夷狄 猶太陽之比列星 理無降尊 俯同夷貊 高祖乃止.”

종래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두고 당 고조의 고구려 인식이나, 이른바 ‘군현 회복론(郡縣回復論)’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¹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 기록이 전하는 당 조정 내 회의의 성격일 것이다. 우선 이 기록에는 고조의 의견에 반대한 인물로 온언박만 적기(摘記)되어 있지만, 『구당서』 고려전(高麗傳)에서는 시중(侍中) 배구 역시 중서시랑(中書侍郎) 온언박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한다.¹⁶ 여기서 배구는 이미 수대(隋代) 양제(楊帝)의 사이경략(四夷經略) 구상에 발맞춰 주변국에 대한 정보를 널리 수집한 후 『서역도기(西域圖記)』 『고려풍속(高麗風俗)』을 저술했을¹⁷ 뿐만 아니라 607년 양제의 동돌궐 순행 당시 고구려 공격을 주장한 ‘대외경략(對外經略) 전문가’였다. 온언박 역시 오랫동안 국내의 기밀(=정보) 업무를 관장한 인물로¹⁸ 그가 장관이었던 중서성(中書省)은 기밀을 다루는 관사였다.¹⁹ 그런 탓에 중서시랑은 당제(唐帝)의 외국 사절단 접견시 사절단의 국서(國書)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황제에게 아뢰는 역할도 수행하였다.²⁰ 이와 같은 배구 및 온언박의 역할과 비중으로 볼 때 위 기록이 전하는 회의 모습은²¹ 향후 대고구려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15 김기홍, 1992, 앞의 논문, 23쪽; 여호규, 2006, 앞의 논문, 47~48쪽;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74~75쪽; 김수진, 2008, 「수·당의 고구려실지론과 그 배경」, 『한국사론』 54, 88~89쪽; 선봉조, 2009, 앞의 논문, 99쪽; 김지영, 2014, 앞의 논문, 90~92쪽.

16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17 김수진, 2008, 앞의 논문, 84~85쪽; 이정빈, 2015, 「607년 고구려 동돌궐 교섭의 배경과 목적」, 『역사학보』 225, 9~12쪽.

18 『資治通鑑』 卷195, 唐紀11 太宗 貞觀 11年 6月. “右僕射虞恭公溫彥博 彥博久掌機務 知無不為.”

19 『資治通鑑』 卷193, 唐紀9 太宗 貞觀 3年 4月. “上始御太極殿 謂羣臣曰 中書·門下 機要之司……”

20 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81쪽.

21 이하 625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이 회의를 ‘3·11 회의’라 略稱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당이 대내외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새삼 이때 이러한 회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해 위 기록의 밑줄 친 구절이 크게 주목되는바, 이로부터 ‘3·11 회의’ 이전 입당(入唐)한 고구려 사절단이 그러한 논의를 촉발했을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현전기록상 625년 3월 11일 직전에 입당한 고구려 사절단은 624년 12월의 견당사였다.²³ 624년 1월 당이 고구려왕을 책봉했던 만큼, 같은 해 12월에 입당한 고구려 사절은 당의 책봉에 대한 사은사(謝恩使)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일 뿐이었고, 이들의 실질적인 임무는 이제 외형상 조공책봉관계의 형식을 갖춘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율이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양국관계에서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을, 향후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구성해나갈 것인가라는 의제를 고구려 측에서 먼저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무렵 고구려가 백제·신라의 대당통교를 방해한 사실과 더불어, 당 건국(618) 이후 624년 정월 이전까지 양국이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예외적 상태로서 상호 대등(對等)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²⁵ 상기해보면 이 같은 추정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위 기록에서 전하는 ‘3·11 회의’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3·11 회의’의 핵심 쟁점은 고구려와 ‘실질적 대등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는 역으로 624년 12월 견당사를 통해 고구려가 제기한 외교현안과 입장을 가늠

22 한편, ‘3·11 회의’의 계기를 두고 624년 무렵에 이르러 당이 군용세력 대부분을 진압해 대외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여건이 마련된 점과 이 시기 당 조정 내부의 遷都 논의에 주목한 견해(김진한, 2009, 앞의 논문, 324쪽)가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당은 압도적인 역량을 지닌 동돌궐의 끊임없는 侵寇로 인해 그에 대처하기에도 벅찬 형편이었다. 그런 속에서 당 조정의 대외적 관심이 625년 3월에 이르러 고구려로 향하고 있음은, 그 이유를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23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3 武德 7年 12月.

24 권덕영, 1997, 앞의 책, 12쪽.

25 윤성환, 2013, 앞의 논문, 120쪽; 이정빈, 2016, 「고구려-당 관계의 성립과 변경지대(618~624)」, 『고구려 발해연구』 54, 73~74쪽.

케 하는 바, 아마 고구려는 당에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먼저 요청했던 만큼²⁶ 622년 당 고조가 고구려에 보낸 국서에서 표방했던 평화공존의 기초를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직후인 624년 12월의 시점에서 재확인해줄 것을 희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622년 당시 당 고조의 국서는 양국 간 포로교환을 제안하는 한편, 이전의 수(隋)와 달리 고구려의 역사성과 요동지역에 대한 고유의 통치권을 존중하고 교빙과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이 평화를 유지해 각자의 강토를 보전하자는 지향을 담고 있었다.²⁷ 따라서 고조가 군신들에게 자신의 뜻을 조서로 발표하게 한 것도 이러한 고구려 측의 기대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삼국(三國)의 견당사가 2~3개월 정도 장안(長安)에 체류한 사실을 고려하면, 625년 3월 11일의 시점은 624년 12월에 입당한 고구려 사절이 귀국길에 오르려고 하거나 귀국한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고조가 발표하려 한 조서는 고구려에 전달하려던 용도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의 기대는 결국 고조가 배구와 온언박의 의견을 향후 대고구려 정책 기초로 수용하며 관철되지 못하였다. 배구와 온언박의 의견은 고구려를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닌 변경의 위협요소로 대상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당이 고구려와 실질적 대등관계를 유지해나갈 경우 변경(邊境)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연쇄 현상이 빚어질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는 변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향후 국가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신생국가 당의 불안감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자,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특히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변경지역에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역량과 위상을 웅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른바 ‘군현회복론(郡縣回復論, 또는 四郡舊地論)’의 본질은 온언박의 언급으로 미루어볼 때 변경의 불안요소(=고구려)를 ‘위협’이라 지목

26 윤성환, 2013, 위의 논문, 95~101쪽.

27 『舊唐書』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5年.

하지 않고 ‘역사적 회복의 대상’으로 호도한 담론에 불과했다.²⁸

여하간 이로써 당 초기 대고구려 정책이 내포한 유동성은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공세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흔히 당의 고구려정책 기조가 당(唐) 태종(太宗) 즉위(626)나 동돌궐 병탄(630)을 계기로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²⁹ 이처럼 그 씨앗은 이때 배태된 셈이다. 곧이어 당 고조는 동·서돌궐 간 대립을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으로 활용하면서 대(對)동돌궐 노선 역시 공세적 방향으로 수정하였다.³⁰ 그리고 이러한 당의 대고구려 정책 기조 변경은 곧 현실화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625년 11월 신라와 백제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잦은 침입과 대당통교 방해를 호소했던 바,³¹ 이에 대한 당의 대응은 주자사(朱子奢)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삼국에 파견해 삼국 간 화해를 권유한 것이었다.³² 이는 ‘삼국왕(三國王)을 동시 책봉한 책봉국(冊封國)’인 당의 위

28 수·당의 對고구려 ‘郡縣回復論’과 관련해서는 군현회복론이 제기된 배경으로 고구려의 大凌河 유역 진출에 주목하거나(윤용구, 2005a,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북방사논총』 5) 그것이 지닌 漢 繼承論的 의미를 지적한 연구(김수진, 2008, 앞의 논문), 그리고 대외전쟁의 명분으로서 주목한 연구(이기천, 2016, 『7世紀 初唐의 對外戰爭 名分과 國際秩序』, 『중국고중세사연구』 39)가 있다.

29 방용철, 2011, 앞의 논문, 40쪽; 김지영, 2014, 앞의 논문, 93~94쪽.

30 『資治通鑑』 권191, 당기7 고조 무덕 8년 4월·7월 종합.

3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7年;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7年;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朝貢3 (武德) 8年 11月 종합. 여기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백제가 626년 唐에 明光鎧를 바치고 고구려의 朝貢路 차단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책부원귀』에 따르면 625~626년 入唐한 백제 사절단은 총 2회였다(625년 11월과 626년 12월). 그런데 당의 주자사 파견은 626년이었으므로 626년 12월에 입당한 백제 사절이 고구려의 조공로 차단을 호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625년 11월 신라와 함께 입당한 백제 측 견당사의 호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삼국사기』의 연대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책부원귀』에 따르면 백제가 당에 明光甲을 전달한 시점 역시 624년 9월이었다.

32 당 측의 자료에는 626년 주자사를 삼국에 파견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8年 조에 따르면 주자사가 신라에 도착한 시점은 이 해 7월이었다. 한편, 『구당서』 주자사 열전에는 貞觀 初 고구려와 백제가 수년 동안 신라를 공격했고, 이에 신라가 당에 위급함을 호소하자 당이 주자사를 삼국에 파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기록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부합되지 않고 후대의

상을 환기시키며 고구려의 ‘항례(抗禮, =대등관계)’를 불허하는 의사표현인 동시에 백제·신라의 대당통교를 방해한 고구려를 질책하는 대신, ‘삼국 간 화해 권유’라는 모호한 방식을 택한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당의 주자사 파견은 ‘3·11 회의’의 결정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고구려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돌궐의 강세가 여전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현무문(玄武門)의 변(變)’을 겪으며 안정을 되찾지 못했던 이 시기 당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아직 당의 상황은 유동적이었던 것이다. 뒷날 당 태종이 군사정보를 다루는 직책인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파견한 것과³³ 달리, 이때는 유학자(儒學者) 출신의 주자사를³⁴ 파견한 것 역시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때 당은 명목상으로나마 ‘삼국을 동시 책봉한 책봉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고구려가 ‘형식상의 칭신(稱臣)’만큼은 유지해줄 것을 목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실 당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삼국 간 쟁투를 막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었을 뿐더러 주자사가 귀국한 뒤에도 삼국 간 상쟁(相爭)이 지속된 사실 역시 이를 반증한다. 또한 당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조공책봉관계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놓기 위한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주자사의 요구를 수용하고 신라 사신과의 회맹(會盟)을 약속한³⁵ 고구려 역시 이 점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명목상의 칭신’을 대당외교에서의 가용(可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아 미래에 대비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실제 598년 고구려는 침입해

윤색이 가해진 서술이라 여겨진다(윤성환, 2011a,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23쪽의 註47 참조).

33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4年.

34 『舊唐書』 卷189上, 列傳 第139上 儒學 上 朱子奢.

35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한편, 『舊唐書』 朱子奢 열전에는 주자사의 삼국 순회를 계기로 三國王이 모두 당에 表文을 올려 사죄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8年(626) 條에는 주자사의 신라 방문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 진평왕이 당에 표문을 보내 사죄했다는 내용은 없다.

은 수군(隋軍)의 철군(撤軍)을 유도하기 위해 청신한 바 있었다.³⁶

이처럼 양국은 끝내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을 차후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구성해나갈지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 모두 어디까지나 조공책봉의 형식을 향후에 대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확인했을 뿐이었다.³⁷ 이는 양국이 서로를 ‘잠재적 위협요소’로 대상화하며 상호 불신(不信)을 떨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622년 당 고조가 천명한 양국 간 평화공존의 정책 기초를 조공책봉관계의 수립을 통해 못 박으려 했던 영류왕의 기대는³⁸ 이로써 무위에 그쳤다. 627년 영류왕이 건당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북방 유목세계의 패자(覇者)로 당을 압도하던 동돌궐이 627년경부터 급속도로 붕괴하면서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당의 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의 대당(對唐) 봉역도(封域圖) 전달과 천리장성(千里長城) 축성이 각별히 주목된다.

2. 대당 봉역도 전달과 천리장성 축성의 성격

『삼국사기』 영류왕 본기(本紀)에 이런 기록이 있다.

11년(628) 가을 9월, 唐에 사신을 보내 太宗이 突厥의 頡利可汗을 사로잡은 사실을 축하하고 겸하여 封域圖를 바쳤다.³⁹

36 『隋書』 卷81, 東夷列傳 第46 高麗.

37 이는 조공책봉관계의 수립이 곧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의 구성은 결국 당사국들의 몫이었던 점을 보여준다. 즉,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의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의 여부는, 책봉국과 被책봉국의 상호관계 및 대내외상황·국력 등의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38 윤성환, 2013, 앞의 논문, 132~135쪽.

3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1年.

즉, 628년 9월(→시점) 고구려가 당 태종의 돌궐 격파를 축하해(→계기) 자국의 영토를 그린 지도로 여겨지는 봉역도를 당에 전달했다는(→행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위 기사는 중국 측 자료인 『舊·新唐書』高麗傳(계기·행위)과 『冊府元龜』卷970, 外臣部 朝貢3 貞觀 2年 9月 條의 해당 기사(시점)를 서로 착종시켜 조합한 것이다.⁴⁰ 그리하여 기록의 연대와 전승 내용 사이에 모순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당이 동돌궐을 격파해 힐리가한을 생포한 시점은 630년이었던 것이다.⁴¹ 따라서 고구려가 당의 동돌궐 격파를 축하하여 ‘628년 9월’ 봉역도를 전달했다는 이 기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마 봉역도 전달 시점을 628년으로 기록한 『구당서』고려전과 달리, 『신당서』고려전에서는 이 사건의 연대를 기록하지 않은 채 얼버무린 것도⁴² 이러한 모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종래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당에 봉역도를 전달한 시점을 두고 위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628년으로 서술하거나⁴³ 당의 동돌궐 격파 시점을 중시해 630년으로 추정해왔다.⁴⁴ 그러나 어느 쪽이건 이에 대한 면밀한 고증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책부원

40 이강래, 2016, 「경험과 역사」, 『한국사연구』 173, 356~357쪽.

41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 下 貞觀 4年; 『資治通鑑』卷193, 唐紀9 太宗 貞觀 4年.

42 『舊唐書』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貞觀二年 破突厥頡利可汗 建武遣使奉賀 并上封域圖.”;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太宗已禽突厥頡利 建武遣使者賀 并上封域圖.”

43 서영수, 1987, 「삼국시대 한중외교의 전개와 성격」,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142쪽; 이호영, 2003,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편, 126쪽;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64쪽; 김진한, 2009, 앞의 논문, 328쪽; 방용철, 2011, 앞의 논문, 40쪽; 우석훈, 2014,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군사』 92, 109쪽. 한편, 629년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58~59쪽.

44 김용만, 2003,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54쪽; 임기환, 2006, 앞의 논문, 75~76쪽; 선봉조, 2009, 앞의 논문, 101~102쪽.

귀』가 원전(原典)으로 보이는, ‘628년 9월’이라는 연대가 그 자체 오기(誤記)이고, 고구려가 당에 봉역도를 전달한 실제 시점은 630년일 가능성이 있다. 기실 중국 측 사서의 연월일(年月日) 표기 오류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이 점에서 『책부원귀』 역시 예외는 아닐 터이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구당서』 고려전 역시 대당 봉역도 전달 시점을 628년으로 기록한 점이다. 또 630년의 경우 고구려가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책부원귀』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⁴⁵ 배제할 수 없지만, 현전기록상 고구려는 629년 9월을 끝으로 10년 후인 639년 대당외교를 재개할 때까지 견당사 파견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구당서』와 『책부원귀』 모두 봉역도 전달의 계기를 어디까지나 당의 돌궐 ‘격파(=破)’라고 전한 점이다. 이 점은 힐리가한의 ‘생포(=禽)’를 봉역도 전달의 계기로 적시한 『신당서』와 다르다.⁴⁶ 즉, 후자를 따를 경우 고구려의 봉역도 전달 시점은 630년으로 고정되지만, 전자에 충실할 경우 628년 9월 이전의 가까운 시기에 당이 돌궐을 격파한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고구려의 봉역도 전달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628년 9월 이전 당이 돌궐을 격파한 사실이 있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수(隋)·당(唐) 교체기를 틈타 굴기하던 동돌궐은 당 건국 이래 끊임없이 당을 침구(侵寇)했던 바,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626년까지 이어졌다. 동돌궐의 세력은 627년 들어 약화되기 시작했지만, 628년 9월 이전까지 당이 동돌궐을 격파한 사실은 현전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혹자는 626년 장안 부근의 위수(渭水)까지 진출한 돌궐군(軍)을 이세민(李世民)이 나서

45 주변국의 朝貢 관련 사실을 매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3을 살펴보면, 유독 정관 4년(630)의 해당 기록이 부실하다. 그러므로 630년 고구려가 당에 조공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기록상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6 이강래, 2016, 앞의 논문, 357쪽.

물러가게 한 ‘편교(便橋)의 맹(盟)’에 주목하기도 하나⁴⁷ 실상 ‘편교의 맹’은 뒷날 당 태종이 이를 두고 ‘치욕’이라 언급한 사실에서 드러나듯 당 측의 과장된 기록 일 뿐이다.⁴⁸ 따라서 628년 9월 이전 당이 돌궐과 싸워 승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628년 9월 고구려가 당에 봉역도를 전달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 ‘계기’가 당의 돌궐 격파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실제 이 역시 중국 측 기록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631년 고구려는 천리장성 축성을 결정했던 바, 그 계기에 대해 중국 측 기록들은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당의 ‘고구려 경관(京觀) 파괴 사건’을⁴⁹ 적기하고 있다.⁵⁰ 『삼국사기』 역시 이러한 기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성 결정 시점은 631년 2월로서⁵¹ 경관 파괴 사건 이전의 일이었다. 따라서 양자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볼 때 봉역도 전달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⁵² 만큼 적어도 628~630년 사이 당의 돌궐 격파에 필적할 만하고, 고구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당이 유발했다면 봉역도 전달의 계기로 주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현전기록을 부정할 채 그러한 계기를 찾을 경우 자칫 자의적인 비정(比定)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현전 기록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재해석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봉역도 전달 시점과 관련해 『책부원귀』와 『구당서』 고려전의 관련 기록과 대조해볼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당대(唐代) 관련 자

47 권덕영, 1997, 앞의 책, 12쪽의 註7.

48 『新唐書』卷93, 列傳 第18 李靖. “帝曰 …… (李)靖以騎三千 蹀血虜庭 遂取定襄 古未有輩 足澡吾渭水之恥矣.”

49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 下 貞觀 5年 秋8月.

50 『舊唐書』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51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4年. “唐遣廣州司馬長孫師 臨瘞隋戰士骸骨 祭之 毀當時所立京觀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52 전해중, 1987, 「韓中朝貢關係概觀」,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70쪽.

료 중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통전(通典)』과 『당회요(唐會要)』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관련 기록이 없는 현재로서는 1차 자료 검토를 통한 더 이상의 논의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처럼 현전자료만으로는 봉역도 전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봉역도 자체의 성격과 그것의 전달이 지닌 의미에 대해 좀 더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관련 기록이 워낙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봉역도 전달의 시점 역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봉역도에 관한 기왕의 견해부터 검토해보자.

고구려가 당에 전달한 봉역도는 자국의 지리 정보가 담긴 지도(地圖)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그간 봉역도 전달의 의도를 둘러싼 논의 역시 분분하였다. 봉역도가 담았던 지리 정보의 구구성 여부를 둘러싼 견해부터 엇갈리고 있으며⁵³ 봉역도 전달의 의도를 둘러싼 견해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외교적 유화책으로 보는 견해가⁵⁴ 다수인 가운데 국경 획정이나⁵⁵ 고구려 세력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⁵⁶ 당에서 고구려 영역을 보장받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⁵⁷ 동돌궐을 견제하고자 했던 고구려의 속내가 반영된

53 봉역도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선봉조, 2009, 앞의 논문, 102쪽) 형식적이고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손영종, 1997, 『고구려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89쪽]도 있다. 손영종과 유사한 견해는 남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김용만, 2003, 앞의 책, 54쪽).

54 서영수, 1987, 앞의 논문, 142쪽; 김영하, 2000, 앞의 논문, 32쪽; 김은숙, 2007, 앞의 논문, 64쪽; 방용철, 2011, 앞의 논문, 40~41쪽; 방용철, 2015, 앞의 논문, 164쪽.

55 김용만, 2003, 앞의 책, 40쪽.

56 임기환, 2006, 앞의 논문, 76쪽; 윤성환, 2011b, 「영류왕, 대당은건파로 꺾맞춰진 오류」, 『내일을 여는 역사』 44, 279쪽; 정원주, 2011, 앞의 논문, 21~22쪽; 우석훈, 2014, 앞의 논문, 109쪽.

57 서병국, 1997, 『고구려제국사』, 해안, 240~242쪽; 선봉조, 2009, 앞의 논문, 101~102쪽; 여호규, 2016,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삼국의 대응」,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4, 경상북도, 79쪽.

것,⁵⁸ 당의 선(先)요청에 따라 고구려가 봉역도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견해⁵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 봉역도 전달을 당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보아⁶⁰ 비굴한 굴종적 행위로 평가하거나⁶¹ 정반대로 고구려의 자주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도⁶² 있다. 이 같은 평가에는 민족주의적 감성과 욕망이 짙게 깔려 있다.

문제는 기왕의 논의들이 봉역도 자체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생략한 채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예컨대 ‘외교적 유화책’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이 시기 고구려가 외교적 유화책의 방법으로 굳이 봉역도 전달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봉역도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봉역도 전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봉역도 자체가 담고 있던 정보일 것이다. 과연 봉역도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었을까? 고구려의 기밀이라 할 수 있는 산천(山川)·도로·성곽 등의 지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되는 대상은, 641년 당사(唐使) 진대덕(陳大德)이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 의지에 따라 고구려를 염탐한 뒤 저술한 『고려기(高麗記)』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고려기』 일문(逸文)이 『한원(翰苑)』에 전하는바, 이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지리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다. 요서(遼西) 동남부의 요택(遼澤) 지대를 비롯해 요동 일대의 주요 성곽 및 평양에 이르는 지역에 걸친 지형·지세·교통로·거리·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특산물·지명의 유래·역사·전설 등 인문지리 정보까지 총망라해 기록하고 있다.⁶³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58 김진한, 2009, 앞의 논문, 326쪽.

59 이호영, 2003, 앞의 논문, 126쪽. 그러나 이 견해는 현전기록상의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론에 그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

60 李殿福·孫玉良 共著, 강인구·김영수 共譯, 2005, 『중국학자가 쓴 고구려사』, 학연문화사, 158쪽.

6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5쪽; 손영중, 1997, 앞의 책, 189~190쪽.

62 서병국, 1997, 앞의 책, 240~241쪽.

63 『翰苑』 蕃夷部 高麗. 관련 연구로는 방향숙, 2008,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

역으로 해석한다면, 봉역도가 구체적인 기밀 및 지리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봉역도에 자세한 지리 정보가 담겨 있었다면, 굳이 당 태종이 진대덕을 고구려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케 할 필요가 있었을까?⁶⁴

봉역도가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었던 점은, “봉역도”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정사(中國正史) 25사(史) 전체를 검색한 결과, “지도(地圖)”는 빈번히 나타나지만, “봉역도(封域圖)”라는 용어는 고구려 영류왕이 당에 전달한 사례가 유일했다. 이 역시 봉역도를 일반적인 지도로 볼 수 없게끔 한다. 또 훗날 당이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봉역도를 활용했다는 기록 역시 전혀 없다. 아울러 전술한대로 당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했던 고구려가 비록 유화적 대당정책 기조를 견지했을지라도, 자국의 기밀정보를 당에 넘겨주었다고 상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봉역도는 손영종의 지적처럼 “실효가 없는 형식적 지도”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고구려가 봉역도 전달을 통해 당과 국경 획정을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담지 않은 봉역도를 두고 영토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역도 전달의 의미는 영토적 의미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것이 ‘상징적 외교행위’였다는 점이다. 즉, 봉역도 전달은 양국 간 ‘외교적 차원의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대당 봉역도 전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고구려 집권층이 봉역도 전달을 ‘대당전쟁(對唐戰爭) 예방책’으로 여기지 않은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는 종래 고구려 세력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 당에서 고구려 영역을 보장받고 양국 간 충돌을 예방하려 했다는 견해 역시 따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기실 봉역도 전달을 통해 고구려 세력권의 범

句麗戰 전략 수립 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19, 314~317쪽이 있다.

64 기왕에도 이와 같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만, 2003, 앞의 책, 54쪽 참조.

위를 천명하더라도, 그것이 고구려의 안위를 당이 보장해줄 필연적 계기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고구려 집권층은 봉역도 전달을 통해 당에서 무언가를 기대했다기보다, 고구려 측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적극적 외교행위’를 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이제 이상과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봉역도를 당에 전달한 고구려의 의도를 추적해보자.

이와 관련해 현전기록에서 봉역도 전달의 계기로 ‘돌궐’을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봉역도 전달의 계기를 ‘당의 돌궐 격파’로 보기에는 연대가 맞지 않지만, 이는 대당 봉역도 전달이 돌궐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돌궐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6년까지 사실상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동돌궐의 세력은 627년에 접어들어 급전직하(急轉直下)하기 시작했는데, 힐리가한이 등용한 호인(胡人)들에 의한 내정(內政)의 난맥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때마침 대설(大雪)이 내려 해마다 대기근이 발생했음에도 가혹한 수탈과 병력 동원은 중단되지 않았고, 이는 설연타(薛延陀)·회홀(廻紇) 등 철록(鐵勒) 제부(諸部)의 이반(離叛)을 초래했다. 설연타가 북방 초원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때부터였다. 이런 와중에 힐리가한과 돌리가한(突利可汗)은 서로 반목하여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을 이루었고, 급기야 힐리가한은 당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당과의 국경에서 ‘위장 군사훈련’을 펼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 조정 내에서는 동돌궐이 향후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여 토벌론(討伐論)이 대두하기 시작했다.⁶⁵ 628년에는 돌리가한이 힐리가한을 쳐줄 것을 당에 요청하였고⁶⁶ 당 태종은 동돌궐 정벌 의사를 피력했다.⁶⁷ 이제 당의 돌궐 공격은 시간문제였다.

65 이상의 내용은 『資治通鑑』 卷192, 唐紀8 太宗 貞觀 元年; 『舊唐書』 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 『新唐書』 卷215上, 列傳 第140 突厥 上 종합.

66 『舊唐書』 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

67 『資治通鑑』 卷193, 唐紀9 太宗 貞觀 2年 9月 己未.

629년에는 힐리가한이 당에 칭신(稱臣)하기에 이르렀다.⁶⁸

중요한 점은 이처럼 돌궐의 세(勢)가 이완되면서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이해 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던 요서지역(遼西地域) 제 종족(諸種族) 역시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먼저 그동안 돌리가한이 관장하던 해(奚)와 습(霫) 수십여부(部)가 628년 초 돌궐을 배반하고 당에 귀부했다.⁶⁹ 해와 습은 돌궐과 거란·말갈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였으므로⁷⁰ 이들의 동향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말갈(靺鞨)이, 4월에는 거란(契丹)이 각각 당에 내속(內屬)하였다.⁷¹ 이들은 그동안 동돌궐에 예속되어 있던 부락들이었다.⁷² 당 태종은 629년 12월 말갈이 사신을 보내오자 “멀리서 말갈이 온 것은 대개 돌궐이 이미 복종했기 때문”이라 발언했는데⁷³ 이는 동돌궐의 세력 약화가 초래한 요서지역과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즉, 동돌궐의 약화로 인해 북방 초원지대에서는 설연타가, 그 아래쪽 요서지역에서는 당의 구심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요서지역 제 종족의 동요가 연쇄

68 『舊唐書』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

69 『資治通鑑』卷192, 唐紀8 太宗 貞觀 2年 4月, “初 突厥突利可汗建牙直幽州之北 主東偏 奚霫等數十部多叛突厥來降 頡利可汗以其失衆責之.”

70 『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奚國 …… 東接契丹 西至突厥 南拒白狼河 北至霫國”, “霫 …… 東接靺鞨 西至突厥 南至契丹 北與烏羅渾接.”

71 『舊唐書』卷2, 本紀 第2 太宗 上 2月 丙戌·4月 丙申; 『資治通鑑』卷192, 唐紀8 太宗 貞觀 2年 4月.

72 『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契丹, “本臣突厥 好與奚鬪 不利則遁保青山及鮮卑山.” 한편, 거란이 당에 귀부하자 힐리가한은 그동안 보호하고 있던 隋末의 群雄 梁師都를 당 측에 거란과 맞바꿀 것을 요청했던바(『資治通鑑』卷192, 唐紀8 太宗 貞觀 2年 4月, “丙申 契丹酋長帥其部落來降 頡利遣使請以梁師都易契丹”) 이 사실 역시 이때 당에 귀부한 거란이 그 이전 돌궐에 신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말갈의 경우 돌궐과 고구려에 각각 신속되어 있었던바(『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靺鞨, “東至於海 西接突厥 南界高麗 北鄰室韋 其國凡為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628~629년 당에 遣使한 말갈족 역시 돌궐에 신속되어 있던 부락이었을 것이다.

73 『資治通鑑』卷193, 唐紀9 太宗 貞觀 3年 12月 壬午, “靺鞨遣使入貢 上曰 靺鞨遠來 蓋突厥已服之故也.”

적으로 일어나자 당은 620년대 후반 영주도독(營州都督)으로 하여금 동이교위(東夷校尉)를 겸하게 하였고⁷⁴ 동돌궐 병탄 이후인 630년 8월에는 영주도독 설만숙(薛萬淑)이 거란 추장 탐몰절(貪沒折)을 내세워 동북(東北) 제이(諸夷)에 유세했던바, 이로 인해 해·습·실위(室韋) 등 10여 부가 당에 내부(內附)하기에 이른다.⁷⁵ 이처럼 이 시기 거란족의 경우 당으로의 경사(傾斜)가 상당히 진척된 듯하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거란 사회 전체가⁷⁶ 당에 경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⁷⁷ 이 점은 다른 종족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요서 일부지역에 대한 기존 고구려의 영향력이 최후까지 유지될 수 있

74 윤용구, 2005b,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역사와현실』 55, 86~88쪽. 한편, 같은 논문에서는 당이 629년 동이교위를 復設했다고 서술하였으나(해당 글에서는 그 시점을 628년으로 서술하기도 하여 혼동을 빚고 있다) 현전기록상 당이 영주에 동이교위를 복설한 시점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舊唐書』 卷69, 列傳 第19 薛萬徹에 “貞觀 初 薛萬淑의 지위가 營州都督 檢校東夷校尉에 이르렀다”는 구절이 있어 620년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설만숙이 629년 11월 영주도독으로서 對돌궐전에 참전하고 있는 사실을(『新唐書』 卷2, 本紀 第2 太宗 貞觀 3年) 통해 629년을 동이교위 복설의 하한으로 잡을 수 있다.

75 『資治通鑑』 卷193, 唐紀9 太宗 貞觀 4年 8月.

76 『舊·新唐書』 契丹傳을 검토해보면, 동일한 시기에 당에 사신을 보낸 주체의 이름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620년대의 경우 咄羅·孫敖曹·摩會 등 3명이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 거란 사회가 대외적으로 통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77 620년대 후반 당은 거란이 內附해오자 해당 부락에 州를 설치하고 營州都督府 산하에 두었다. 그런데 이때 당이 기존 거란 지역에 설치한 주는 불과 두 곳에 불과했다. 즉, 628년 ‘거란의 松漠部落’을 영솔하기 위해 설치한 昌州와 이듬해 ‘契丹室韋部落(부락의 구체적 명칭은 摘記되어 있지 않음)’을 영솔하기 위해 설치한 師州가 그것이었다(『舊唐書』 卷39, 志 第19 地理2 十道郡國2 河北道 昌州·師州). 이는 돌궐이 약화된 이후에도 당의 영향력이 거란 사회 전체에 닿은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645년(貞觀 19) 당이 영주 경계 안에 帶州를 설치하여 ‘거란의 乙失革部落’을 안치한 사실은(『舊唐書』 卷39, 志 第19 地理2 十道郡國2 河北道 帶州) 고구려를 공격한 645년까지도 당이 거란 사회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었던 것도⁷⁸ 이 같은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현전기록상 요서지역 경략에 나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기실 동돌궐의 약화·멸망 이후 요서지역 제 종족을 겨냥한 당의 행보 역시 이 지역 역학구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던 고구려가 군사적·정치적·경제적 개입을 했을 경우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이는 고구려가 대수전쟁(對隋戰爭) 과정에서 요서일원의 거점이었던 무려성(武厲城)을 상실한 사실과⁷⁹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구려로서는 이때가 무려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호기(好期)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기 요서지역에서 고구려군의 활약상이나 당과의 충돌을 시사하는 기록이 전무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고구려는 이때 요서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추진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훗날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시 고구려군의 서부 전선이 요동지역에 형성된 점도 이와 연

78 이 점은 『구·신당서』 거란·고려전에서 거란의 범위가 동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고, 고구려의 영토가 서쪽으로 “요하를 건너 영주에 이른다”고 기록한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 고구려는 644년 결과적으로 唐軍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수천의 병력으로 영주 일대를 선제공격한 바 있으며(『冊府元龜』 卷357, 將帥部18 立功10張儉) 650년대 초·중반에는 지금의 시라무렌하·노합하 유역으로 군사적 진출을 감행하여 당과 대결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7세기 중반까지도 요서 일부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련 연구로는, 윤용구, 2005a, 앞의 논문; 윤용구, 2005b, 앞의 논문; 노태돈, 2009, 앞의 책; 윤병모, 2009,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遼西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윤성환, 2010, 「650년대 중반 고구려의 대외전략과 對新羅攻勢의 배경」, 『국학연구』 17;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중국 고중세사연구』 26; 정원주, 2014, 「7세기 고구려의 서계(西界) 변화」, 『영토해양연구』 8; 이정민, 2016, 앞의 논문 등이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고구려가 대수전쟁을 계기로 상실한 요서 동부지역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찍부터 당에 기울어진 거란의 항배로 인해 요서지역을 포기했다고 본 견해(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도 있다. 기실 644년 고구려의 영주 공격 당시 요서지역 諸 종족을 동원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이나, 654년 거란을 공격한 사실들은 이전에 비해 요서지역 제 종족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약화된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데, 결국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구려의 서부 국경선 비정에만 천착하기보다 이 시기 거란을 비롯한 요서지역 제 종족의 사회구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79 이성제,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대구사학』 113, 10~23쪽.

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놓고 볼 때 고구려가 봉역도 전달을 통해 당에 천명하려 했던 메시지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동돌궐이 약화된 틈을 타 요서지역 경략에 나서진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었을까. 아울러 이렇게 보면 봉역도 전달 시점을 사료상에 기록된 628년 9월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즉, 봉역도 전달의 계기는 ‘당의 돌궐 격파’가 아니라 ‘627년 이후 동돌궐 세력의 약화 및 요서지역 정세의 변화’였던 것이다. 당이 동돌궐 병탄 이후 ‘동북 제이(諸夷)’ 포섭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도 봉역도를 전달받음으로써 고구려 측의 동향을 확신할 수 있었던 탓일 것이다.

아울러 봉역도 전달 시점을 630년으로 볼 경우 1년 뒤인 631년 영류왕이 천리장성 축성을 결정하고 대당외교를 중단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봉역도 전달은 최소한 고구려가 대당관계 지속을 희망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전기록상의 오류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추정컨대 훗날 『구당서』·『책부원귀』의 찬자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당(唐)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봉역도 전달의 계기를 ‘당의 돌궐 격파 축하’라는 식으로 과장, 운색하여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이 점은 중국 측 사료를 읽을 때 고구려를 주체로 놓고 읽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한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당에 봉역도를 전달하며 동돌궐 약화의 틈을 타 요서지역 경략에 나서진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 “봉역도”라는 명칭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술한대로 봉역도의 용례(用例)로 볼 때 봉역도를 일반적 지도로 보기는 힘들다. 종래에는 “봉(封)”과 “봉역(封域)”의 자의(字意)에 “흙을 쌓아 만든 경계”, “땅의 경계”, “영토”, “한계” 등이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봉역도의 성격을 추론하였지만⁸⁰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담지 않은 봉역도 전달 행위를 두고 그와 같이 풀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봉역도 전달 행위의 본질인 외교적·상징적 차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봉역’의 여러

80 선봉조, 2009, 앞의 논문.

의미 중 ‘제후(諸侯)의 토지’라는 뜻이⁸¹ 주목된다. 즉, 그것이 조공책봉관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정되는 것이다. 다음 유사 사례들에 주목해보자.

다섯 天竺에는 수십여 국이 속해 있는데 풍속과 물산은 대략 같았다. 伽沒路國이 있었는데 …… (당에서 천축에 使節로 파견한) 王玄策이 도착하자 그 왕이 사신을 보내 진기한 異物과 地圖를 바치고 老子像과 道德經을 요청하였다.⁸²

(794년 南詔國王) 異牟尋이 吐蕃을 습격하고자 하여 길으로 약한 척하면서 5천 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토번이) 허락하였다. 곧바로 스스로 수만 명을 거느리고 주야로 행군하여 神川에서 토번을 大破하고 마침내 鐵橋를 끊었다. …… 이에 이모심이 동생 溱羅棟과 淸平官 尹仇寬 등 27명을 (당에) 파견해 地圖와 方物을 바치고 남조의 이름을 회복해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 (이모심을) 高溪郡王에 봉하였다.⁸³

이처럼 고구려의 봉역도 전달과 유사한 여타 사례들에서는 “봉역도”가 아닌 “지도”라는 표기가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가물로국과 남조국의 경우 대당(對唐) 지도 전달 이전 당과 조공책봉관계가 부재했던 탓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술한대로 중국정사 25사를 통틀어 봉역도라는 용어가 단 1건에 그치고 있는 점은 그렇게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특히 남조국왕의 경우 토번을 견제하기 위해 당에 귀부할 뜻을 밝힌 뒤 토번을 격파하였고, 뒤이어 당에 ‘지도’를 보냈다. 그

81 “封”, “封域”의 뜻과 관련해서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漢韓大辭典』 4, 499·506쪽 참조.

82 『舊唐書』 卷198, 列傳 第148 西戎 天竺國;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588쪽.

83 『新唐書』 卷222上, 列傳 第147上 南蠻 上 南詔 上, 8세기 후반 토번-남조국-당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889~897쪽을 참조할 것.

러자 당은 그를 곧바로 ‘책봉’했다. 또 훗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고려의 경우 998년 요(遼)의 책봉을 받은 목종(穆宗)이 1002년 요의 대송전(對宋戰) 승리를 축하하고 같은 해 7월 “지리도(地理圖)”를 전달한 사실이 『요사(遼史)』에 전한다.⁸⁴ 즉, 고려 목종은 요에 책봉을 받은 이후였지만, ‘봉역도’가 아닌 ‘지리도’를 요나라에 보냈던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의 대중(對中) 지도 전달은 그 자체 조공책봉관계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봉역도’라는 용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봉역도’라는 표현은 고구려와 당의 조공책봉관계에 따른 당의 일방적 표기일 가능성보다 애초 고구려 측에서 그렇게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고구려로부터 ‘지도’를 전달받은 당 측에서 그것을 조공책봉관계와 연결시켜 ‘봉역도’로 수용한 사실이 중요하다. 이미 양국 간에 조공책봉관계의 형식이 갖추어진 현실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고구려 역시 이 점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 즉, 봉역도 전달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당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봉역도 전달은 그 성격상 조공책봉관계와 구별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가지 사실이 유의된다. 하나는 당이 624년 영류왕을 ‘요동군공(遼東郡公)’에 책봉한 점이다.⁸⁵ 전술한대로 고구려는 동돌궐이 약화된 틈을 타 요서지역을 공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하기 위해 당에 봉역도를 전달했다. 그런 만큼 봉역도 전달을 통해 영류왕의 책봉호를 환기시키는 것은 그러한 고구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 수립의 경위 역시 주목된다. 고구려는 623년 당에 반력(頒曆)을 요청하여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희망했던 바 그 의도는 당과 대등관계였던 동돌궐이 끊임없이 당을 침구(侵寇)하는 상황에서, 동돌궐과 차별화한 외교전략을 통해 당 고조가 표방한 평화공존의 대고구

84 『遼史』 卷115, 列傳45 二國 外記 高麗. “(統和 20年) 7月 來貢本國地理圖.”

85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7年.

려정책 기조에 호응하고, 그것을 고구려의 입장에서 활용하려는 데 있었다.⁸⁶ 그런 만큼 이제 동돌궐이 약화되자 고구려는 그와 같이 수립된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요서지역으로 팽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천명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 고조가 표명한 바 있던 평화적 대고구려정책 기조의 재확인을 희망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애초 당과의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추진한 고구려 측의 의도를 동돌궐 약화라는 정세 변화를 계기로 재차 관철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620년대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은 시종여일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구려는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군사적 대비책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631년 2월의 천리장성 축성 결정이 이를 보여준다. 천리장성과 관련해서는 장성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만,⁸⁷ 그간의 연구에서 간과한 점은 고구려가 천리장성 축성에 나선 동기이다. 물론 기존 연구의 한결같은 지적처럼 그것이 당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임은 틀림없다.⁸⁸ 그러나 전술했듯 현 전자료상 천리장성 축성의 동기로 적기된 ‘경관 파괴 사건(631년 8월)’은 장성 축조 결정 시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천리장성 축성을 결정한 직접적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

86 윤성환, 2013, 앞의 논문, 129~135쪽.

87 고구려 천리장성의 실체를 둘러싼 研究史的 정리는 우석훈, 2014, 앞의 논문, 104~106쪽을 참조할 것.

88 한편, 천리장성 축조의 배경으로 平原大會戰과 같은 새로운 對唐 군사방어전략 도입과 당의 조공을 받는 거란의 침공에 대한 대비, 그리고 말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을 제기한 연구(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가 있다. 이후 후속연구들은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老邊崗長城說’에 의문을 제기하며 천리장성의 축성을 고구려 서부 방어선의 후퇴와 연관시켜 이해하려는 연구도 제기된 바 있다(이성제, 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 『영남학』 25; 이성제, 2016, 「최근 조사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 『동북아역사논총』 53). 이 같은 논란은 천리장성의 실체에 대한 기초적 조사와 검토가 지속된 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요한 장성 축성 결정은 전쟁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았을 고구려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천리장성 축성은 당시 고구려의 절박했던 상황을 웅변한다.

이렇게 볼 때 역시 주목되는 사건은 630년 3월 당의 동돌궐 병탄이다. 기록에 따르면 동돌궐 붕괴 한 달 만에 서북 변경의 군장(君長)들이 당 태종에게 ‘황제천가한(皇帝天可汗)’이라는 존호(尊號)를 올렸다 한다.⁸⁹ 이처럼 동돌궐 붕괴의 여파는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었을 뿐더러, 전술했듯 동돌궐의 존재는 그간 당의 대고구려 정책이 공세적일 수 없었던 조건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성은 시기와 정황상 동돌궐 붕괴에 따른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천리장성의 기점과 종점이 요하(遼河) 이동(以東)이었던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고구려가 당에 천명한 메시지-동돌궐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요서지역 경략에 나서지 않겠다는-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⁰ 즉 고구려는 조성된 정세의 난관을 ‘요서지역 경략’이라는 공세적 해법이 아니라 그동안 당을 상대로 지속해온 외교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했던 셈이다. 그러나 631년 8월 당의 ‘경관(京觀) 파괴 사건’은 이 같은 고구려의 노력을 무산시켰다.⁹¹ 당은 동돌궐 병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요서지역 진출에 소극적인 틈을 타 경관을 파괴하는 도발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후 고구려는 8년간 대당외교를 중단했다. 기실 당에 대한 외교적 기대와 노력이 무효

89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 下 貞觀 4年.

90 그런 점에서 종래 천리장성 축성을 두고 영류왕의 대외정책 노선을 ‘北守南進策’으로 규정하거나(신채호, 1988,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사, 266~268쪽) ‘膨脹主義의 포기’로 본 견해(이용범,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201~202쪽)는卓見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천리장성 축성을 ‘요서지역의 放棄’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이성제, 2005, 앞의 글, 161~162쪽).

91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 下 貞觀 5年 秋8月. 한편, 『冊府元龜』卷42, 帝王部 仁慈 貞觀 5年 조에는 당이 631년 7월 고구려의 경관을 파괴한 뒤 同年 8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隋人 戰死者들의 해골을 거두어 제사지냈다고 되어 있다.

해지고, 북방 유목세계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깊이 확대된 상황에서 요서지역 전략은 당과의 정면충돌을 불사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에 전쟁을 피하면서 고구려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당외교 중단이 유일했던 것이다.

요컨대 620년대 고구려·당의 관계는 동돌궐의 정세와 연동되어 있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당외교를 통해 당의 대고구려 정책을 평화 공존의 기조로 유도해내려는 목표를 일관되게 지향했다. 그러나 동돌궐 붕괴 이후 당의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면서 이는 무산되었다.

III. 영류왕 말기 대당외교 재개의 의미

1. 연개소문의 대당강경과 여부

630년대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외정책·사회변동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기록상 전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 고구려가 대당외교를 중단한 점 역시 그러한 기록 부재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속에서 642년 고구려에서는 돌연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영류왕과 대신 1백여 명을 죽인 뒤 영류왕의 조카 장(臧)을 왕위에 올린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종래 연개소문의 정변 원인과 의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연구의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예외 없이 대당정책을 둘러싼 노선갈등을 정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점이다.⁹² 즉, 연개소문(가문)을 대당강경파로, 영류왕

92 이 같은 연구경향은 일제시기 申采浩의 연구에서 기원한 것이다. 기실 20세기 한국 근대 역사학의 연개소문 정변에 대한 연구는, “淵蓋蘇文은 (一) 高句麗 九百年以來로 傳統한 豪族共和의 舊制度를 打破하여 政權을 統一하며 (二) 長壽太王以來 鐵石같이 굳어온 西守南進政策을 變更하여 南守西進의 政策을 세우며 (三) 그래서 國王 以下 大臣·豪族 數百名을 屠殺하여 自家의 獨舞臺를 만들고 西國 帝王 唐太宗을 擊破하여 支那 大陸에 侵略을 試하였나니, 그 善惡賢否는 別問題로 하고 如何問 當時에 高句麗뿐 아니라 곧 當時 東方亞細亞에 戰爭史

을 대당온건파로 형상화한 뒤 이 시기 정국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문제는 과연 대외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국왕과 대신 1백여 명이 희생된 유혈사태의 원인으로 연결되었을까 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연개소문을 대당강경파로 지목해왔다는 점에 있다.

종래 연구에서 연개소문(가문)을 대당강경파로 상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성을 주청(奏請)했다고 전하는 『삼국유사』에⁹³ 기초(基礎)한 경우였다.⁹⁴ 해당기록에 대해 634년 만아들을 낳은 연개소문의 연령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연구가 있었지만,⁹⁵ 그럼에도 여전히 연개소문 가문을 대당강경파로 보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왕의 지적처럼 연개소문의 연령으로 볼 때 『삼국유사』의 기록은 취신하기 어려울뿐더러⁹⁶ 천리장성 축성의 성격을 과연 당에 대한 ‘강경론과 온건론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전술한대로 천리장성 축성은 당에 대비한 방비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620년대 고구려 대당외교가 지향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성을 주장하여 16년 만에야 공사가 끝났고 이 과정에서 남자는 부역에 나가고 여자는 농사를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전승은, 대대적인 역사(役事)에 대한 민중의식과 연개소문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선 주목할 만하지만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에 전하는 ‘양명(羊皿) 설화’를 토대로, 630년대 초반

속에 唯一한 中心 人物이다”라는(신채호, 1931. 8. 28, “朝鮮史” 68, 『朝鮮日報』) 신채호의 비평 한마디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

93 『三國遺事』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94 임기환, 2004, 앞의 책, 302쪽.

95 여호규, 2000, 앞의 논문, 176쪽.

96 그런 점에서 연개소문 또는 연개소문 가문이 천리장성 축성을 주도했다고 보는 견해(선봉조, 2009, 앞의 논문, 117쪽) 역시 따르기 어렵다. 기실 장성 축성은 특정 귀족가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류왕이 천리장성 축성을 건의한 대당강경과 연개소문을 등용했다고 본 견해 역시 제기된 바 있다.⁹⁷ 그러나 ‘양명 설화’는, 『삼국유사』 김유신(金庾信) 조(條)의 ‘추남(楸南) 설화’와⁹⁸ 기본적인 서사구조가 흡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양명의 경우 전생에 수(隋)의 비장(裨將) 또는 수 양제(煬帝)의 우상(右相)이 었다가 죽을 때 적국인 고구려에 태어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다짐한 뒤 연개소문으로 환생(還生)한 반면, 추남의 경우 전생에 고구려의 복서지사(卜筮之士)였으나 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구려 멸망을 다짐하며 죽었고, 뒷날 신라의 김유신으로 환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설화의 유사성으로 볼 때 양명 설화는 고구려 당대인(當代人)이 아닌 신라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⁹⁹ 실제 고구려 당대에 연개소문의 전생(前生)을 적국(敵國)이었던 수의 비장(또는 재상)에 빗댄 이야기가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두 설화는 7세기 이후의 민중들이 김유신과 연개소문을 당대(當代)의 주역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줄

97 김지영, 2014, 앞의 논문, 96~97쪽. 한편, 『高麗古記』를 인용하고 있는 『三國遺事』 소재 양명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又按唐書云 先是隋煬帝征遼東 有裨將羊皿 不利於軍 將死有誓曰 必爲寵臣滅彼國矣 及蓋氏擅 朝以盖爲氏 乃以羊皿是之應也 又按 高麗古記云 隋煬帝以大業八年壬申 領三十萬兵渡海來征 十年甲戌十月高麗王上表乞降 時有一人密持小弩於懷中 隨持表使到煬帝舡中 帝奉表讀之 弩發中帝胷 帝將旋師謂左右曰 朕爲天下之主親征小國而不利 萬代之所嗤 時右相羊皿奏曰 臣死爲高麗大臣必滅國報帝王之讎 帝崩後生於高麗 十五聰明神武 時武陽王聞其賢 徵入爲臣 自稱姓盖名金 位至蘇文 乃侍中職也.”

98 『三國遺事』 卷1, 紀異1 金庾信, “…… 公(=金庾信)聞之驚仆再拜而出 宿於骨火館 謂白石曰 今歸他國忘其要文 請與爾還家取來 遂與還至家 拷縛白石而問其情 曰我本高麗人 我國群臣曰 新羅庾信是我國卜筮之士楸南也 國界有逆流之水 使其卜之 奏曰 大王夫人 逆行陰陽之道 其瑞如此 大王驚愕 而王妃大怒 謂是姦狐之語 告於王 更以他事驗問之 失言則加重刑 乃以一鼠藏於合中 問是何物 其人奏曰 是必鼠其命有八 乃以謂失言將加斬罪 其人誓曰 吾死之後 願爲大將 必滅高麗矣 即斬之剖鼠腹 視之其命有七 於是知前言有中 其日夜 大王夢楸南入于新羅舒玄公夫人之懷 以告於羣臣 皆曰 楸南誓心而死是其果然 故遣我至此謀之爾 公乃刑白石.”

99 이흥직은 신라 통일기 佛家와 陰陽家들이 轉生說에 부회해 두 설화를 꾸며낸 것으로 보았다(이흥직, 1962, 「高句麗秘記考」, 『역사학보』 17·18, 342쪽).

뿐이다.

다음으로 연개소문의 ‘집권 후 대당정책’에 근거해 대당강경과로 본 경우가 있다.¹⁰⁰ 그러나 관련기록을 면밀히 따져보면, 집권 후 연개소문의 대당(對唐)인식과 정책을 ‘강경’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와 관련해 644년 고구려를 방문한 당사(唐使) 상리현장(相里玄奘)과 연개소문 간의 회담 내용을 전하는 다음 기록을 보자.

황제(당 태종)가 司農丞 相里玄奘에게 명하여 璽書를 (보장)왕에게 내려 말하기를 “신라는 나라를 의탁하여 조공이 그치지 않으니 너희와 백제는 마땅히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병력을 동원해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장이 入境했을 때 蓋蘇文이 이미 병력을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두 城을 격파했다. 왕이 그를 부르니 이에 돌아왔다. 현장이 신라를 침략하지 말라고 타이르니, 개소문이 현장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신라는 원한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번 隋人이 침공해왔을 때 신라가 그 틈을 타 우리 땅 5백 리를 빼앗고 그 城邑을 모두 차지하였다. 스스로 빼앗은 땅을 우리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장이 말하기를 “기왕의 일을 어찌 쫓아서 사리를 밝히겠는가? 지금 요동의 여러 성은 본래 모두 중국의 郡縣임에도 중국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데, 고구려가 어찌 반드시 옛 땅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막리지가 끝내 따르지 않았다.¹⁰¹

이 기록은 연개소문의 실제 발언을 전하는 희소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00 노태돈, 1999, 앞의 책, 474~475쪽.

101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3年, “帝命司農丞相里玄奘 賫璽書 賜王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爾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玄奘入境 蓋蘇文已將兵擊新羅 破其兩城 王使召之 乃還 玄奘諭以勿侵新羅 蓋蘇文謂玄奘曰 我與新羅 怨隙已久 往者 隋人入寇 新羅乘釁 奪我地 五百里 其城邑皆據有之 自非歸我侵地 兵恐未能已 玄奘曰 既往之事 焉可追論 今遼東諸城 本皆中國郡縣 中國尚且不言 高句麗豈得必求故地 莫離支竟不從.”

다. 우선 연개소문의 발언만을 놓고 보면, 당에 대한 적대적인 언사나 전쟁불사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그의 예봉은 신라를 향해 있었을 따름이다. 이는 집권 직후부터 그에게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양상이다.¹⁰² 물론 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으니 대당강경파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연개소문이 상리현장에게 공공연히 당(唐)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했다면, 당시 전쟁의 구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던 당으로선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연개소문은 당에 대해 신중하진 입장을 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개소문의 해당 발언은 영류왕의 ‘북수남진책(北守南進策)’과¹⁰³ 일정하게 통하는 측면도 있다. 기실 집권 초기의 연개소문이 당에 적대적이지 않았음은 기왕의 연구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642년 9월 연개소문이 당에 관원 50명의 숙위(宿衛)를 요청한 것¹⁰⁴ 역시 640년 영류왕이 당에 귀족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한 것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외정책은 상호 단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속성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위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를 향해 도발한 측은 당이었다. 당 태종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국서를 고구려에 전달하였고, 상리현장은 고구려의 요동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군현회복론(사군구지론)’을 운운하며 도발하였다. 애당초 당에 사신을 보내며 대당외교를 펼쳤던 연개소문이¹⁰⁵ 점차 당과의 전쟁으로 기울게 된 계기는, 이러한 당 측의 ‘상대적 책임’이 훨씬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실 당 태종은 ‘연개소문 정변’ 직후 영류왕을 애도하는 조문

102 642년 겨울, 고구려에 借兵을 요청하고자 평양을 방문한 신라 金春秋에게 보장왕은 ‘竹嶺 이북의 옛 고구려 영토 반환’을 요구했다. 이때 보장왕의 발언은 연개소문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노태돈, 2009, 앞의 책, 74쪽).

103 영류왕대 對新羅 攻勢 및 南進 양상과 관련해서는 손영중, 1997, 앞의 책, 125쪽을 참조할 것.

10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3年.

10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2年·3年 春正月.

사절단을 고구려에 파견하기도 했던 것이다.¹⁰⁶ 이는 연개소문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울러 그 직후 당 조정에서는 대고구려 정책을 논의했던바, 이때 장손무기(長孫無忌)는 당 태종에게 “고구려는 한 번도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으니 마땅히 조서를 내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 환난을 헤아려 생존자를 위무하면 그들이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¹⁰⁷ 여기서 장손무기가 언급한 ‘환난’과 ‘생존자’는 각각 ‘연개소문의 정변’과 ‘정변 이후에도 생존한 연개소문 반대파’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뒷날 당 태종이 고구려 공격의 명분으로 끊임없이 ‘연개소문의 시역(弒逆)’을 내세운 것 역시 명분론적 차원이 아니라 고구려 자체의 내분(內紛)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실이 이러했으니 연개소문으로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결코 타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전자료만으로는 쿠데타 이전, 즉 영류왕 재위 기간 연개소문의 대외노선을 파악할 길이 없다. 단, 그의 연령으로 볼 때 그가 620~630년대 고구려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개소문이 중앙정계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의 부친(父親) 연태조(淵太祚)의 죽음과 맞물려 있어 그 시기는 정변 단행 시기에서 그리 먼 시기가 아니었다.¹⁰⁸ 그런 만큼 적어도 부친의 죽음 이전까지 그가 대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따라서 연개소문은 대당강경파로 규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단편적인 현전기록만으로는 이 시기 대당강경파의 실체 여부 역시 확정하기 힘들다.¹⁰⁹ 그러면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642년 정변 전야 고구려 정국을 재검토해보자.

10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年 11月.

107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司徒長孫無忌曰 高麗無一介告難 宜賜書安尉之 隱其患 撫其存 彼當聽命.”

108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109 김기흥, 1992, 앞의 논문, 23~24쪽. 한편, 최근에는 연개소문의 정책을 시종일관 대당강경책으로 분류하기에 주저된다는 견해 역시 제기된 바 있다(방용철, 2015, 앞의 논문, 176쪽).

2. 영류왕의 대당외교 재개와 고구려 정국(政局)의 재구성

639년 고구려는 전격적으로 대당외교를 재개하였다.¹¹⁰ 630년대 당은 토곡혼(吐谷渾)을 평정하고(635) 설연타(薛延陀)를 상대로 이간책(離間策)을 구사하는(638) 한편, 서역의 고창국(高昌國)과 대립하는 등(639) 대외경략을 지속하였다.¹¹¹ 따라서 639년 고구려의 대당외교 재개는 이와 같은 당의 동향을 관찰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듬해 영류왕이 당에 태자(太子)를 파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것을 사전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¹¹² 그런데 이전까지 고구려가 중국왕조에 태자를 파견한 전례가 단 한 건에¹¹³ 불과할 뿐더러 당시 당의 대외팽창이 동북방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¹¹⁴ 이 시기 대당외교의 급진전은 대외정세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면이 있다.¹¹⁵ 더욱이 영류왕은 일관된 외교적 노력에도 당의 도발에 직면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당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대당외교 재개의 동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뒷날 당의 고창병탄 소식에 고구려 조정의 위기가감이 고조된 사실 역시 이를 말해준다. 이를 염

110 『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 下 貞觀 13年.

111 이상은 『資治通鑑』卷194, 唐紀10 太宗 貞觀 9年; 『資治通鑑』卷195, 唐紀11 太宗 貞觀 12·13年 내용 종합.

112 방용철, 2011, 앞의 논문, 51쪽; 윤성환, 2011b, 앞의 논문, 293쪽 註25 참조. 또는 640년 고구려의 대당 태자 파견이 639년 양국 간 접촉 결과에 따른 것이었을 수도 있다.

113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0년.

114 선봉조, 2009, 앞의 논문, 119~120쪽.

115 639년 고구려의 대당외교 재개 요인으로 이 무렵 설연타와 당의 연계에 주목한 견해(김진한, 2009, 앞의 논문, 332쪽)가 있다. 그러나 당시 설연타는 예전 동돌궐의 위상을 대체하지 못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설연타가 동돌궐과 다름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면, 고구려는 이로부터 대당외교 재개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다. 당의 구심력이 이미 확고해진 상황이었던 것이다. 설연타가 예전 동돌궐과 달리 당과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640년 영류왕이 遣唐使가 아닌 '태자'를 당에 파견한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에 두며 아래 기록들을 읽어보자.

- ① (榮留王) 23년(640) 봄 2월, 世子 桓權을 唐에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太宗이 노고를 위로하고 물건을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왕이 子弟를 당에 보내 國學에 입학할 것을 청하였다. 가을 9월, 해가 빛을 잃었다가 3일이 지나 다시 밝아졌다. 24년(641) 황제(당 태종)는 우리 태자가 入朝하였으므로 職方郎中 陳大德을 보내 노고에 답하였다. 진대덕이 (고구려 영내에) 入境하여 이르는 城邑마다 官守者들에게 비단을 후하게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산수를 좋아하니 이곳에 뛰어난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보고 싶소”라고 하였다. 守者는 기뻐하며 그를 인도했는데 유람하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대덕은 고구려의) 세세한 부분을 다 알게 되었다. 隋末 중국인으로 從軍했다 숨어서 남은 자들에게 친척의 존망을 말해주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므로 이르는 곳마다 남녀가 길에 늘어서 그를 보았다. (영류)왕이 호위병을 크게 늘어놓고 使者를 접견하였다. 대덕은 연이어 使命을 받들며 나라의 허실을 엿보았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대덕이 돌아가 아뢰니 황제가 기뻐하였다. 대덕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는 고창의 멸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객사에서 접대하는 것이 평상시보다 더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25년(642)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에 조공하였다. 왕이 西部大人 개소문에게 長城의 役을 감독하도록 命하였다. 겨울 10월 개소문이 왕을 시해하였다.(『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 ② 西部大人 蓋蘇文이 攝職하여 犯함이 있으므로(=攝職有犯) 여러 대신과 建武가 논의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일이 누설되었다. 이에 개소문이 部兵을 다 소집하여 장차 열병식(=校閱)을 할 것이라 말하고 城 남쪽에 술과 음식을 질펀하게 차려 놓았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와서 臨視하자 개소문이 병사들을 동원해 그들을 다 죽이니 죽은 자가 1백여 인이었다. 창고를 불사르고 왕궁으로 짓쳐들어가 건무를 죽인 뒤 건무의 동생 大陽의 아들 藏을 왕으로 세웠

다.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③ 개소문이란 자가 있어 …… 그 아버지 東部大人 大對盧가 죽자 개소문이 마땅히 이어받아야 하였으나 國人이 그를 미워하여 그럴 수 없었다. …… 마침내 그 직위를 이어받았으나 殘凶不道하여 여러 대신과 건무가 그를 죽일 것을 의논하니 개소문이 이를 깨닫고 諸部를 다 소집하여 ……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④ (皇極) 원년(642) 2월 壬辰(6일)에 고려 使人이 難波津에 머물렀다. 丁未(21일)에 대부들을 난파군에 보내어 고려국에서 바친 금은 등과 그 獻物을 점검시켰다. 使人은 貢獻이 다 끝나자 말하기를 “작년(641) 6월 弟王子가 죽었습니다. 가을 9월 大臣 伊梨柯須彌(연개소문)가 대왕을 죽이고 아울러 伊梨渠世斯 등 180여 명을 죽였으며 이어 제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자기의 同姓 都須流金流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 戊申(22일)에 …… 대신에게 詔하여 “津守連大海를 고려에 사신으로 보내라 ……”고 하였다. …… 癸丑(27일)에 高麗使人과 百濟使人이 함께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8월 己亥(16일) 高麗使人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2년(643) 6월 己卯朔 辛卯(13일)에 筑紫大宰가 급히 아뢰어 말하기를 “고려가 사신을 보내 來朝했습니다”라고 하였다. 群卿이 듣고서 서로 그것을 말하기를 “고려가 기해년(639) 이래 내조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내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日本書紀』 卷24, 皇極紀)

640년대 초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외교양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의 기록들을 서로 조합해 읽는다면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기록상 연대가 부정확한 대목부터 짚어보자.

영류왕이 태자 환권(桓權)을 당에 파견한 시점은 『삼국사기』와 중국 측 기록이 서로 다르다. 『삼국사기』는 640년 2월이라 기술했으나 중국 사서에서는 640년 12월이라 전한다.¹¹⁶ 그런데 당 태종이 환권의 입당(入唐)에 대한 답방사

(答訪使)로 고구려에 파견한 진대덕(陳大德)이 641년 8월 당에 귀환한 사실로¹¹⁷ 볼 때 환권의 입당 시점은 640년 12월로 보는 것이 순조롭다. 다만 640년 2월 무렵 고구려·백제·신라·고창·토번(吐蕃)이 당에 귀족 자제들을 보내 국학(國學) 입학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자치통감』에 전하는 것으로¹¹⁸ 보아 자료 ①은 고구려 독자의 전승에 토대한 서술이 아닌 『자치통감』의 영향을 받은 서술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당의 주변 제국들이 일괄적으로 640년 2월 국학 입학을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겠거니와 당이 국학을 증축한 시점 역시 631년으로 확인된다.¹¹⁹ 다만 고구려의 경우 630년대 내내 공식적인 대당외교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귀족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한 시점은 대당외교를 재개한 이후인 639년과 640년이 유력하다. 한편, 자료 ④의 경우 642년 2월 왜(倭)에 도착한 고구려 사신의 전언(傳言)을 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641년 9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정변 시점은 642년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록상의 착오다. 실제 자료 ④에 따르면 643년 고구려 사절이 왜에 도착하자 왜의 신료들은 “639년 이래 고구려 사절이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변 사실을 전한 고구려 사절이 642년 2월이 아닌 643년 6월 왜에 도착한 이들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료 ④에 기록된 고구려 사절의 전언은 원(原)기록과 달리 1년을 늦추어 보아야 하며, 자연 제왕자(弟王子)의 죽음과 연개소문의 정변 역시 각각 642년 6월과 9월의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기초적 검토를 바탕으로 당시의 정국을 재구성해보자.

639년 또는 640년 2월, 영류왕은 당에 고구려 귀족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하였다. 당시 다른 나라들 역시 국학 입학에 열성이었다는 점에서 얼핏 특

116 『舊唐書』卷3, 本紀第3 太宗 下 貞觀 14年 12月 乙卯, 『책부원규』에도 같은 기록이 전한다.

117 『資治通鑑』卷196, 唐紀12 太宗 貞觀 15年.

118 『資治通鑑』卷195, 唐紀11 太宗 貞觀 14年 2月, “乃至 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 諸酋長 亦遣子弟請入國學 升講筵者 至八千餘人.”

119 『唐會要』卷35, 學校.

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무엇보다 고구려의 경우 태자의 입당(入唐)을 기획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러한 요청을 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즉, 귀족 자제의 국학 입학 요청과 태자 파견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실제 두 사건의 주체는 모두 영류왕이었다. 그렇다면 이때 영류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공고롭게도 해당 사안들이 고구려 내정(內政)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점이 주목된다. 대당 태자 파견 직전인 640년 9월, 국왕을 상징하는 해가 3일 동안 빛을 잃었다(자료 ①)는 기록으로도 이 점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뒷날 연개소문이 집권 후 당의 도사(道士)들을 초청해 이들을 ‘유사(儒士)’보다 우대했던 사실 역시¹²⁰ 이와 관련해 주목된다. 흔히 연개소문의 도교 도입은 불교세력 견제용으로 설명되지만,¹²¹ 실상 연개소문이 도교 도입으로 견제한 대상은 유사(儒士)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연개소문의 탄압을 받은 유사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혹 영류왕에 의해 당의 국학에서 유학을 익혔던 귀족 자제들이 아니었을까. 기실 정변 직후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¹²²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유사들을 탄압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640년대 초 영류왕의 대당외교 재개가 ‘국내 정치용’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정의 어떤 측면과 결부시켜 볼 수 있을까? 태자의 외교활동과 귀족 자제들의 대당(對唐) 유학(留學)은 그 성격상 공히 영류왕의 왕권, 더 나아가 후계구도 창출로¹²³ 귀일(歸一)되는 사안들이다. 특히 귀족 자제들의 국학 입학은 신진 정치세력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영

120 『三國遺事』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삼국사기』에 따르면,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설득해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요청한 시점은 643년 3월이었다(『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上 2年).

121 이내옥, 1983, 앞의 논문.

122 연개소문 정권에 복종하지 않아 연개소문의 공격을 받았던安市城主의 사례(『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가 대표적이다.

123 물론 태자가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다면, 여기서의 ‘후계구도 창출’이란 태자의 왕위계승과 관련된 국내 정치세력의 조정 및 개편을 의미한다.

류왕이 연개소문 축출에 가담한 사실(자료 ②와 ③)도 함께 주목한다면, 이 무렵 영류왕은 모종의 국내 정치(세력) 개편을 꾀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의도는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거나¹²⁴ 왕권강화에¹²⁵ 있었을 것이다. 이 중 영류왕의 재위기간을 고려하면¹²⁶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하간 영류왕의 대당외교 재개와 대당관계의 급진전이 당시 고구려 내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면은 부인할 수 없겠다. 뒤이은 진대덕의 답방 역시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단, 그러한 영류왕의 행보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태자 환권의 입당 직전인 640년 9월, 해가 3일 동안 빛을 잃었다(자료 ①)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¹²⁷ 그럼에도 영류왕의 행보가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후의 사태 추이를 살펴보며 이를 밝혀보자.

641년 당 태종은 직방낭중 진대덕을 고구려에 파견했다. 자료 ①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 지방관들은 진대덕이 주는 뇌물을 받으며 그의 요구에 순순히 협조했다. 진대덕이 중국인 전쟁포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게다가 진대덕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음에도 고구려 지방관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찍이 대수전쟁(對隋戰爭)에서 승리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혹은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처럼 당

124 이와 관련해 연개소문의 정변 원인을 귀족세력의 견제를 받던 연개소문과 왕위계승에서 밀려나 불만집단으로 남아 있던 대양계의 결합에서 찾은 선행 연구가(전미희, 1994,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古代編) 있다.

125 이와 관련해 영류왕의 연개소문 제거 시도를 왕권 재확립의 마지막 수순으로 본 견해(김기흥, 1992, 앞의 논문, 29~30쪽) 있다.

126 김진한, 2009, 앞의 논문, 334쪽.

127 방용철, 2011, 앞의 논문, 19~20쪽에서는 태자 파견·국학 입학 요청 등 영류왕이 당과의 우열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대한 내부적 반발로 해석하였고, 최호원, 2013, 앞의 논문, 137~138쪽에서는 영류왕의 對新羅政策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대신라 강경론자들의 반발 및 연태조의 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일찍이 조선 초기의 학자 權近은 “연개소문의 弑逆의 징조”라 해석한 바 있다(『東史綱目』第3下, 庚子年 條 所引).

시 고구려 지방관들에게서 당을 적대시하거나 경계했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진대덕의 정보수집 활동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줄 정도로 이완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그들이 당과의 전쟁을 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속에서 진대덕의 행보는 “이르는 곳마다 남녀가 길에 늘어서 그를 보았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고구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 『신당서』에 따르면 당의 고창(高昌) 병탄 소식을 접한 고구려의 대대로(大對盧)가 진대덕이 체류하던 객사에 세 번씩 찾아왔다고 한다.¹²⁸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 소식은 진대덕이 전해준 것으로 보인다.¹²⁹

그러면 이때의 대대로는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해 자료 ④에서 연개소문의 정변 당시 ‘대왕(大王)과 함께 희생된 인물로 특기되어 있는 ‘이리거세사(伊梨渠世斯)’가 주목된다. 왜에 정변 사실을 전한 고구려 사신이 곧이 영류왕과 함께 이리거세사를 언급한 정황과 함께, 연개소문이 집권 후 자신과 동성(同姓)인¹³⁰ 도수류금류(都須流金流)를 ‘대대로(大對盧)’로 추정되는¹³¹ “대신(大臣)”에 임명했다는 전언(傳言)의 내용으로 볼 때, 정변 무렵 대대로는 이리거세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이었으므로 정변 1년 전인 641년의 대대

128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大德還奏 帝悅 大德又言 聞高昌滅其大對盧三至館 有加禮焉.”

129 노태돈, 2009, 앞의 책, 58쪽.

130 여기서 同姓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있다. 자료④에서 이리거세사와 도수류금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고 보거나(이병도 역주, 1996,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468쪽) 같은 部 소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노태돈, 1999, 앞의 책, 475쪽)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입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료④의 기록 그대로 본다면, 도수류금류의 경우 정변 후 대대로에 임명된 사실로 볼 때 이전에도 상당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 중앙정계는 이리거세사·도수류금류·연개소문 등 연씨 일족이 그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아울러 도수류금류는 연개소문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131 노태돈, 1999, 앞의 책, 475쪽; 임기환, 2004, 앞의 책, 304쪽; 이도학, 2006, 「고구려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연구』 24, 34쪽; 이문기, 2008,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 72쪽.

로 역시 이리거세사였다고 생각된다.¹³² 주지하다시피 이리거세사는 성(姓)이 연개소문과 동일하므로 연씨(淵氏) 가문의 일족이었던 것 같다. 그는 정변 당시 희생당한 사실로 볼 때 영류왕의 정치적 입장에 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씨 가문 내에서도 영류왕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사실은, 고구려 후기 귀족 가문의 분지화(分枝化) 현상을¹³³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왕권이 귀족사회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을 것이다. 단, 이때 이리거세사로 추정되는 대대로가 진대덕에게 세 번씩 찾아갔던 사실만으로도 그를 대당온건파라 지목할 수는 없다. 물론 해당 사실을 통해 가급적 당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던 그의 속내는 읽을 수 있지만, 이는 당시 고구려 지배층 전반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실 620년대 당과의 평화공존을 일관되게 추구했던 고구려의 행보 역시 영류왕의 독단이 아닌, 이러한 고구려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 연개소문 역시 집권 후 처음부터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대대로의 이 같은 행보는 대대로 자체의 직능과 연관시켜 볼 필요도 있다.¹³⁴

이상에서 드러나듯 당시 고구려 조야(朝野)는 당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았던 바, 이 점은 영류왕이 대당외교를 국내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귀족 가문의 분지화 현상 역시 영류왕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영류왕은 대내적으로는 귀족 가문의 분지화를 활용하는 가운데 대당외교까지 구사하며 후계구도 창출로 추정되는 자신의 정치(세력) 재편 구상을 실현해나가려 했다고 생각된다.

132 『新唐書』高麗傳에 따르면, 연개소문의 父親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東部大人 大對盧’였다고 한다. 현재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만일 연태조가 대대로를 역임했다면, 이리거세사는 연태조의 사망 이후 대대로가 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133 이와 관련해서는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411~421쪽 참조.

134 이와 관련해서는 윤성환, 2017, 「7세기 고구려의 대외정책 수립 체계와 대외정책 결정 요인」, 『한국전통문화연구』 20, 64~66쪽 참조.

641년은 그 정점을 향해 가던 시기였다. 연개소문 제거 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자료 ③에서 전하듯 연개소문은 부직(父職) 승습 과정에서 귀족들의 견제에 밀려 곤혹을 치렀다.¹³⁵ 해당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642년 정월 천리장성 감역(監役)에 임명되고 있는 사실(자료 ①)로 볼 때 늦어도 641년을 하한으로 잡을 수 있다. 여하간 끝내 섭직에 성공한 연개소문은 정치적 위기 타개에 몰두했던 것 같다. 자료 ②와 ③의 “섭직유범(攝職有犯)”과 “수사위(遂嗣位) 잔흉부도(殘凶不道)”가 이를 말해준다. 단, 그 구체적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후 확인되는 중앙정계의 동향은 영류왕이 전면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류왕은 대신들과 함께 연개소문을 제거하려 하였고, 642년 정월에는 그를 천리장성 감역직에 임명하였다. 이로 보아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존재가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대 경우도 상정이 가능하다.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연개소문의 월권을 왕권을 위협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자료 ②의 “누설”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연개소문 제거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었고, 공식적·정상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서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전술했듯 641년은 영류왕의 정치(세력) 재편 구상 실현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듬해 1월 영류왕이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감역에 임명한 조치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일반적으로 연개소문을 중앙정계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로 이해되고 있는바, 이 점은 다음의 사실로도 입증된다.

근래 알려진 「고을덕묘지명(高乙德墓誌銘)」에 따르면, 고을덕의 조부(祖父) 고잠(高岑)은 영류왕에게서 중리소형(中裏小兄)의 관등을 수여받아 상사(尙事)의 직임을 맡았다가 왕명으로 문책을 받아 상사의 직임을 추탈당하고 외관(外

135 당시 귀족들이 연개소문의 섭직을 반대한 이유는 노태돈, 1999, 앞의 책, 473~474쪽 참조.

官)으로 강등되어 축출된 적이 있었다.¹³⁶ 해당 사례는 연개소문의 장성 감역 임명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그것 역시 ‘징계’와 ‘강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당시 천리장성 축성은 민중들 사이에서 원성(怨聲)의 표적이 되었을 것인 만큼¹³⁷ 그러한 역사(役事)의 감독에 연개소문을 임명한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영류왕은 연개소문에 대해 인사상의 강등 조치만 취했을 뿐 제거하려 하지는 않은 셈이다. 이후 양자 간의 대립은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이나, 이 무렵 연개소문의 행적은 뚜렷하지 않다. 이에 그의 천리장성 현지 부임 여부조차 논란이 있다.¹³⁸

다만 642년 정월 이후 확인되는 중앙정계의 동향은, 영류왕과 대신들이 연개소문 제거를 모의했다는 것(자료 ②와 ③)과 642년 6월 영류왕의 동생 대양(大陽)이 사망한 사실이다(자료 ④). 양자 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왕자 대양의 사망이 지녔던 정치적 의미 역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정국 상황은 영류왕의 정치적 구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연개소문이 끝내 정변을 일으킨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거니와 만일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연개소문과 대양계가 정치적으로 결합했다면¹³⁹ 대양의 죽

136 「고을덕묘지명」과 관련해서는 이성재,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중국고중세사연구』 38;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참조.

137 『三國遺事』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김기홍, 1992, 앞의 논문, 21쪽.

138 이때 연개소문이 王命에도 불구하고 천리장성 현지에 부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 견해가(전미희, 1994, 앞의 논문, 281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474쪽) 있는 반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현지에 부임해 최전선에서 대당관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정변을 일으켰다는 설명도(김영하, 2000, 앞의 논문, 34쪽) 있다. 만일 이때 연개소문이 현지에 부임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자료②와 ③에서 “有犯”, “殘凶不道”라 표현했을 수 있겠다.

139 전미희, 1994, 앞의 논문, 277~282쪽. 다만 이러한 견해는 자료④에 근거하고 있다. 즉, 왜를 방만한 고구려 사신이 연개소문의 정변 사실을 전하면서 大陽의 죽음을 특별히 언급한 점, 연개소문이 정변 후 대양의 아들을 왕위에 옹립한 점으로 볼 때 일찍이 왕위계승에서 밀려나 불만집단으로 남아 있던 대양계가 연개소문과 결합

음은 정국의 중대한 변수였을 것이다. 이런 속에서 영류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 제거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고구려에서는 모반한 자, 수성(守城)하다 적에게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살인하거나 겁탈한 자를 사형에 처했던 바,¹⁴⁰ 만일 영류왕과 대신(大臣)들이 연개소문을 ‘주살(誅殺)’하려 했다면 그 죄목은 모반죄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에선 전쟁이 없었을 뿐더러 연개소문 역시 직접 출정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러한 계획은 공식적·제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연개소문이 집안 대대로 관장해온 병권(兵權)을¹⁴¹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탓이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고구려 정치체제 내에서 연개소문의 병권을 박탈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겠다.¹⁴² 결국 해당 계획이 누설되면서 연개소문은 642년 10월 부병(部兵)을 동원한 열병식을¹⁴³ 계기로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처럼 연개소문의 정변은 후계구도(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정치(세력) 재편’을 꾀하던 영류왕에 맞서 병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했으며 대양의 죽음을 계기로 궁지에 몰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논의로 생각된다. 다만, 자료④에서 고구려 사신이 대양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정변 후 왕위에 오른 보장왕이 대양의 아들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으며,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옹립한 것 역시 당시 왕실 내에서 대양계가 아니면 왕위에 옹립할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현전자료만으로는 해당 논의를 확신하기 어렵지만, 본문에서 서술했듯 이 시기 영류왕이 후계구도 확립에 관심을 쏟았던 점은 정황상 확인할 수 있다.

140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上 東夷 高麗.

141 「泉男生墓誌銘」, “良治良弓 竝執兵鈐 威專國柄.”

142 그런 점에서 정변의 근원적 원인이 고구려 말기 정치체제에 있었다는 종전의 지적은 중요하다.

143 이 열병식의 정체 역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감역으로 부임하는 ‘東部大人 이임식’이었다고 추정하거나(노태돈, 1999, 앞의 책) 10월 東盟祭로 추정한 견해가(이도학, 2006, 앞의 논문, 36쪽)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泉男生墓誌銘」에서 연씨 가문이 兵權을 장악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이와 연관된 사건이었다고 추정된다. 분명한 점은, 정변 직전 연개소문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천리장성 현지에 부임했다가 모종의 계기에 다시 평양으로 복귀했을 가능성도 상상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었다. 영류왕은 해당 구상을 실현하고자 국내 귀족 가문의 분지화 현상 및 대당 외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중 후자의 경우 당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당시 고구려 조야의 염원이 그 토대였다. 연이어 영류왕은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연개소문까지 제거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끝내 역공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기실 왕조사회에서 국왕을 죽이는 경우는 결국 왕위계승이나 후계구도 문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시기 신라에선 선덕왕(善德王)의 후계구도를 놓고 ‘비담(毗曇)의 난’이 일어났고¹⁴⁴ 고구려에선 6세기 중엽 양원왕(陽原王) 즉위과정에서 대규모 왕위계승전이 일어나 2천여 명이 희생된 사례가 있었다.¹⁴⁵ 그 뒤에도 고구려 왕실의 왕위계승은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⁶ 다만 연개소문은 권력투쟁에서 성공했을 뿐 스스로 새로운 체제 구상과 지향을 세웠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변 이후 권력 집중화의 방향 역시 연개소문 가문의 사적(私的) 권력기반이 강화되는 방향으로¹⁴⁷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영류왕대 대당외교의 시기별 성격 변화가 주목된다. 대체로 620년대의 대당외교가 당의 대고구려정책을 평화공존의 기조로 유도해내려는 외교적 의의 자체에 충실한 것이었던 반면, 640년대 초반의 대당외교는 영류왕의 국내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는 620년대에도 일부 확인되는 양상이기는 하다. 예컨대 625년 고구려는 당에 사신을 파견해 불교와 도교의 교법(教法) 학습을 요청했는데,¹⁴⁸ 이는 1년 전 당 고조가 고구려에 책봉사(冊封使) 심숙안(沈叔安)을 파견하면서 천존상(天尊像)과 도사(道士), 『노자오천문

144 노태돈, 2009, 앞의 책, 124~127쪽.

145 『日本書紀』卷19, 欽明紀 7年 是歲 條.

146 예컨대 平原王(=陽成)의 태자 책봉 당시를 두고 “立王子陽成爲太子 遂宴群臣於內殿”이라는 기록(『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13年 夏4月)이 있다. 이때의 태자 책봉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147 이와 관련해서는 임기환, 2004, 앞의 책, 306~309쪽 참조.

148 『冊府元龜』卷999, 外臣部44 請求 武德 8年. “高麗遣人來 學道佛法 詔許之.”

(老子五千文)』을 전달해준 것에¹⁴⁹ 대한 답례 차원의 사행(使行)이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도교를 매개로 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수(對隋)전쟁 이후 전쟁의 사회적 여파로 인한 민생고(民生苦)와 오두미교(五斗米教)가 유행하던 당시 사회 기층의¹⁵⁰ 분위기에 대한 고구려 지배층 나름의 대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수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지만, 당시 수군(隋軍)은 요동(遼東)에서 평양에 이르는 고구려 사회의 핵심부를 유린하였고, 이 점은 종전 이후 ‘통치 기반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고구려 집권층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일 수 있었다. 이 점은 중국 사회에서 오두미교가 유행한 요인이 질병치료, 의사(義舍)와 같은 복지시설, 의미(義米)·의육(義肉)과 같은 경제적 혜택, 기복신앙, 정치 경제적인 평등 요구 등 기층민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데 있었던 사실을¹⁵¹ 통해서도 반증된다. 즉, 620년대 초반 고구려 사회의 오두미교 유행은 대규모 전란 이후 기층민중의 현실적 불만이 응축된 사회적 현상이었고,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149 한편, 『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에는 “又遣使請道教 詔沈叔安將天尊像并道士至其國 講五千文 開釋玄宗 自是始崇重之 化行於國 有驗釋典”이라고 하여 고구려에서 당에 도교를 요청한 결과 당이 심숙안을 파견한 것으로 전한다. 물론 여타 자료에서 모두 심숙안을 고구려에 파견된 ‘책봉사’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류라 생각되지만,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비로소 도교를 중시하여 나라에 도교가 유포되고 불교를 능가하게 되었다”는 구절만큼은 다른 기록에서 전하지 않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다만 뒷날 보장왕 즉위 직후 연개소문이 “今儒釋並興而道教未盛”이라 말하며 唐에서 도교를 도입하자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2年) 영류왕대의 ‘도교 정책’은 이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아마 630년대에 접어들어 고구려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에서 수용한 도교 역시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7세기 고구려의 道教 수용을 두고 ‘對唐外交의 수단’으로서 도교의 역할을 강조하거나(김수진, 2010, 「7세기 高句麗의 道教 受容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59) 수·당과의 전쟁 이후 고구려 사회에서 재래의 전통신앙이 확산되던 경향에 주목한 견해도 있다(방용철, 2013, 「7세기 고구려 불교정책의 한계와 國祖神」, 『한국고대사연구』 72, 213~220쪽).

150 『三國遺事』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151 이내옥, 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역사학보』 99·100, 71~72쪽.

전후 재건의 과제에 직면해 있던 고구려 사회 내부의 문제를 미봉하기 위해 영류왕은 외교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당의 도사가 고구려에 도착해 노자(老子) 강론을 열자 영류왕을 비롯해 도가(道家)·속인(俗人) 등 수천 명이 청강한 사실¹⁵² 역시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증한다. 이로 보아 대당외교를 내정에 활용한 영류왕의 통치술은 고구려 말기 왕권체제(王權體制)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에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생각된다. 아마 대수전쟁 이후 극심했을 사회 변동과 관련된 현상일 것이다. 어쩌면 연개소문의 정보도 이런 시대상황에서 배태된 것일 수 있다. 차후 관련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0년대 고구려·당의 관계는 동돌궐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620년대 초반 고구려는 당에서 ‘평화공존’의 대고구려 정책 기초를 유도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고구려는 동돌궐의 강성이라는 대외적 조건에서 그 성공의 가능성을 찾았던 것 같다. 이에 고구려는 양국의 조공책봉관계를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의제를 당 측에 먼저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 조정의 논의 결과 고구려와의 ‘공존론’(당 고조)은 폐기되었다. 이는 고구려를 변경의 위협요소로 대상화한 결정이자 당이 고구려와 실질적 대등관계를 유지할 경우 변경에 대한 연쇄적 통제력 상실이 빚어질까 우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에 양국은 양국관계의 형식인 조공책봉관계를 미래에 대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확인하는데 그친 상태에서 동돌궐의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

152 『舊唐書』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627년경부터 시작된 동돌궐의 붕괴와 그로 인한 요서지역 제 종족의 동요는 필연적으로 고구려·당 관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고구려는 요서지역에 대한 세력 부식(扶植)을 추진하는 대신, 628년 9월 당에 봉역도를 전달하는 상징적 외교행위를 통해 요서지역을 경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는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 수립의 경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정책으로, 애초 동돌궐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선제적으로 대당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추진한 고구려 측의 의도를, ‘동돌궐 약화’라는 정세 변동을 계기로 재차 관철하기 위한 시도였다. 즉, 그 의도 역시 당이 평화공존의 대고구려정책 기초를 재건 명해줄 것을 기대한 데 있었다. 630년 동돌궐이 멸망하자 이듬해 2월 당에 대비한 방비책으로 추진한 천리장성 축성 역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620년대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은 시종일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돌궐 병탄 이후 당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고구려의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당은 동돌궐 병탄 직후 동북의 제 종족을 향해 유세하더니 631년 8월에는 이른바 ‘경관(京觀) 파괴 사건’을 도발하며 양국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당과의 정면충돌을 의미하는 요서지역 경략이 아닌 대당외교 중단을 택하였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고구려가 대당외교를 재개한 시점은 639년이였다. 이듬해 영류왕은 태자 환권을 당에 파견하는 한편, 귀족 자제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이 시기는 이미 당의 구심력이 강화되어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의 예봉이 동북방을 향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고구려의 행보는 대외적 조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요인은 내정(內政)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바, 이 시기 영류왕은 정황상 자신의 후계구도(체제) 창출 일환으로 추정되는 정치(세력) 재편을 구상했던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류왕은 국내 귀족가문의 분지화 현상을 활용하는 한편 대당외교까지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 조야(朝野)는 당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았던바, 영류왕이 대당외교를 국내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기에 있었다. 연개소문 제거 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당시 고구려 정치체제 내에서 공식화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고, 끝내 연개소문의 병권을 박탈하지 못하면서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역공을 당하게 되었다. 요컨대 연개소문의 정변은 후계구도(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정치(세력) 재편’을 꾀하던 영류왕에 맞서 병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종래의 설명과 달리 연개소문은 대당강경파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집권 후 그가 대당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고구려의 내분을 획책하려던 당의 상대적 책임에서 기인한 바였다. 이처럼 그의 쿠데타 동기는 어디까지나 왕실의 후계구도 문제에서 비롯된 권력투쟁으로서, 이는 이후 연개소문 정권의 향방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대당외교를 내정에 활용했던 영류왕의 통치술은, 고구려 말기 왕권체제의 정치·사회적 기반 및 사회변동과 관련해 차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唐會要』, 『東史綱目』, 『隋書』, 『新唐書』, 『遼史』, 『資治通鑑』, 『冊府元龜』, 『泉男生墓誌銘』, 『通典』, 『日本書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漢韓大辭典』 4.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역주 일본서기』 2·3, 동북아역사재단.

사마광 지음·권중달 옮김, 2009, 『資治通鑑』 20, 삼화.

사마광 지음·권중달 옮김, 2009, 『資治通鑑』 21, 삼화.

정구복 외 번역, 2012, 『역주 삼국사기』 1 감교원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维基文库(<https://zh.wikisource.org>)

中華民國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

漢川草蘆(<http://www.sidneyluo.net>)

Internet Archive(<https://archive.org>)

2. 단행본 및 연구논문

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김용만, 2003,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병국, 1997, 『고구려제국사』, 혜안.
- 손영중, 1997, 『고구려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신재호, 1988,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사.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이병도 역주, 1996,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 李殿福·孫玉良 共著, 강인구·김영수 共譯, 2005, 『중국학자가 쓴 고구려사』, 학연문화사.
- 김기흥, 1992,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 김수진, 2008, 「수·당의 고구려 실지론과 그 배경」, 『한국사론』 54.
- 김수진, 2010, 「7세기 高句麗의 道教 受容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59.
- 김영하,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한국사연구』 110.
- 김은숙, 2007,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 김지영, 2014, 「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 방용철, 2011,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대구사학』 102.
- 방용철, 2013, 「7세기 고구려 불교정책의 한계와 國祖神」, 『한국고대사연구』 72.
-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한국고대사연구』 80.
- 방향수, 2008, 「7세기 중엽 唐 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 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19.
- 서영수, 1987, 「삼국시대 한중외교의 전개와 성격」,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선봉조, 2009, 「榮留王代 政局主導權의 變化樣相과 淵氏勢力」, 『고구려발해연구』 33.
- 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 여호규, 2006,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 여호규, 2016,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삼국의 대응」,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4, 경상북도.
- 우석훈, 2014,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군사』 92.
- 윤병모, 2009, 「고구려의 對唐戰爭과 遼西 및 동몽골 진출」, 『몽골학』 27.
- 윤성환, 2010, 「650년대 중반 고구려의 대외전략과 對新羅攻勢의 배경」, 『국학연구』 17.
- 윤성환, 2011a,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 윤성환, 2011b, 「영류왕, 대당온건파로 꺾맞춰진 오류」, 『내일을 여는 역사』 44.
- 윤성환, 2013,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
- 윤성환, 2017, 「7세기 고구려의 대외정책 수립 체계와 대외정책 결정 요인」, 『한국전통문화연구』 20.
- 윤용구, 2005a,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북방사논총』 5.
- 윤용구, 2005b,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역사와현실』 55.
- 이강래, 2016, 「경험과 역사」, 『한국사연구』 173.
- 이기천, 2016, 「7世紀 初唐의 對外戰爭 名分과 國際秩序」, 『중국고중세사연구』 39.
- 이내옥, 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역사학보』 99·100.
- 이도학, 2006, 「고구려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연구』 24.
- 이문기, 2008,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
- 李成市, 1993, 「高句麗 泉蓋蘇文의 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
- 이성제,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邇」, 『대구사학』 113.
- 이성제, 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 『영남학』 25.
- 이성제,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중국고중세사연구』 38.
- 이성제, 2016, 「최근 조사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 『동북아역사논총』 53.
- 이용범,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중국고중세사연구』 26.

- 이정빈, 2015, 「607년 고구려 동돌궐 교섭의 배경과 목적」, 『역사학보』 225.
- 이정빈, 2016, 「고구려-당 관계의 성립과 변경시대(618~624)」, 『고구려발해연구』 54.
- 이호영, 2003,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편.
- 이흥직, 1962, 「高句麗秘記考」, 『역사학보』 17·18.
-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전미희, 1994,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古代編.
- 전해중, 1987, 「韓中朝貢關係概觀」,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 정원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 정원주, 2014, 「7세기 고구려의 서계(西界) 변화」, 『영토해양연구』 8.
- 최호원, 2013, 「연개소문의 정변과 高句麗·新羅 關係」, 『사충』 80.
- 請田正幸, 1979, 「高句麗莫離支考」, 『旗田巍先生古稀紀念朝鮮歷史論集』 上, 龍溪書舍.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외교와 정국동향

윤성환

이 글은 624~642년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624년 당(唐)과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한 이후 고구려는 일찍이 당 고조가 천명한 바 있던 평화공존의 대고구려정책(對高句麗政策) 기초가 지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기대와 달리 625년 3월, 당은 차후 정세변화에 따라 대고구려정책 기초를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부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양국은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의 내용을 향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구성해나갈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627년부터 동돌궐의 세력이 이완되면서 요서지역 제 종족(諸種族) 사회가 크게 동요했던바, 이를 계기로 628년 9월 고구려는 당에 ‘형식적 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전달하였다. 이는 당 측에 동돌궐의 약화를 틈타 요서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적 외교행위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당 측에 양국 간 조공책봉관계 수립의 경위를 상기시키고, 당에서 평화공존의 대고구려 정책 기초를 재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630년 당의 동돌궐 병탄을 계기로 시작한 천리장성(千里長城) 축성 역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조공책봉관계의 수립이 곧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620년대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과 목표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에 파탄을 초래한 측은 당이었다. 당은 631년 8월 이른바 ‘경관(京觀) 파괴 사건’을 도발하였고, 이에 고구려는 장기간 대당외교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639년 돌연 대당외교를 재개한 후 이듬해에는 당에 태자를 파견하고 귀족 자제의 국학(國學) 입학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아닌 국내정치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이 시기 영류왕은 정황상 자신의 후계구도(체제) 창출 일환으로 추정되는 정치(세력) 재편을 구상했던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류왕은 국내 귀족가문의 분지화 현상을 활용하는 한편 대당외교까지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 조야(朝野)는 당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았던바 영류왕이 대당외교를 국내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기에 있었다. 연개소문 제거 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당시 고구려 정치체제 내에서 공식화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고, 끝내 연개소문의 병권(兵權)을 박탈하지 못하면서 영류왕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당하게 되었다. 요컨대 연개소문의 정변은 후계구도(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정치(세력) 재편’을 꾀하던 영류왕에 맞서 병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종래의 설명과 달리 연개소문은 대당강경파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집권 후 그가 대당강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고구려의 내분을 획책하려던 당의 상대적 책임에서 기인한 바였다. 아울러 대당외교를 내정에 활용했던 영류왕의 통치술은 고구려 말기 왕권체제의 정치·사회적 기반 및 사회 변동과 관련해 차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구려, 영류왕, 연개소문, 대당외교, 조공책봉관계, 봉역도, 천리장성

ABSTRACT

Diplomacy with Tang China (唐) and Political Trends of Koguryo (高句麗) from 624 to 642

Yun Seonghwan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rection and change of Koguryo's diplomacy with Tang China from 624 to 642. From 624, Koguryo had concentrated its diplomatic efforts on inducing the Koguryo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that the Tang had already declared.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of Koguryo, in the third lunar month of 625 the Tang made the internal decision that it would be able to turn the policy of Koguryo in an aggressive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result, the two countries failed to agree on what level and on what manner to form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朝貢冊封關係). However, as the power of the Eastern Turks (東突厥) weakened from 627, nomadic society in Liaoxi (遼西) was shaken. In the ninth lunar month of 628, Koguryo delivered a "formal map" (封域圖) to the Tang. This was a symbolic diplomatic act to convey to the Tang the message that Koguryo would not seek to

expand its power into the Liaoxi region as the Eastern Turks weakened. It seems that Koguryo reminded the Ta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affirmed the Koguryo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Tang. The expansion of the Great Wall of Koguryo (千里長城), which was started in 630 with the destruction of the Eastern Turks, was an extension of such diplomatic efforts. These facts indicat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did not mea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China. At the same time, this shows that Koguryo's diplomatic goals for Tang were consistent in the 620s. However, Tang caused the breakdown in Koguryo's consistent diplomatic efforts. Therefore, Koguryo suspended long-term diplomacy with the Tang.

However, in 639, King Yeongnyu (榮留王) suddenly resumed diplomacy with the Tang. In the following year, he dispatched a crown prince (太子) to the Tang and demanded the study of the nobility. This was not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ut rather to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and was an effort to establish King Yeongnyu's succession. This attempt of King Yeongnyu faced the rebellion of Dae Yang (大陽), the brother of the king. But after 641, it secured the suppor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bsequently, Dae Yang politically agreed with Yeon Gaesomun (淵蓋蘇文), who was being held in noble society at the time, and King Yeongnyu appointed Yeon Gaesomun to the position of Great Wall of Koguryo Construction Supervisor in 642 in order to separate the two forces. Six months later, when Dae Yang died, the king Yeongnyu and nobles stimulated the removal of Dae Yang's remaining force, Yeon

Gaesomun. However, as the plan was leaked, Yeon Gaesomun conducted a coup. Unlike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Yeon Gaesomun was not a hardliner in the Tang. Rather, he held a firm stance regarding the Tang after the seizure of power was largely undertaken by the Tang. His motive for a coup was a power struggle over the succession of the royal family, which became the defining element of the regime's future direction. Finally, in the early 640s, King Yeongnyu's rule became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character of Koguryo-Tang diplomacy, and this must be studied in relation to the kingship regime and social change in this period.

Keywords: Koguryo (高句麗), King Yeongnyu (榮留王), Yeon Gaesomun (淵蓋蘇文), Dae Yang (大陽), diplomacy with Tang China (唐), the tributary appointment relationship, formal map (封域圖), the Great Wall of Koguryo (千里長城)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황병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I. 머리말
- II. 해방 직후 한민당의 토지개혁 구상(1945. 8~12)
- III. 미군정의 토지 정책과 사적 소유권 인식
- IV. 1946년 이후 한민당의 토지개혁 정책 변화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사회의 근대적 변화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채택한 이후 양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가치이자 제도, 관습으로 관철되어 왔다. 한국사에서 자유주의가 소개된 것은 멀리 개항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기는 해방 이후였다.

해방 공간에서는 유혈과 폭력을 동반한 좌우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전쟁까지로 치닫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영향력이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가는 시공간이기도 했다. 미국식 제도와 가치, 관습과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확장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양키 문화’ 또는 ‘아메리카니즘’의 영향력이 사회를 휘감게 되었다.

미국의 범위는 곧 반공 진영이기도 했다. 한국은 터키, 그리스 등과 함께 초창기 냉전의 주무대였고 자유주의는 냉전의 강력한 자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유주의는 곧 ‘냉전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그 일차적 특징은 반공주의에 포박당한 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 교리인 사상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 반공 자유주의는 매우 좁은 이념 지형도를 만들어냈다.

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소유권적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여타 부분과 달리 소유권적 자유는 물질적 대상을 가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소유권적 자유는 자유가 물질적으로 보장되

* 투고: 2017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9일, 게재 확정: 2018년 3월 5일
* 본 논문은 2016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는 핵심으로 간주된다. 특히 신분제가 해체된 이후 소유의 대상이 물질적 재화로 집중되면서 소유권적 자유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물질적 재화의 소유 규모로 측정되고 구분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결국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신성성을 구축한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유재산제 또는 사적 소유권의 역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근대 이후 사적 소유권의 역사는 거의 탐구된 바가 없다. 조선 후기와 일제 초기에 걸쳐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등을 통해 토지소유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적 소유권 그 자체에 대한 탐구는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통적 사적 소유 관습과 함께 근대 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사적 소유권 관념이 착종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자유주의와 결합된 사적 소유권은 전통시대의 그것과 결코 동일한 소유권 관념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주목된다.¹ 토지개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 정치의제로 떠올랐다.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적 지향 속에 토지개혁을 전개했던 반면 일본과 남한의 토지개혁은 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즉 냉전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진영 간의 체제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토지문제는 체제적 지향과 밀접히 관련되게 되었다. 이는 특히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이기도 했다. 단적으로 말해 국유 또는 집단적 소유를 강조한 사회주의적 지향과 사적 소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자본주의 지향 간의 대립인 것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을 둘러싼 담론적 경합은 일국의 체제 형성은 물론 냉전체제의 진영 대립과 관련해서도 매우 시사적인 문제였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의 자유주의

1 한국은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체 상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는 토지개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한다.

와 사유재산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민당은 1920년대 이래 국내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세력이 주도하여 만든 정당이었다.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등의 동아일보 계열이 주도하면서, 호남 지주세력, 기호파 일부, 서북파 일부가 참여한 당시 최대의 우익정당이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중요한 원류이다. 또한 미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에 적절한 분석대상이라고 본다.

II. 해방 직후 한민당의 토지개혁 구상(1945. 8~12)

사유재산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개항기로 추정된다. 1889년에 탈고 되어 1895년 출간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사적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유길준은 소유권이 “각 사람마다 제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겨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독립하는 정신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² 이러한 인식은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 보성중학교의 윤리학 교과서를 집필한 신해영은 “소유권의 확립은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여 행복을 증진하는 바의 일대 표준이 되어 미개국과 문명국의 차별이 여기에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재산의 사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잘못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³

공산주의자가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었던 1906년 한국에서 사적 소유권과 관련된 반공주의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만큼 사적 소유권이 중요한 개념이자 가치로 개항기 지식인 사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조선민사령과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근대적 사유재산제가 제도적으로 성립하면서 사유재산 관

2 유길준, 허경진 옮김, 2004, 『서유견문』, 서해문집, 132쪽.

3 신해영, 1906(광무10년), 『윤리학교과서』 권3, 보성중학교, 42~51쪽.

념이 본격적으로 사회화되었다.⁴ 특히 1920년대 사회주의가 본격 유입되면서 사적 소유권은 침해한 쟁점이 되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의 처벌 조항이 국채변란과 함께 사유재산제의 전면 부정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일제 시기 사적 소유권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가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고 또 실질적 개혁 과제로 제시된 것은 해방 이후였다. 당시 토지개혁, 토지혁명은 거의 모든 정치세력이 내세우는 과제였고 이는 ‘지주 정당’으로 평가받는 한민당도 마찬가지였다. 토지개혁과 관련해 한민당이 처음으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은 1945년 9월 창당과 함께 발표된 정책에서였다.

여기에 ‘중요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와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란 규정이 등장하는데 합리적 재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후 1945년 11월 17일 작성된 함상훈의 「아당의 주의 정책」이란 글에서 “토지는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고용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3분의 1 정도로 납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치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강의 틀을 제시했다. 즉 대기업의 국가 경영, 대토지의 국유가 한민당의 방침이었다.⁵ 그러나 국유화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4 조선시대에는 사유재산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검색을 통해 보건대 사유재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 私와 財產이란 용어는 현재와 비슷한 용례로 비교적 자주 사용되었다. 애초 분리되어 사용되었던 사유와 재산이 결합되어 사유재산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의 신문 검색상으로는 1900년대 초반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황성신문』에는 사유재산 용어가 검색되나 『독립신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립신문』에서는 재산이란 용어는 다수 출현하는데 ‘인민의 재산’ 등이 대표적 표현이었다. 『황성신문』에서도 1890년대에는 보이지 않다가 1900년대 초에 가서야 검색된다. 『황성신문』 1902년 6월 30일자에 나타난 “인민의 사유재산”이란 표현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5 함상훈, 1946, 「아당의 주의 정책」, 『개벽』 1월호(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 연구』 I, 풀빛, 154쪽).

대토지에 국한되는 것임도 분명히 했다.

이 시기까지 송진우가 주도하고 있던 한민당은 민족문제를 건국 이념의 핵심으로 놓고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 즉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일정하게 수용한 사회경제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⁶ 그렇기에 토지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5년 12월 22일 송진우의 「한국민주당의 정견」 방송 내용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일치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띤 중요 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부여는 물론이어나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결빙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⁷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중요 산업 국영, 토지소유의 극도의 제한 등 송진우의 구상은 좌익정당의 그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독당을 제외하고 대표적 보수 우익진영 대부분이 참여한 한민당에서 이러한 방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해방 직후의 정세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침은 좌익세력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영도성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협동하

6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구조의 중층성」, 『한국사연구』 165호, 284쪽.

7 『동아일보』, 1945. 12. 22, 23(심지연, 1982, 앞의 책, 150쪽).

지 않겠다는 방침이기도 했다.⁸ 즉 정강정책상의 유사성에도 해방 직후부터 좌익과 우익은 날카로운 대립을 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송진우는 더욱 급진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바로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⁹

혹자는 현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나 그것은 일개 공식론에 불과하다. 현단계는 대이념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라고 본다. 토지는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로 해야 된다. 토지의 재분배는 몇십 년 후에 또다시 토지점병의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니 백년지대계가 아닐 것이다. 철도, 선박, 전신 특히 의식주에 관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대우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의 교육문제·사회보험 문제 등 일체 사회·교육 정책에 의하여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는 중국에 있어서 보다 우리 땅에서 먼저 그 이상적 실현을 볼 줄 믿는다.¹⁰

이 글의 작성 시점은 사망 직전으로 추정된다. 송진우는 잡지 『선봉』의 청탁을 받아 사망 직전에 글을 완성하여 송고하고 12월 30일 암살당하게 된다. 결국 유고가 된 이 원고는 송진우의 마지막 입장인 셈이었다. 송진우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입장과 경향을 더욱 급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토지 국유화를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함상훈의 주장도 대토지 국유로 제한된 것이었고 12월 22일 송진우의 방송 원고에서도 토지 국유화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토지 소유의 극도의 제한’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토지 국유화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한 것은 왜일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8 윤덕영, 2014, 앞의 논문, 285쪽.

9 국유제는 김준보 등이 주장하기도 했다.

10 송진우, 1946, 「연두소감」, 『선봉』 제2권 1호(심지연, 1982, 앞의 책, 176쪽).

손문의 삼민주의가 언급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이미 일제시기부터 일본과 중국의 정세변화에 민감했던 송진우였기에 자연스러운 표현일수도 있지만 시대상 임정과와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나 한다. 송진우는 1945년 말 한민당을 주도하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를 지렛대 삼아 조선공산당을 제외한 좌파 일부까지 포함한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했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좌파를 견인하고 ‘국민대회’를 통해 그러한 정계개편을 완성하고자 했다.¹¹

이 구상에서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송진우는 앞장서서 임정봉대론을 주창했고 임정의 좌우연합 정부 성격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삼균주의는 삼민주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임정은 건국강령에서 토지 국유화를 못박고 있었기에 송진우는 임정과와의 정치적 연대 그리고 중도 좌파세력의 견인 등의 다목적 포석으로 토지 국유화를 천명하게 된 것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토지 국유화는 조선공산당의 공식 입장이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비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토지문제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입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이기에 사적 소유를 인정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특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입장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핵심은 애초 토지 국유화 방침이 농민의 사적 소유 인정으로 변모된 것이었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의 기본 방침은 박헌영이 작성하였다고 알려진 이른바 ‘8월테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테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9월 20일에 재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조선공산당은 완전 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제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무토지 농민이나 토지가 적

11 윤덕영, 2014, 앞의 논문 참조.

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이어 “조선의 전 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요, 국유화되기 전에는 농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이것(몰수한 토지)을 관리한다”고 규정했다.¹²

조선공산당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로도 지속되어 전 토지의 국유화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방법이 1945년 내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46년 들어서면서 조선공산당의 토지개혁 정책에서 토지 국유화 부분이 더이상 강조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농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입장까지로 변화되었다. 즉 1946년 3월 17일 발표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의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에 대하여」에서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만 강조되었을 뿐 더 이상 국유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¹³ 1946년 4월 민전의 미소공동위원회 자문에 대한 답신안에서는 봉건적 지주-소작관계를 철폐하고 토지는 “농민의 개인 소유로서의 농민 경리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론 민전은 “토지는 농민에게 사유시키나” 소작, 매매, 저당 등을 금지하여 완전한 사적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었다.¹⁴

1947년 2월 발표된 「토지개혁의 옳은 노선」에서는 “무상몰수는 토지소유를 철폐함이 아니요, 봉건적 토지소유를 근절함이며 자유스러운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함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어 재차 “토지개혁에 의하여 토지가 국유화되는 것도 아니요, 또 사유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만이 청소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⁵ 요컨대 조선공산당-민전-남조선노동당 등으로 이어지는 좌파 계열은 1946년을 전후하여 애초 토지 국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입장에서 토지소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1946년 들어 조선공산당의 입장이 농민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

12 「헌 정세와 우리의 임무」, 김남식 엮음, 1988, 『남로당 연구』 II(자료편), 돌베개, 22쪽.

13 김남식 엮음, 1988, 위의 책, 152~154쪽.

14 김남식 엮음, 1988, 위의 책, 197~198쪽.

15 김남식 엮음, 1988, 위의 책, 258~260쪽.

리되는 과정은 몇 가지 조건 속에서 가능했다. 먼저 북한의 토지개혁이 농민의 토지 사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공산당으로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탁통치 파동을 거치면서 좌우대립이 극심해지는 과정에 1946년 2월 민전이 성립되었고 이는 좀 더 유연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고 하겠다. 조선공산당뿐만 아니라 중도좌파 진영까지 포괄한 민전의 입장은 조선공산당보다는 유연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토지 국유화가 양립 가능하냐는 반대 진영의 이론적 비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보수주의 우익세력이었던 송진우가 조선공산당의 입장이 국유화가 아니고 농민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향후 토지겸병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송진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이념 하의 사회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대이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입장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토지 국유론이 제기된다고 보인다.

조선공산당이 농민의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정리되면서 송진우는 그 한계를 비판하는 정치적 전술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물론 송진우가 특정 정세 하의 정치적 고려로만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송진우를 위시한 동아일보 계열의 인사들은 1910년대부터 일본 유학을 통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영국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¹⁶ 이를 주도했던 인물은 장덕수였다. 그는 이미 1910년대부터 자유주의적 사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활동을 경유하여 미국과 영국 유학을 통해 사회적 자유주의를

16 윤덕영, 2010, 「일제하·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61쪽.

적극적으로 수용했다.¹⁷ 장덕수는 1920년 4월 1일 창간 당시부터 동아일보 부사장 겸 주필(주간)로 참여하여 지면을 책임졌다.

러셀은 인간 생활의 기본 충동을 소유충동과 창조충동을 구분한다. 전자는 독점적이며 침략적이며 파괴적이며 후자는 공헌적이며 共有적이며 건설적이며 전자는 서로 유인하는 충동이고 후자는 생으로 안내하는 충동이다. 전자를 체현시키는 것은 국가, 재산, 군대, 전쟁 등이고 후자를 체현시키는 것은 예술, 종교, 과학, 발명 등이다.¹⁸

인용문은 러셀을 빌려 사적 소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¹⁹ 이 기사의 작성자는 장덕수가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유하였음을 밝히고 있었다. 치안유지법이 공포된 1925년 이후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대부분의 조선인들의 사회운동에서 거부되고 있음이 강조되기도 했다. 즉 “치안유지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구체적 운동을 단속하는 것인 바, 최근의 조선인 운동은 거의 전부가 이러한 경향에 들므로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²⁰

일제시기부터 송진우는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원리로 승인하고 있지 않았다. 1929년 작성된 한 글에서 송진우는 “원래 토지의 소유권이란 절대성을 가졌다고 하나 결코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多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례로 “토지의 수용령”을 들었다. 즉 “토지의 수용령이란 것이 결국 그 국가

17 최선웅, 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고영환, 1921. 7. 19, “러셀씨의 재산론과 감상”, 『동아일보』.

19 시리프로 기획된 이 기사는 당시 동아일보 주간을 맡고 있던 장덕수의 권유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20 『동아일보』, 1926, 12, 18.

적 이익이나 또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²¹ 또한 그는 19세기는 자유권, 20세기는 생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권은 정치적 생존권이며 생존권은 경제적 자유권이라고 주장했다.

박애평등의 대사상을 무시하는 불합리 방종적인 소유욕이며 또한 생존권에 있어서도 상호부조의 원칙을 이탈하는 농단적 이기심인 태만성을 폐기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 현대인의 착오된 소유욕의 관념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존권의 확충을 방지하게 된 것…… 소유권 보장은 곧 자본의 옹호이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된 사회에서 자유의 경쟁을 허하면 자본주의가 그 세력을 전횡할 것은 물론이다.…… 어찌하여 출판, 언론, 집회의 모든 자유가 사적 권리가 아니요, 공적 권리인 이상에 하등 소유권만이 사적 권리에 부속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지구는 인류의 共有物이다.…… 이를 구획하며 이를 사유하는 것은 정의의 패려(悖戾)며 인도의 반역이다. 하물며 현재의 문화의 총화는 전인류의 共作이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향락은 共受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서 사회의 연대적 책임감이 생하며 평등적 관념이 발하며 노동숭배의 진리가 존할 것이다.²²

인용문에서 보듯이 송진우는 사적 소유권에 대해 강렬한 반대 주장을 피력했다. 즉 그는 정세와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의 절대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일찍이 강조했다. 송진우의 인식은 다만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일제 시기 토지분배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재래의 토지제도가 기본적으로 국유제였다고 파악하고 유교의 경자유전 원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송진우의 입장이 예외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²³

21 송진우, 1929, 「소작입법의 필요」, 『조선지광』 1월호(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 『거인의 숨결 - 고하 송진우 관계자료집』, 60~61쪽).

22 송진우, 1925. 1. 12~13, “자유와 생존권” 상·중, 『동아일보』.

23 김성보는 조선시대 정선론과 한전론 등이 국유제와 소유제한제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강유웨이의 대동사상을 통해 개항기 이래 조

일제시기 이래 사적 소유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주도한 것이 사회주의 세력이었음도 분명하지만 송진우, 장덕수 등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도 결을 달리하면서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예컨대 한민당 소속이었던 김병로도 1945년 11월 『민심』에 발표한 글에서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²⁴ 앞서 밝혔듯이 임시정부 역시 토지 국유화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까지 사적 소유권은 우익진영에서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송진우의 토지 국유화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즉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귀속재산과 대지주의 토지 국유화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더욱이 조선공산당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방안도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유화와 다름없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권을 인정하되 매매, 처분이 금지되어 온전한 사적 소유권으로 보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대표적 우익정당의 수뇌부가 토지 국유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해방 직후 정세가 사유재산제와 자유주의에게 커다란 위기 국면이었음을 말해준다.

III. 미군정의 토지 정책과 사적 소유권 인식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애초 미국은 일본에 대해 확실한 배상을 받아내고자 했다. 미국의 배상 방침은 첫째, 재군비를 가능케 하는 일본 내 자본 설비는 연합국에 인도하고 둘째, 일본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과 점령유지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선 지식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참조).

24 신병식, 1992,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5쪽에서 재인용.

현물 배상을 징수하며 셋째, 일본의 재외자산의 연합국 인도였다.²⁵ 이에 따라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2호를 통해 일본의 국공유 재산은 몰수했지만 사유재산은 엄격한 관리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매매를 허용했다.

미군정이 소유권 문제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은 대략 1945년 12월경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 6일 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포함한 일체의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였다.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11월 초 군정장관 아놀드는 “미국은 비록 적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국제공법을 준수하여 그대로 실행할 따름”이라고 강조하였다.²⁶

미군정의 정책 변경 이유는 재산 관계에 따른 일본인 귀환 지연, 미국의 배상현물 확보 필요, 경제적 혼란상, 모리배 준동에 대한 대책 필요성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좌익의 물질 토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⁷ 어쨌든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한국 내의 물질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문제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정 정치고문 랭턴은 1945년 12월 14일자 전문에서 미국 정부가 남한 지역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사유 재산 및 동산이 장래 한국 정부의 처분을 위해 미군정의 관리 하에 놓여질 것이라는 성명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련군은 미국과 협의 없이 북한지역의 일인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고 알려면서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한국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⁸

흥미로운 것은 이미 일본(인) 재산 전부를 몰수한 미군정이 본국에 이 조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듯한 전문을 발송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지 미군정이

25 이원덕, 2008,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22호, 15쪽.

26 『매일신보』, 1945. 11. 6(국사편찬위원회, 1968, 『자료 대한민국사』 1권).

27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이숲, 379~81쪽.

28 「재한국 정치고문 대리(랭턴)가 국무장관에게」(1945. 12. 14), 김국태 역, 1984, 『해방3년과 미국』 I, 돌베개, 168쪽.

미 본국의 사전 승인 없이 몰수 조치를 단행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랭턴의 요청에도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었고 일방적인 소유권 처분을 우려했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특히 국무부 법률고문은 매각 대신 양도 또는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미군정의 소유권 처분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1946년 2월 미국은 토지, 도시 주거지,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일인 재산 처분권을 부여하게 된다. 미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가 맥아더에게 보낸 지시에 따르면 산업재산과 대규모 판매업은 제외하되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항목의 처분권을 허용한 것이다. 이 처분권은 향후 수립될 한국 임시정부에서 ‘일반적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²⁹

1946년 들어 미국은 본격적인 토지개혁을 준비했다. 1946년 1월 19일에는 미 국무부 한일경제과장 마틴이 NBC 방송에 출연해 귀속농지 불하에 대한 대강의 계획을 밝혔다.³⁰ 1946년 2월 무렵부터 미 국무부는 좌우합작을 모색하면서 사회경제적 개혁의 핵심으로 토지문제를 언급했다. 즉 미국은 “4대 자유를 강조하며, 광범한 한국 민중에게 설득력 있는 근본적인 토지 및 재정의 개혁을 강조하는 내용의 진보적인 강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공산주의적 강령만이 가장 희망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민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³¹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번스 사절단(Bunce Mission)의 귀속농지 분배 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연 생산물의 20~30%를 15년간 상환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 것이

29 「미육군 참모총장(아이젠하워)이 동경 주재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1946. 2. 23.), 김국태 역, 1984, 위의 책, 227쪽.

30 황윤희, 2008, 「번스의 내한활동과 한국 문제 인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쪽.

31 「국무성이 기초한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초안」, 김국태 역, 1984, 앞의 책, 236쪽.

었는데, 군정청 농림부장 이훈구의 발표에 따르면 일인 농지를 방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15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두어 아무 고장 없이 잘 경작하면 경작인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었다. 즉 3·7제의 소작료와 세금, 수리조합비를 납부하면서 15년간 경작하면 농민 소유가 되는 방식이었다.³²

계획은 북한과 대비되는 사적 소유권의 확립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계획의 목적은 무토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독립적 농지 소유자(independent farm owners)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천명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토지 소유권(ownership of the land)을 확대함으로써 일제의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그러나 미군정의 일인 소유 농지 분배 계획은 좌우를 막론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미군정은 다시 1947년 과도 입법의원내 토지개혁 법안의 성립을 촉구했고 입법의원은 조미토지개혁연락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 대표는 박건웅, 이순탁, 강순, 홍성하였고 미국 대표는 번스, 키니(Robert Kinney), 앤더슨(Anderson), 미첼(C. Clyde Mitchell), 에커릭(Ekerik) 등이었다.³⁴ 이 중 번스가 핵심이었고 키니와 미첼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1946년 6월에는 미 대통령 배상 사절단을 이끌었던 폴리가 귀속재산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작은 나라이며 우리의 전 군사력 중의 작은 책임 지역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의 성공 전체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폴리는 미국에게 민주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2 『서울신문』, 1946. 3. 16.

33 이 안에서는 분배대상 농지를 homestead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소유권은 또한 homestead right로 쓰기도 했는데, 정부 공여 농지라는 성격을 드러내는 용례가 아닌가 한다(『국무성이 기초한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초안』).

34 『조선일보』, 1947. 10. 12.

막대한 귀속재산이 인민위원회(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의 소유권 혹은 청구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³⁵

이에 대해 트루먼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데올로기 전쟁터라는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개념에 따른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트루먼은 “토지의 재분배 및 특정 산업의 국유화 조치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들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역설했다.³⁶ 이러한 맥락 하에서 번스는 1946년 8월 다시 한 번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여망을 반영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광범위한 소작제도를 농민 개개인에 의한 토지의 완전소유로 대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⁷

이러한 분위기였기에 미군정은 좌우합작 7원칙에서 규정된 토지개혁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 즉 랭턴은 7원칙이 “일인 소유 토지의 무상 분배 및 한국인의 사적 소유토지의 과감한 축소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과격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³⁸ 미군정은 개인 불하에 기반한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도적인 토지개혁안에도 부정적이었다.

한편 1947년 9월 남한을 방문해 과도 입법의원에 들른 웨드마이어 특사는 통일되고 완전한 자유 조선을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기업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믿는다고 연설했다.³⁹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유재산 원칙에 기반하여 자유주의적 언설을 강조했다.

이렇게 미국은 지속적으로 사유재산 원칙에 입각한 토지개혁 즉, 귀속농지

35 「에드윈 W. 포레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1946. 6. 22.), 김국태 역, 1984, 앞의 책, 307~308쪽.

36 「트루먼 대통령이 파리에 있는 에드윈 W. 포레 대사에게」(1946. 7. 16.), 김국태 역, 1984, 위의 책, 317~318쪽.

37 「재한국 경제고문 번스(Bunce)가 국무장관에게」(1946. 8. 26.), 김국태 역, 1984, 위의 책, 342쪽.

38 「재한국 정치고문(랭턴)이 국무장관에게」, 김국태 역, 1984, 위의 책, 372쪽.

39 『경향신문』, 1947. 9. 3.

불하를 추구했다. 그러나 좌우 양쪽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고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군정의 귀속농지는 1948년 3월에 가서야 「귀속농지매각령」을 통해 분배될 수 있었다.

분배의 의의를 딴 군정장관은 소작농의 자작농화, 조선 역사상 최초로 그들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 지주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 것, 세금의 책임이 없는 것과 함께 “50만 농가가 자유국가의 자유지주가 된 것”으로 꼽았다.⁴⁰ 농민의 지주화, 다시 말해 농민을 사적 소유권자로 만든 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평가했던 셈이었다. 이는 미국의 사적 소유권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토지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다. 번스를 위시해 키니, 미첼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선호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하면 하지를 위시한 군부세력은 보다 완고한 반공주의를 견지하면서 자유주의 세력을 견제했다. 두 세력의 갈등은 현실 권력을 장악한 군부 강경파의 우세로 끝나게 되었다. 그렇기에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클라이드 미첼은 자신의 박사논문 결론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⁴¹

여기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한 인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각계획을 주도한 번스는 일제시기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6년간 YMCA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사정에 상당히 밝은 인물이었다. 귀국 후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위스콘신 학파는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등 자유주의 성향이 강했던 집단이었다.⁴² 이러한 영향으로 번스는 지주

40 『동아일보』, 1948. 3. 23.

41 그러나 미첼은 귀속농지 매각은 예외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했다(Charles Clyde Mitchell, 1949, *The New Korea Company, Limited - Land management and tenancy reform in Korea against a background of United States Army Occupation, 1945-1948*, Cambridge, Mass: Harvard Univ.).

42 그는 미소공위 경제분과를 책임진 대표단 중의 하나였으며 미소공위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이는 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는 입장과도

통제, 소작농 보호 등을 강조한 귀속농지 매각계획을 작성한다.⁴³

번스는 이미 해방 이전부터 해방 이후 생산자원의 소유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의 국유화론과 보수파의 사적 소유론 사이에 극단적 대립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등 상당히 정확한 정세파악을 하고 있었다. 번스는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적 소유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유와 공유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인삼, 담배 등과 철도, 우편, 전신전화 등은 국유로 운영하고 소규모 경공업체는 사적 소유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척과 일본인 소유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면서 지주 보상을 통해 산업자본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요컨대 번스는 해방 후 진행될 농지개혁의 대강을 제시한 셈이었다. 모든 생산시설의 국가 소유를 추구하는 공산주의나 거대 기업을 사유화하지는 사람들을 양 극단으로 파악하여 비판하고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혼합된 경제만이 경제력의 독점과 집중을 피하는 합리적 경제개발이라고 보았다.⁴⁴

해방 이전에 한국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또 하나의 인물은 그라즈단제브(A. Grajdanjev)였다. 이르쿠츠크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영어로 쓰인 일제시기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책은 미첼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한국 사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보이기에 중요성이 더하다. 1944년 출간된 책에서 그는 토지는 지주에게서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를 경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지주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개혁이 병행 가능하다는 뉴딜 정책가들의 기본 가정을 공유했다(안종철, 2010, 「해방 전후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사연구』 31호, 160쪽 등 참조).

43 황윤희, 2008, 앞의 논문, 21쪽.

44 Arthur C. Bunce, 1944, "The Future of Korea: Part I," *Far Eastern Survey* (April 1944), pp. 67~69.

경우가 많기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⁴⁵

미첼은 신한공사에서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한국의 농지개혁을 후원하는 미국의 목적은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소작제라는 악습을 철폐하여 사회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그러나 그가 보기에 미군은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개혁과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기에 수많은 비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다. 결국 자유주의적 개혁은 좌절되었고 미국은 자신이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방어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⁴⁷

그런데 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장했던 흐름이나 미군정 더 나아가 도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까지 모두 일치했던 입장은 사적 소유권이었다. 1948년 일본의 농지개혁을 추진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그 목적을 안정적 토지 소유관계 형성, 개별 가구에 경작가능한 적절한 토지 공급 그리고 최대의 식량생산을 꼽았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토지가 집단 경작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토지는 반드시 수많은 개별 농가에 분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최대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최근의 일본의 농업사와 농민들의 역사를 보건대 이러한 판단은 이데올로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집단적 방법보다 개인이 더 선호되는 것은 철학적 고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지침은 계속해서 농지개혁이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징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특정 철학을 맹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⁴⁸

45 그라즈단제브, 이기백 역, 1973, 『한국현대사론』, 일조각, 352쪽.

46 Mitchell, *op. cit.*, p. 96.

47 *Ibid.*, p. 246.

48 *Instruction - Purpose of Land Reform, The Occupation of Japan: Economic Reform, Selected LexisNexis UPA Collections Relating to Korea*(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054_01_02C0458), pp. 1~2.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농지개혁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를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그 반대 효과를 산출하도록 세심하고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함을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공산주의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토지개혁을 전유하는 것은 이렇듯 양가적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었다.

이는 미 본토의 합동참모본부도 마찬가지였다. 미 합참은 JCS/1380/15 문서를 통해 맥아더 사령부에 농지개혁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세력의 성장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소득, 생산수단과 기업의 소유권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농지개혁의 목적을 두 개로 요약했는데, 생산력의 확충과 농촌 사회의 민주화가 그것이었다.⁴⁹ 여기서 민주적인 세력과 민주화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강조했던 민주주의는 반공을 전제로 한 것이자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자유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7년 8월 무렵 하지는 정치고문이었던 제이콥스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있던 번스의 의견에 기초해 미 극동사령부에 토지개혁에 대한 방침을 보고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농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1946년 2월 번스 사절단이 작성한 개혁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 보고는 민전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토지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총선거 이전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민전이 총선거에서 “공짜” 토지를 약속하며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좌파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토지개혁이 그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⁵⁰

49 *Ibid.*, pp. 3~4.

50 CG USAFIK(Hodge sends for Jacobs and Bunce) to War(State Dept.), 문서번호 ZPOL 999, RG 331, Entry UD 1170, Box 785-5, NARA(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7_00C0029_008, Land Reform Program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한 미첼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기는 했다. 미첼이 보기에 점령군(occupied forces)은 어떠한 형태의 귀속농지 처분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강력하게 선호한 원칙은 “사적” 소유권이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귀속재산의 사유재산으로의 전환이 증산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첼이 보기에 사적 소유권이 더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타당했지만 농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⁵¹ 즉 미첼은 사적 소유와 공유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생각했다고 보는데, 이는 해방 이전 번스의 입장과도 유사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국전쟁과 함께 농지개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1951년 1월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OIR)은 한국의 농지개혁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공정한 농지 분배와 대규모의 자작농 창출이 한국의 건실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발전에 긴요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 한국 정부의 농지개혁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남한지역에서 행해진 북한의 토지개혁 세 가지를 비교 평가하면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유권이 아니라 오직 “경작권”만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권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농민을 이동시키는 정책을 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정과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군정과 남한이 주도한 토지개혁은 분명한 소유권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음이 강조되었다.⁵²

for South Korea Believed to be Highly Desirable in Near Future).

51 C. Mitchell, 1949, *op. cit.*, pp. 96~97.

52 OIR Report 5384: Economic Aspect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RG 59, Entry A1 449(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02_13_00C0017), pp. 12~13.

IV. 1946년 이후 한민당의 토지개혁 정책 변화

한민당은 1946년 이후 자유주의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1946년 12월 한민당 선전부장 김준연은 「합작에 대한 나의 고찰」이란 글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여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자유주의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서 좌익 계열에서는 공산주의적 독재를 의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란 말을 세계에서 널리 쓰는 의미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는 자유를 기초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⁵³ 그러나 한민당의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도 분명했다.⁵⁴

1947년 들어서면 더욱 분명한 형태로 자유주의가 천명되고 있었다. 1947년 6월 6일 한민당 선전부 차장 이상돈은 방송을 통해 “민주주의는 자유적이며 건설적이며 평화적”이지만 “공산주의는 독재적이며 파괴적이며 혁명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자유주의적이며 평화적인 민주주의로서 세계 재건의 기본 원리를 삼는 것이 전세계 인류의 요망”이라고 강조했다.⁵⁵

1947년 한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회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답신안」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민권 항목이었고 그 아래로 1. 생명보장의 기본권, 2. 자유권, 3. 재산소유권, 4. 국가

53 『동아일보』, 1946. 12. 1, 3, 7(심지연, 1982, 앞의 책, 205쪽).

54 해방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1945년 9월 15일 밤 유진오는 김성수와 마주했다. 유진오는 극심해지는 좌우대립을 우려하면서 선거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즉 유진오는 “정부수립의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확신했다. “선거를 해서 진다면 공산당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김성수는 유진오의 말을 무책임한 것이라 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김성수는 “그러다가 우익이 지면 어떻게 하겠? 아무 소리 못하고 공산당 천하가 되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겠소? 유선생 지겠소?”라고 반문했다(유진오, 1977, 『양호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159쪽).

55 이상돈, 1969, 『투쟁 20년: 이상돈 정치평론집』, 신민당 출판국(심지연, 1982, 앞의 책, 229쪽).

기관에 대한 요구권, 5. 참정권, 6. 평등권 등이 제시되었다. 자유권은 다시 인신의 자유, 주택 불가침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저작·간행·집회·결사의 자유, 신념·비밀의 자유, 신앙·사상·학문의 자유, 영업·노동·급·계약의 자유, 기타 인간 발달에 필요한 모든 자유라고 규정하고 기타의 사례로 결혼, 직업 선택, 복장 등을 예시했다.⁵⁶

1947년 미소공위가 완전 결렬되자 장덕수는 「조선 정세에 관한 간략한 진술서」라는 제목의 미출간 원고를 작성했다. 여기서 장덕수는 남과 북을 인권과 재산권으로 구분했다. 즉 “남한에는 민주주의의 정치체도가 시행되어 인민이 비교적 자영하되 북한에는 공산당 독재정치가 실시되어 연합군태평양총사령관의 포고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재산권이 아울러 무시됨으로 국민의 재산은 함부로 몰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덕수는 ‘국가의 기본이 인권과 재산권’임을 명시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비판했다.⁵⁷

같은 해 선전부장 함상훈도 조선이 요구하는 정치·경제 체도를 “언론·집회·결사·출판·종교·선거 등 정치의 기본적 자유를 토대”로 함과 함께 경제에서도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 대기업의 국유, 토지의 균분, 기타 독점적 성질을 띤 사업의 통제 등으로 빈부의 차별을 완화하는 데 민주주의의 진수가 있다”고 주장했다.⁵⁸

이는 물론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해방 공간의 명실상부한 지배권력은 미군정이었고 군정 경험은 미국이 호락호락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1946년은 미소냉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좌우대립 구도가 급전직하로 격화되고 있었다. 1945년 12월 말 전해진 모스크바 회담 결과로 1946년 벽두부터 신탁통치 파동이 거세게 일어나 좌우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56 『동아일보』, 1947. 7. 4~20(심지연, 1982, 위의 책, 251~252쪽).

57 심지연, 1982, 위의 책, 290~291쪽.

58 함상훈, 1947, 「신정치 정세에 관한 테제」, 『민주조선』 창간호(11월호)(심지연, 1982, 위의 책, 304쪽).

지경으로 치닫기 시작했다.⁵⁹

이러한 맥락에서 1946년 들어서면서 한민당의 토지정책은 송진우의 토지 국유화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46년 2월 5일 발표된 한민당의 「정책 세목」은 “토지 소유의 한도 제한과 농민 분위의 경작권 균등 확립, 농업 경영의 자주적 협동조합화, 농업생산의 합리화, 중요 농산물의 통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산업부문에서 계획경제 체제 확립, 중요 산업의 국영 내지 국가관리가 여전히 주장되고 있었음에도 토지문제는 ‘소유 규모 제한’과 ‘경작권 균등’으로 요약되었다.⁶⁰

1946년 7월 발표된 함상훈의 글에서도 “민주주의는 경제에도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자익부하여 빈자익빈하며 부자는 정권을 농락하여 자기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토지는 농민에게 균분해주어야 하며 대기업은 국유 혹은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⁶¹ 역시 토지의 균분만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는 국유제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1946년 10월 7일에는 좌우합작 7원칙에서 유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정책이 발표되면서 정계에 파란을 일으켰는데, 한민당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경작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본당이 원래부터 주장하는 바이나 유상몰수한 토지를 무상분여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요, 이 재정의 파탄을 면하려면 부득이 농민에게 증세를 과하게 될 것이며 또 무상분여한 토지는 결국 경작권만을 인정하고 농민의 소유권

59 2월에는 냉전의 성격이라는 케난의 장문의 전문(long telegram)이 발송되었고 3월에는 처칠의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이 있었다. 3월에 시작된 미소공위는 5월에 무기휴회되었고 곧이어 조선정판사 사건이 터지다가 하면 3개 좌익신문 정간조치가 내려졌고 박헌영과 이강국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이 와중에 좌우합작이 시도되었지만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은 해방 1년의 결산처럼 보였다.

60 한민당, 1946. 2. 8, “7개항의 정책 세목”, 『동아일보』.

61 함상훈, 1946, 「한국민주당의 정견」, 『대조』 1권 2호(7월호)(심지연, 1982, 앞의 책, 161쪽).

은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지니 이는 농민에 대한 일시 기만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⁶²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안재홍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토지는 세습 사유를 보장하되 경제균등의 원칙에서 그 대량 독점을 제한하는 혁명적인 국책”이라고 주장했다.⁶³ 그는 자작 토지는 그대로 사유 경작케 하고 중소 지주들의 토지는 자작량을 빼고 나머지를 채감 매상하여 세습 사유는 인정하되 매매를 금지하여 토지 검병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폈다. 사유재산제와 실질적 국유제가 혼합된 정책인 셈이었다.

한민당의 비판이 전개되자 좌우합작 한민당 대표였던 원세훈은 10월 9일 탈당을 선언했는데, 탈당의 변이 의미심장했다. 원세훈은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를 채용할 것은 확정적인즉, 모든 소작인에게 응분의 토지를 분여하고 소유권을 부여하고 일반적 세제에 의하여 징세한다면 그 무엇이 과중 부담일 것이며 기만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⁶⁴ 여기서 원세훈은 사유재산제 채택이 확정적이라고 단언했는데, 이러한 확정적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과 10개월 전 같은 정당의 송진우는 국유제를 주장했는데, 좌우합작에 나선 원세훈은 사유재산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원세훈이 탈당하자 한민당은 그를 비판하는 견해를 재차 발표하였다.

합작원칙 제3조 토지정책에 있어서는 유상매상한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재정과 경제상뿐만 아니라 건국정신상 막대한 문제이다. 현하 조선은 건박한 건국도정에 있다. 이때에 모든 국민은 이기심보다는 왕성한 奉公心으로써 건국에 공헌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한다 하면 노동자, 薄봉급자 기타 소시민에게는 무엇을 분여

62 『동아일보』, 1946. 10. 9.

63 『한성일보』, 1946. 10. 11(김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9쪽에서 재인용).

64 『동아일보』, 1946. 10. 10.

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는 도리가 아니다. 계급 분열을 일으켜 국가건설을 파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희생으로 일부 농민의 특권계급을 창설할 필요는 어디 있으며 또 국가에서 무상 분여한 토지를 금후 농민이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국가에 유상매도할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이치에 부당하니 무상분여는 결국 토지 국유를 의미하여 농민에게는 경작권만 인정하고 소유권은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⁶⁵

이 비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건국정신상의 문제라는 문구이다. 결국 문제는 무상으로 집중된 썸이었는데, 대가 없는 토지 분여는 자본-임노동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기심보다 봉공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상 분여가 유상 매도로 이어지는 것의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에는 한민당의 토지개혁 전문가인 홍성하가 장문의 신문 연재물을 통해 좌우합작 7원칙을 비판하였다.⁶⁶ 이 글은 앞서 발표된 한민당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홍성하는 유상몰수 무상분배안은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과 함께 “사유재산 제도 하에 있어서 타인의 재산 취득의 대가를 제3자인 다른 국민이 부담할 理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동족애의 도의감으로 혹 용인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유재산을 시인하는 경제이념으로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유상분양이라야 사유가 확보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는데 무상분여한 토지는 제3자에게 유상양도할 수 없을 것은 이치가 정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무상분여한 토지를 다시 유상으로 매입하게 되면 농민의 농촌이탈이

65 한민당, 1946. 10. 12, “합작 7원칙에 대한 당의 견해”, 『동아일보』.

66 한민당은 1946년 5월 23개 분과위원회 중의 하나로 토지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성하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동아일보』, 1946. 5. 7).

심각해질 것이며 또한 국민의 양심이 ○○하고 재정파탄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방안은 농민에게 경작권만 부여하게 될 것이기에 조선 농민이 해방 후 바라는 토지소유는 불허되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므로 농민의 토지사유를 인정하려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⁶⁷

홍성하는 농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즉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하게 되면 노동대중에게는 공장을, 어부에게는 어업상 필요 용구를, 소시민에게는 사업장을 무상 분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게다가 무상 분여는 토지 처분권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기에 처분권을 부정하는 소유권은 성립 불가능하고 결국 국유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그는 토지만 국유로 하고 다른 재산을 사유로 하는 예가 근대 이후로는 없다고 하였다. 예컨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영국 노동당이 권력 장악 후에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국유화 역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반정부 감정만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⁶⁸

그러나 홍성하도 개인의 사유를 부인하여 빈부의 차이, 계급의 분립이 없는 이상사회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절대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조선의 현실로 인하여 맹목적 이상만을 절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현실이란 공산당도 지적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혁명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과 함께 국제성을 몰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미소 냉전을 고려하건대 사유재산제의 부정은 불가능하다는 논지였다. 농민들 역시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보다는 재래 관습에 근간을 둔 농업경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⁹ 즉 “조선의 농민대중이 갈망하는 바는 농경지 즉 전답을 소유하자는 것

67 홍성하, 1946. 10. 30, “토지정책의 비판 2”, 『동아일보』.

68 홍성하, 1946. 11. 2, “토지정책의 비판 5”, 『동아일보』.

69 홍성하, 1946. 11. 6, “토지정책의 비판 6”, 『동아일보』.

이고 또 전 세계의 농민이 모두 다 이것을 바라는 바라고 단언”했다.⁷⁰

이는 확실히 당대의 현실 감각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농민들이 강렬한 토지소유 욕망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기존의 관습적·도덕적 범주 안에서 자신을 사적 토지 소유권자로 만들겠다는 욕망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즉 농민들은 사적 소유권의 폐지가 아니라 스스로 사적 소유권자가 되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농민들의 도덕은 사적 소유권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성립했다고 보인다.

미군정은 1946년 상반기 귀속농지 매각계획을 추진하면서 모두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3월의 첫 번째 조사에서는 농민의 69%가 토지개혁에 찬성했고 그중에서 80%는 유상분배를, 20%가 무상분배를 원했다. 토지개혁을 반대한 31%도 국가 몰수를 주장한 비율이 79%였고 지주 소유를 주장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한국인 대지주의 토지 재분배에 반대하는 농민은 6.5%에 불과했다.⁷¹

5월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귀속농지 무상분배 주장이 16%로 유상분배의 7%를 압도했다. 그러나 한국인 소유 토지의 경우 무상이 7%로 10%의 유상분배 주장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농민의 경우 귀속농지는 유상과 무상이 동일하게 8%인 반면 한국인 토지의 경우 5% 대 12%로 유상분배를 주장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노동자가 귀속농지의 경우 27% 대 5%로 무상분배를 지지했고 한국인 토지는 8.5%가 무상분배, 9%가 유상분배를 주장해 그 차이가 미미했던 것과 대비된다.⁷² 6월의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요컨대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력했고 미군정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귀속농지 매각계획을 취소했다.

70 홍성하, 1946. 11. 1, “토지정책의 비판 4”, 『동아일보』.

71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 1946. 3. 12, 이길상 편, 1992, 『해방전후사 자료집』 I, 원주문화사, 371~372쪽.

72 *Ibid.*, pp. 376~377.

농민의 입장은 노동자보다 사업가 및 전문 직업인들과 비슷했다. 유상분배 안을 지지한 것은 사업가들이 농민들보다 조금 더 높았을 뿐이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농민들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완강했다고 하겠다. 조선공산당은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공박했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농민의 계급적 위치는 프티 부르주아이다. 이미 사적 소유권이 오래전부터 관습화된 조건 하에서 소소유자로서의 계급적 속성을 고려하건대 농민들의 태도가 사유재산에 친화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⁷³

즉 농민들이 유상분배를 선호한 것은 분명히 사적 소유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민당 인사들이 강조했듯이 무상으로 분배받은 토지를 농민이 유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당대의 도덕률에 비추어 용납되기 곤란했고 이는 곧 소유권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농민들로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유상분배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기존 질서의 도덕률과 시장논리에 근거해 판단하자면 유상분배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소유권 확보 방안으로 보였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은 도덕적 문제 대신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은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하되 국가 권력의 강제력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는 지배적 방식으로서의 계약과 거래의 방식이 아닌 정치적·혁명적 개혁으로서의 무상몰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인)이나 민족 반역자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결국 홍성하의 주장 역시 이러한 정치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40년간 반일제 투쟁 또는 일제와 불합작한 혁명세력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하여 온 선량한 지주층까지를 전부 친일 지주층과 동일시하여 그들에게 직업 선

73 조선공산당의 비판은 『해방일보』, 1946. 3. 15 참조(신병식, 1992, 앞의 논문, 133쪽 각주 9에서 재인용).

택권을 박탈하고 전업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실업군중으로 만든 것은 건국도상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로자의 토지는 면적의 다과를 불문하고 할양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⁷⁴

1947년에 들어서면 토지개혁을 둘러싼 좌우익의 입장이 보다 더 선명해진다. 1947년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자 한민당 주도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가 조직되어 미소공위에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답신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제시된 토지제도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自地自農의 원칙 하에 적산 토지와 정부에서 매상한 대·중 지주의 토지는 경작 농민에게 유상 분하여 소유케 한다.” 이어 지주에 대해서는 “농토자본을 계획적으로 산업자본에 전환케 한다”고 하여 농지개혁의 대강의 틀을 확정했다고 보인다.

이어서 토지 국유화 정책을 비판했다. ① 토지를 국유화하며 무상으로 영구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것은 농민에게 소유권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감하여 농토 보존과 농업 생산력의 달성을 기하기 難할뿐 아니라 농민을 영구히 농노화하는 것이 되며, ②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서 무상몰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유상몰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상 부담이 과중하므로 불가하다는 게 요지였다.⁷⁵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상몰수가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국유화 자체가 사유재산의 부정이 아니라 무상으로 몰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이는 송진우가 주장했던 국유화가 유상몰수에 따른 것이라면 사유재산제 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토지 국유화가 사적 소유권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한민당

74 홍성하, 1946. 10. 31, “토지정책의 비판 3”, 『동아일보』.

75 심지연, 1982, 앞의 책, 264쪽.

의 사유재산 담론이 정세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쨌든 1947년경이 되면 우익세력의 토지개혁 담론은 사적 소유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1946년 12월 과도 입법의원이 구성된 이래 토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몇 개의 개혁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합의된 안은 없었다. 그렇지만 1947년 중순경 미군정 경제고문 번스는 민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사적 소유권(the right of private ownership)의 인정, 소작인에게 판매, 최대 15년 이내 상환, 지주 보상 등을 포함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파악했다.⁷⁶

심지어 1948년 5·10 총선을 준비하면서 한민당은 “한독당의 토지정책이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경제정책이 공산당과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을 비판하기까지 했다.⁷⁷ 1945년 송진우의 토지 국유화 주장과 1948년 토지 국유화 비판 사이의 변화는 해방 공간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한민당의 극적인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1946년을 기점으로 한민당의 토지개혁 구상과 담론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적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1945년 말 송진우의 토지 국유화 방침과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었다. 송진우를 비롯해 임시정부 계열 등도 토지 국유화를 기본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었지만, 1946년 이후 한민당은 사유재산을 절대적 원리로 천명하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이라는 현실적 지배권력의 영향력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미군정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공산주의 및 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하면서 적산토지 불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했다. 비록 1948년에 가서야 실현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책 방침

76 Land Reform in Korea(1947.12.12), Land reform,1946-1949,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File 895, RG 59, NARA(국회도서관).

77 『동아일보』, 1948. 5. 5.

이 분명하게 확인되면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토지개혁 구상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해방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는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세계적으로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한반도는 이러한 정세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이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냉전체제가 지역적으로 관철되면서 자유주의-자본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체제 형성이 가속화되었다. 냉전은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남북한에 각기 다른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개혁 의제로 떠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신민주주의에 입각한 토지개혁에 나섰다면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 주도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각각 사회주의적 지향과 자본주의적 지향을 대표한 두 국가의 토지개혁은 곧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중국의 그것과 유사한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일본의 그것은 남한의 농지개혁과 연동된다고 하겠다. 진영 간 대립은 곧 전후 사회개혁 프로그램 중의 대표적 사안이었던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의연 관철되었다고 하겠다. 토지개혁은 다만 여러 개혁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역시 농업, 농촌, 농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토지개혁은 향후 전개될 사회개혁의 방향은 물론 체제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문

제라고 여겨진다. 요컨대 중국과 북한의 토지개혁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면 한국과 일본의 개혁은 자본주의 질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 중의 하나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사유재산 원칙과 자유주의 프로그램에 입각해 한국의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미국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기에 보수적 군부세력과 자유주의자들 간의 일정한 편차와 갈등이 있기도 했다. 번스와 미첼 등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선호하면서도 사유와 공유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방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사적 소유권의 무조건적 관철을 강조한 보수적 군부세력에 압도되었고 별다른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 일정한 차이에도 전체적으로 미군정은 사적 소유권 원칙을 거의 무조건 관철시키고자 했다.

한국의 농지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유주의 이념은 물론 그 정치세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자본주의 계열의 이념적·정치적 지향이 투영된 핵심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지주 정당으로 여겨진 한민당의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민당은 당대 최고의 보수정당이었고 또 1950년대 이후로 이른바 ‘정통 보수 야당’의 뿌리로 여겨진다.

한민당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애초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분명한 토지개혁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다. 이후 한민당을 주도하고 있던 송진우는 1945년 말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토지정책을 주장했다. 송진우는 조선공산당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이 향후 토지점병을 유발해 소작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토지 국유화만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당은 1946년 들어서면서 입장을 변경해 사유재산제에 입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0년 농지개혁이 시행될 때까지 한민당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한민당의 입장 변화는 미군정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개혁 정책과 연동되는 것이었다. 즉 미군정은 광범위한 지지기반 창출을 위하여 좌우합작과 함께 적산

토지 불허를 준비했고 그 기본 골자는 사유재산제에 입각하여 자유 농민들을 대거 창출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남한의 통치권력이었던 미군정의 정책은 미소간의 냉전이 형성되고 있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민당의 자유주의적 정책선회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요컨대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 우익 진영은 냉전체제 형성 과정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내면화하는 정책 지향을 실천했다고 판단된다.

해방 공간은 사적 소유권과 사유재산제의 상당한 위기 국면이었다. 한민당조차 토지 국유화를 주장할 정도로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 사례가 될 정도로 해방 직후의 정세는 사유재산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것이 역전되어가는 과정이 곧 한국 현대사의 출발점이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경향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 『거인의 숨결 - 고하 송진우 관계자료집』.

김국태 역, 1984, 『해방3년과 미국』 I, 돌베개.

김남식 엮음, 1988, 『남로당 연구』 II(자료편), 돌베개.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김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해영, 1906(광무10년), 『윤리학교과서』 권3, 보성중학교.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 연구』 I, 풀빛.

유길준, 1908, 『노동야학독본』.

유길준, 허경진 옮김, 2004, 『서유견문』, 서해문집.

유진오, 1977, 『양호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길상 편, 1992, 『해방전후사 자료집』 I, 원주문화사.

그라즈단제브, 이기백 역, 1973, 『한국현대사론』, 일조각.

강정구, 1990,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경제와사회』 7.

기광서, 2012,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62.

김민환, 2001, 「《해방일보》와 《노력인민》의 사회사상」, 『언론과사회』 9, 2.

김성보, 2005, 「1900~50년대 鎭川郡 梨月面の 토지소유와 사회 변화」, 『한국사연구』 130.

김성욱, 2011,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법학연구』 42.

김재웅, 2011, 「북한의 사유제 정착과정과 민간 산업정책(1945~1950)」, 『한국사연구』 152.

신병식, 1992,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병식, 1997,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1(3).
- 신용욱, 2008, 「미군정 · 이승만 정권기 국가자본으로서 귀속재산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4집.
- 오두환, 1994, 「해방후 적산처리의 실태와 특징」, 『항해문화』 5호.
- 오창현, 2008, 「농지개혁과 마을 공동체의 변형: 경기 동남부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2).
- 윤덕영, 2010, 「일제하 · 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구조의 중층성」, 『한국사연구』 165호.
- 이용기, 2013, 「해방 후 토지소유구조의 변동을 통해 본 농지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전남 강진군의 동성촌락 수양리 사례를 중심으로」, 『청람사학』 22.
- 이원덕, 2008,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22호.
- 장상환, 1990, 「農地改革과 農民」, 『한국사 시민강좌』 6.
- 전강수, 2010,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역사비평』 91.
- 정병준, 2003,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완료시점 · 추진동력 · 성격－」, 『역사비평』 65.
- 최선웅, 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모니까, 2012, 「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 과정과 그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62.
- 황윤희, 2008, 「번스의 내한활동과 한국 문제 인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itchell, Charles Clyde, 1949, *The New Korea Company, Limited - Land management and tenancy reform in Korea against a background of United States Army Occupation, 1945-1948*, Cambridge, Mass: Harvard Univ.
- Bunce, Arthur C., 1944, "The Future of Korea: Part I," *Far Eastern Survey* (April 1944) *Instruction - Purpose of Land Reform, The Occupation of Japan: Economic Reform*, Selected LexisNexis UPA Collections Relating to Korea(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054_01_02C0458).
- CG USAFIK(Hodge sends for Jacobs and Bunce) to War(State Dept.), 문서 번호 ZPOL 999, RG 331, Entry UD 1170, Box 785-5, NARA(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031_57_00C0029_008, Land Reform Program for

South Korea Believed to be Highly Desirable in Near Future).

Land Reform in Korea(1947.12.12), Land reform,1946-1949,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File 895, RG 59, NARA(국회도서관).

OIR Report 5384: Economic Aspect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RG 59, Entry A1 449(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코드 AUS002_13_00C0017).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 토지개혁 구상을 중심으로

황병주

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 공간 한국민주당의 토지개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개혁 의제로 떠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곧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농업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상황이었기에 토지개혁은 향후 전개될 사회개혁의 방향은 물론 체제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대비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자본주의 계열의 이념적·정치적 지향이 투영된 핵심 과제였기에 보수적인 지주 정당으로 여겨진 한민당의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민당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애초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분명한 토지개혁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다. 이후 한민당을 주도하고 있던 송진우는 1945년 말 ‘토지구유화’를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토지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당은 1946년 들어서면서 입장을 변경해 사유재산제에 입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을 추진

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0년 농지개혁이 시행될 때까지 한민당의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한민당의 입장 변화는 미군정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개혁 정책과 연동되는 것이었다. 즉 미군정은 광범위한 지지기반 창출을 위하여 좌우합작과 함께 적산 토지 불하를 준비했고 그 기본 골자는 사유재산제에 입각하여 자유 농민들을 대거 창출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 우익진영은 냉전체제 형성 과정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내면화하는 정책 지향을 실천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토지개혁, 자유주의, 한국민주당, 사유재산, 국유화, 냉전

ABSTRACT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rivate Property Discour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Soon After World War II: Focusing on Land Reform Policy

Hwang Byeongju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land reform discourse of the Korean Democratic Party (KDP) soon after World War II. Emerging in the Cold War system, land reform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e issue of land reform in China and in Korea was critical because both countries essentially were agrarian societies. This was the key point for determining the orientation of social reform and the identity of the reforms.

Land reform in South Korea was based on liberalism-capitalism, and differed from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which was based on socialism. The KDP was a classic liberal party in South Korea. The party had no definite policy of land reform just after liberation. Song Chinwoo, the most prominent member of the KDP, began to insist on

land nationalization from the end of 1945. But the KDP changed its policy on land reform in early 1946. The party began to insist on confiscation with compensation and an onerous distribution of land,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The KDP's change of policy was related to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USAMGIK supported the Left-Right Coalition Committee and prepared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for creating a foundation of suppor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diffuse the right of private ownership in Korea. As a result, the KDP began to internalize the program of liberalism, which was under the aegis of the United States.

Keywords: land reform, liberalism, Korean Democratic Party, private property, nationalization, Cold War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윤해동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 I. 머리말
- II.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
- III. 이승만과 냉전자유주의
- IV. 박정희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V. 맺음말



I. 머리말

주요한 정치이데올로기가 대개 그렇듯이 자유주의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다. 자유주의만큼 논란이 많고 쓰임새가 다양한 이데올로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쓰이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용법의 다양성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 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의 정통성을 지닌 이념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보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자유주의는 자유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이념으로서, 현실의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에 우호적인 세력 혹은 이념으로 비판된다.² 이처럼 한국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보수해야 할 정통이데올로기와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할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한국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 자유주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자가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주의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이런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자유주의가 객관적인 분석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왔던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혹은 부정적인 것이든, 자유주의는 한국의 주요한 근대 정치이데올로기로 기능

* 투고: 2017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20일, 게재 확정: 2018년 2월 28일

* 본 논문은 2016년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1 북거일, 2016,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북앤피플, 6~23쪽.

2 손호철, 2010,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지역과 전망』 22호.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구별되는 정치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결합한 이론적 복합물로서 주로 정부의 형태를 규정하는 이론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³

이런 차원에서 해방 후 냉전기 자유주의의 변형태 곧 ‘냉전자유주의’를 통해 한국 현대정치 of 한 면모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승만이 자유주의자였던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왔지만,⁴ 이승만이 자유주의 세례를 일찍부터 거쳤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⁵ 따라서 이승만정권이 출범할 때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냉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인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를 냉전자유주의를 매개로 해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⁶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냉전자유주의는 쇠퇴하는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었던바, 그것이 한반도에서 이승만을 통해 드러날 때 과연 어떤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자유주의를 냉전자유주의로 이해할 때,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통해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남북분단이 고정되고 냉전이 정치화되면서, 박정희정권기 한국의 정치제도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는 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전면화하였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박정희의 탈자유주

3 강정인, 1997,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61~162쪽.

4 예를 들어 서중석,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이 책의 저자는 일민주의를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이승만의 정신구조가 전 근대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5 남정욱 외, 2016, 『시간을 달리는 남자』, 백년동안 참조.

6 이승만의 자유주의를 ‘반공적’ 자유주의로 평가한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양승태·전재호, 2007,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21집.

의적인 이데올로기 전환이 가져온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던가?⁷ 이를 냉전자유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탈자유주의적이거나 반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 사상의 속성을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철학적 논의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자유주의 수용과 전개에 대한 실증적이고 역사주의적인 접근을 수행한 연구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중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에 관한 연구⁸와 자유주의의 양면성을 토대로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⁹가 돋보인다. 또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추적한 연구는 많지만, 그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탐색한 연구 역시 이제 출발점에 선 정도이다.¹⁰

이 글은 냉전자유주의의 변화를 통해 1950~1960년대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 변화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에 수입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거시적 성격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자유주의는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런 점에서 식민주의와 결합하거나 식민주의적 성격을 표출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에 수용될 때 그것이 드러내는 성격을 냉정하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기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 그들이 자유주의와 맺었던 관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단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전개되던 냉전의 변화양상이며, 다른

7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냉전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다음의 논의가 참조가 된다. 강정인·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1호.

8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9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후마니타스.

10 양승태·전재호, 2007, 앞의 글;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참조.

하나는 당시 구미지역 특히 미국과 독일의 ‘냉전자유주의’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와 맺고 있던 관련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렌즈를 통하여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재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은 한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전환’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학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혹은 논의에 비해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한국의 자유주의는 긍정, 부정의 양쪽 진영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상실한 옹호 혹은 거부 태도로 인하여 깊이 상처받았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명제가 커다란 주목을 끌었으나, 아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나 적부 여부 나아가 그것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맺는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정치적 근대성의 핵심 가운데 하나를 자유주의가 구성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지만, 자유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아무런 합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II.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

자유주의는 붕괴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인가?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이후(After Liberalism)’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가 가진 유용성과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자유주의도 붕괴되었다고 진단하고, 자유주의 이후를 사유해야 한다고 권유한다.¹¹ 그러나 최장집은 한국의 정치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주장한

11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참조.

다.¹² 한쪽에서는 붕괴되었다고 진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현실에서 필요하다 주장하는 이 이데올로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붕괴를 진단하는 사람은 미국 출신의 세계체제론자이고,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학자는 한국 출신의 정치학자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차이에 자유주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대개의 경우 양면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예컨대 자유주의가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¹³ 그 이면에는 자유주의가 가진 보수성을 경계하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해도 좋다. 혹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진보적인 측면을 가진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쉬이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계하기도 한다.¹⁴ 또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표방되기도 하지만 저항 이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¹⁵ 한편 자유주의를 우파 자유주의와 좌파 자유주의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우파 자유주의는 헌법적 보수주의와 그리고 좌파 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¹⁶ 자유주의가 항상 자유주의'들'로 존재해왔다는 지적은¹⁷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자유주의 연구가 쉬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까다로운 주제로 악명을 떨쳐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는 17세기 서유럽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후 19세기까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였다.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인데, 그

12 최장집 외, 2017,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참조.

13 최태욱 역음, 201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참조.

14 이근식, 2011,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최태욱 역음, 위의 책, 31~65쪽 참조.

15 문지영, 2011, 앞의 책 참조.

16 민경국, 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1~54쪽.

17 Alan Ryan, 1999, "Liberalism",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 eds.,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ress, p. 291; 문지영, 2011, 앞의 책, 12~21쪽 재인용.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핵심은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¹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토대는 인간과 세계의 분리 그리고 개인의 고립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이상적 개인은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자신이 행위의 근원이 된다. 이런 자기완결의 개념에서 자기소유의 개념이 발전한다. 인간의 삶은 자기자신에게 속한다는 17세기 이후의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중심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로크에게 이르러 자신이 소유자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이 표면화되었고, 자신의 행동과 생업의 소유권은 물질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¹⁹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초기 부르주아가 주체가 된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운동과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경제와 결합하면서 전형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²⁰

그러나 19세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를 보호하는 개인주의적 전제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고, 정치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와²¹ 자유주의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려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현대적 자유주의’²²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20세기 자유주의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진단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의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18 앤서니 아블러스터(Anthony Arblaster),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흥성과 쇠퇴』, 나남.

19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의 책, 49~92쪽.

20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의 책, 193~546쪽.

21 자유민주주의의 등장과 성격에 대해서는 강정인, 1997, 앞의 책 참조.

22 황경식, 2005,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철학연구』 71.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자유주의가 결합하는 방식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 관련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체제론의 대표적 이론가 월러스틴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월러스틴은 19세기 이후 세계체제를 끌고 간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1789~1848년까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헤게모니투쟁을 벌인 시기였고, 1848~1914년(혹은 1917년)까지는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도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1917~1968년까지의 시기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기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 변화함으로써 어쩌면 자유주의가 신격화하였다고 주장한다.²³ 요컨대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그리고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로 군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20세기 들어 자유주의가 무대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지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 특히 헤게모니 국가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현저하였다.²⁴ 19세기 영국의 이른바 ‘자유무역 제국주의’²⁵와 20세기 미국의 근대화이론 혹은 인권을 내세운 제국주의적 행태²⁶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식민주의적 속성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그중에서도 소유적 개인주의²⁷와 관련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상적 개인이 갖

23 이매뉴엘 월러스틴, 강문구 역, 1996, 앞의 책, 103~175쪽.

24 장미셀 카트르푸앵, 김수진 역, 2015, 『제국의 충돌』, 미래의 창, 292~293쪽.

25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대한 고전적 저작으로 毛利健三, 1978, 『自由貿易帝國主義: イギリス産業資本の世界展開』,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26 대표적 성과로 권용립,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참조.

27 C. B. 맥퍼슨, 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김남두 편, 1993, 『재산권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참조.

는 자기소유의 속성은 물질적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소유적 개인주의로 발전하였다. 17세기에 활동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로크는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지지하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식민주의는 이렇게 출발하였다.²⁸

자유주의는 18세기 이후 인종주의와 결합하고, 백인들의 ‘문명화사명’을 지지하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개척자로 알려진 밀의 말에 주목해보자. 밀은 모든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굳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이 자유주의 이론은 성숙한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 즉 “인종 전체가 미성년의 단계에 있는 후진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진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야만인을 대하는 통치의 정당한 방법이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정당화되는 수단”이라고 강변한다.²⁹

이런 인종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가 결합하여 이른바 ‘주인 없는 땅(no man’s land)’에 대한 수사 곧 식민지 영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절대적 논리가 부상하게 된다. 제국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열등민족을 문명화하기 위해서 식민화사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필요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종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였던 것이다.³⁰

이제 비서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의 행로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본 바 자유주의 고유의 식민주의적 성격이 비서구사회에 수용될 때 어떤 양상을 띠

28 허재훈, 2014, 「식민주의의 기초: 존 로크와 아메리카, 인디헤나의 수난사」, 『철학연구』 130집. 존 로크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건설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법과 자유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9 존 스튜어트 밀, 김형철 역, 1992, 『자유론』, 서광사, 15~38쪽.

30 질 망스롱(Gilles Manceron), 우무상 역, 2013, 『프랑스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게 될 것인가? 비서구사회의 자유주의는 식민주의적 속성이 발현될 때에는 곧 바로 지배이데올로기로 전환하게 될 것이지만, 반식민주의와 비판적이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다. 비서구사회의 자유주의 나아가 식민지의 자유주의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이러한 ‘모순적 양면성’이었다. 이제 한국에 수용된 자유주의의 경험을 통해 비서구사회 자유주의의 행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 자유주의 수용의 특성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해왔다. 첫째, 자유주의적 제도 혹은 정체(政體)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 둘째, 민권과 아울러 국권에 대한 강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 셋째, 서구 자유주의의 다양한 사조를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¹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핵심적 가치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이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에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하에서 자유주의는 제국주의와 타협하거나 혹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두 가지 길로 나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전자는 자유주의 가치를 외부적 강제의 부재로 볼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후자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주권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할 경우에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이처럼 식민지 자유주의는 부르주아의 관용 혹은 시혜를 강조함으로써 타협적 길을 걷거나, 국민국가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저항적 민족주의로 굴

31 문지영, 2011, 앞의 책, 45~54쪽; 김도형, 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4년 여름호; 김석근, 2011,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동양정치사상사』 10-1; 노상균, 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7.

절하게 될 터였다.³²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었지만, 양자는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향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에서 분화하여 자신의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³³ 해방 후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 헌법 제정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³⁴ 하지만 그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유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체제수호의 공식 이념이자 정치언어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의 슬로건으로 기능했던 자유주의가 실제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냉전-반공이데올로기 혹은 부르주아지들의 이념으로 이해하였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32 식민지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개 자유주의가 가진 이런 양면성을 강조한다. 문지영, 2011, 앞의 책, 55~72쪽; 박찬승, 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박만규, 1999, 「안창호 민족주의에서의 자유주의」, 『한국사학』 17; 전재호, 2004, 「자강론과 자유주의-식민지초기(1910년-1920년대 초) 신지식층의 자유주의관」, 『정치사상연구』 10-2; 정용화, 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1; 정미량, 2007, 「1920년대 제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학지광』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4집; 채오병, 2012, 「제국의 사이클과 지역 정치문화-전간기 동아일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와역사』 94; 이평전, 2013, 「근대 자유주의의 문학적 수용양상 연구-신채호, 이광수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담론』 75 등.

33 문지영, 2011, 앞의 책, 73~101쪽.

34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그것이 갖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최강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후마니타스.

평가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³⁵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이원화되고 파편화된 수용 구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식민지에 수용될 때 나타나는 굴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Ⅲ. 이승만과 냉전자유주의

1. ‘냉전의 군사화’ 그리고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유주의를 규정한 가장 강력한 현실은 ‘냉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모든 방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분야 곧 군사분야에서만 그런 우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핵무기의 우위조차 1949년이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암묵적 거래 곧 냉전이었다. 미소의 군사적 배치선을 따라 세계는 양대세력권으로 분할되었다. 또 그 영역 내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분할선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암묵의 합의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 전쟁은 붕괴되기까지 진영의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으로 유지되었다.³⁶ 한반도에는 1940년대 후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제국이 붕괴된 이후 식민지기의 트랜스내셔널한 연계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동아시아는 이제 냉전의 대분단선을 따라서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었다.³⁷

35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 엮음, 앞의 책, 66~107쪽.

36 이매뉴엘 월러스틴 외, 2014,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21~74쪽.

37 이삼성, 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55호.

하지만 ‘열전’ 역시 식민지의 유산을 안고 진영의 분할선 안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다.³⁸ 한반도는 처음에는 냉전의 분할선을 최전방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전쟁을 통하여 냉전에도 ‘전쟁을 통한’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NSC-68을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였다. 이 문서는 군사력에 GDP의 20%까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한반도에서의 열전도 미국 냉전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곧 ‘냉전의 군사화’였는데, 미국은 지역 동맹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략무기 경쟁에 몰입하였다.³⁹

1950년대의 한반도는 열전의 잔여공간으로서, 이 시기에 공간이 재확정된 남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결여로 인하여 고통받고 갈등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것이 이승만의 변형된 자유주의 곧 냉전자유주의가 생존하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냉전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세기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확실히 쇠퇴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었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냉전자유주의는 쇠퇴기의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이데올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부활한 자유주의의 특징은 ‘반공주의’와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냉전자유주의’라고 통칭해왔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왔지만, 특히 20세기 들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은 통렬한 것이었다.⁴⁰

냉전시기에는 반공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자유주의의 주요한 성격을 구성하

38 권현익, 이한중 역, 2013, 『또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 민음사. 권현익이 주로 식민지배의 유산을 둘러싸고 열전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9 이근욱, 2012, 『냉전』, 서강대학교출판부, 27~85쪽;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역,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67~110쪽; 존 루이스 개디스, 장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75~168쪽 참조.

40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게 됨으로써 자유주의의 더 근본적인 원리들이 무시되거나 희생될 정도였다. 언론의 자유와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들은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원리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가치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나아가 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메카시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강렬한 반공주의를 장착한 냉전자유주의는 비자유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반공주의라면 수용할 수 있었고, 그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냉전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고 반자유주의 곧 자유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배반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승인한 배반이었다.⁴¹

이 시기 냉전자유주의자들은 1953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월간지 『인카운터(Incounter)』와 그를 잇는 각종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하였으며,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들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 나갔다.⁴² 냉전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자유주의라는 특징을 지녔으며, ‘전체주의’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의 지적인 기원이 좌파 유토피아주의로 간주되었으므로 세속적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거나 혹은 그 종언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냉전자유주의는 자신들이 비이데올로기적이거나 심지어 반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의 급진주의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냉전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민주주의 개념과 이론을 전체적으로 새로 규정해나가는 것에 모아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주의적 재해석은 이렇

41 앤서니 아블러스터, 조기제 역, 2007, 위와 같음.

42 냉전자유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조. 프랜시스 스톤리 손더스 (Frances Stonor Saunders), 유광태·임채원 역, 2016, 『문화적 냉전-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게 해서 새로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³

최근 미국 학계에서는 1950년대 미국에서 뉴딜개혁 정책은 거의 부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뉴딜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고 있었다는 새로운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 반공주의는 오히려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냉전정책이 실업정책, 기업규제, 경제발전과 인권 등의 자유주의적 목표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⁴ 마셜의 냉전정책은 경제발전과 반공주의가 결합한 것으로서, ‘뉴딜 자유주의의 전후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위기상황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정당화하였으며,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였다. 요컨대 냉전은 전후 자유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었다. 집중화된 국가권력과 현대화된 자본주의가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어젠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수용되었다. 게다가 냉전이 보수주의 운동을 분할하고 약화시킴으로써 1950년대 내내 보수주의는 방어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1950년대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도 뉴딜자유주의 혹은 냉전자유주의가 미국 정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⁴⁵

2. 이승만의 자유주의: ‘냉전적 반공자유주의’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그동안 자유주의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대신 일민주의가 이승만의 정치이념으로 간주되어 관심을 끌어들었다. 이승만정권 초

43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44 Jennifer A. Delton, 2002, *Making Minnesota Liberal: Civil Righ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nifer A. Delton, 2009, *Racial Integration in Corporate America, 194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Jennifer A. Delton, 2013, *Rethinking the 1950s: How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Made American Liber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부터 권력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일민주의는, ‘공식적으로’는 이승만이 정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승만이 처음으로 창안하고 제창했으며,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몇몇 이데올로그들이 체계화하였다고 인정되었던 것이다.⁴⁶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민주의가 안호상이 창안하고 입안한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다.⁴⁷ 일민주의가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는 협소한 해석을 넘어, 철학자 안호상이 자신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구축한 자생적 실천철학의 단초라는 방식으로, 철학적 성과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일민주의는 안호상 특유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그렇다면 이승만은 왜 지극히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다원론적 입장에서 있던 일민주의 이념⁵⁰을 잠시 동안이나마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일까? 안호상이 실천철학의 체계로 만들어갔던 일민주의(‘한백성주의’)와는 달리, 1949년 4월경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일종의 국시(國是)와 같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안보위기에 직면한 이승만이 체계적으로 반공체제를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1950년 4~5월 사이에 이범석, 안호상 등 이른바 ‘족청계’가 이승만정권에서 실각함으로써 완

46 김혜수, 1995,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 김수자, 2004,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 22; 서중석, 2005, 앞의 책; 김석수, 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돌베개.

47 선우현, 2015, 「일민주의 철학의 정립자, 이승만인가 안호상인가」, 『시대와 철학』 73호. 1950년 출간된 안호상의 저작 『일민주의 본바탕』이 실은 1949년 9월에 출간된 『일민주의 개술』(이승만)에 앞서 집필된 것이라는 안호상 본인의 회고가 설득력이 있다.

48 선우현, 2015, 위의 글.

49 이병수, 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 19-2.

50 강정인·하상복, 2013,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환경·미래』 10호.

전히 종결되고 말았다.⁵¹

이승만은 족청계열 정치인들이 내세우고 있던 일민주의를 자신의 정권유지와 반공체제 구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승만정권이 그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뉴라이트 세력과 함께 우파 수정주의적 경향의 근현대사 연구가 부상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중시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國父)로 추앙하는 논의가 무성하게 전개되었다.⁵² 하지만 정작 체계적인 이승만 연구 그중에서도 이승만의 사상세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³

이승만의 초기사상에 대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많은 조명이 가해졌는데, 그것은 대체로 그의 자유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초기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민권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민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또 자연법적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헌법정치에 입각한 공화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적극적인 통상무역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⁵⁴ 식민지기의 이승만은 이런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반공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더하고 있었다.⁵⁵

51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225~271쪽.

52 대표적으로 유영익 편, 2000, 『이승만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최상오 외,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송복 외, 2011,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53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고정휴, 1986,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109; 주진오, 1996,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 유영익, 1996,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김학준, 2000,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54 하유식, 2000,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 『지역과 역사』 6호.

55 오영섭, 2012, 「1910-1920년대 『태평양잡지』에 나타난 이승만의 정치사상」, 『한

자유주의를 기준으로 이승만의 정치이념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지만,⁵⁶ 냉전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깊다. 이승만이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 1950년대 미국의 뉴딜자유주의 혹은 냉전자유주의와 소통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이념은 쉽사리 반공주의와 결합하였으며, 미국의 제3세계 독재정권 지원에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를 크게 다음 네 가지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옹호, 둘째,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 셋째,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립항으로서의 반공주의(혹은 반소주의), 넷째,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먼저 자유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식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보자. 이승만은 ‘건국 기초에 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한다.

1.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 목하의 사소한 장애로 인하여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 방침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할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유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국민족운동사연구』 70.

56 양승태·전재호, 2007, 앞의 논문 참조.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1. 인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 판단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⁵⁷

먼저,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제도만이 인민의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권과 개인의 자유는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민족이 스스로 획득한 산물이므로, 언론·집회·종교·사상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승만은 「식사」를 진행하는 중에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언표상으로는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임군이 가진 권리를 남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만들어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 행사하게 만들고 정부관리는 다 내각원으로 대통령 행정기관의 모든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민의 자유권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법률하에 동등권리를 가지게 한 것이다. ……”⁵⁸ 이와 아울러 이승만에게는 3·1운동조차도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5년 3·1절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은 독립만세 10주년이요 3·1운동 36회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57 이승만, 1976,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경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1948. 8. 15)」,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565~570쪽.

58 이승만, 1956, 「국무총리 문제에 관하여(1954. 6. 18)」,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공보실, 37~38쪽.

1919년에 우리 애국선현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반 잊어버린 가치 된 자유주의를 부활시키기로 착수한 공헌을 축하하자는 것입니다. 선현들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찰국가의 압제 하에 살았으며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담대히 성명했던 것입니다. ……”⁵⁹

둘째, 이승만의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이승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유보조항을 달므로써 국가의 권리 혹은 애국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48년 7월에 진행된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중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정이 필경 정객과 정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할 것이니 ……”⁶⁰ 이처럼 이승만은 국민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권리를 유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어 정부수립 선포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시민은 누구나 다 일체를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반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은 국권의 자유를 할 담보(擔保)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 불복하거나 전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⁶¹ 이승만에게 자유권은 언제나 이처럼 유보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반공주의조차도 애국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공산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임식에서 천명하였다.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 우리는 공산당

59 이승만, 1956, 「제36회 3·1절 기념사(1955. 3. 1)」, 위의 책, 66~71쪽.

60 이승만, 1976, 「대통령 취임사(1948. 7. 24)」, 우남실록편찬회, 앞의 책, 551~544쪽.

61 이승만, 1976,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검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우남실록편찬회, 위의 책, 565~570쪽.

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 하루 바삐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권리를 다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⁶²

얼마 전부터 뉴라이트 세력이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칭송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다. 자유주의가 처음부터 국가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친연성을 가진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유보하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이승만이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뉴라이트의 현대사 인식이 맞닿아 있는 점에는 새삼 주목을 요한다.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주의’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셋째,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어떤 것이었던가? 먼저 그는 “공산당의 주의를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전민족의 동화(同和)를 도모하나니 ……”⁶³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가 계급 간의 투쟁을 꾀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어 이것은 세계정복이라는 그들의 목표와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산주의는 전세계를 통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정복인 것이다. 그들의 모든 국내의 정책은 오로지 이 목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⁶⁴ 이어서 미국의 평화공존정책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반공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민국정부는 자초(自初)로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거나 괴뢰정부는 되지 안키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는 중이며 우리 한인들이 다 많은 목숨을 희생하였고 또 지금도 어디까지나 자유권을 보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죽든지 양단간 규정을 낼 결심이니 미국이 공존주의를 주장하게 될지라도 우리로서는 자유독립의 권리를 위하여

62 이승만, 1976, 앞의 「대통령 취임사(1948. 7. 24)」.

63 이승만, 1976, 앞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겸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64 이승만, 1956, 「I. N. S 통신사에 제공한 성명서(1954. 5. 21)」, 앞의 책, 33~36쪽.

싸워죽기로 결심”⁶⁵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이 반공주의에서 세계의 쇼윈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이목에 한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당했으되 굴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침략을 당할 때에 국방군이라는 준비가 없었으되 우리가 전적으로 항거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 전체의 정신과 용감력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⁶⁶ 이처럼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미국의 평화공존 주장 등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냉전과 반공의 자랑스런 전시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먼저 개인의 자유주의적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한다. “지금부터는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평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서로 함께 병행 불패(不悞)해야만 될 것입니다. ……”⁶⁸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제통상과 공업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자유로운 국제통상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민국(民國)에 문호가 열려서 통상 각국과 상업상 권리를 서로 교환해야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에 발전되고 따라서 세계경제력을 모아다

65 이승만, 1956, 「독립자유 정신을 선양하라(1954. 12. 8), 위의 책, 53~54쪽.

66 이승만, 1956, 「제36회 3·1절 기념사(1955. 3. 1), 위의 책, 66~71쪽.

67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해방 후에 국가의 특혜를 누리는 ‘국가적 기독교’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분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종철, 2011,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최상오 외, 앞의 책, 157~190쪽 참조.

68 이승만, 1976, 앞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겸 광복 30주년 기념식 대통령 식사」.

가 우리나라의 실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 절대로 외국인의 상권을 막고 우리의 상권만 세운다는 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일도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재정가(財政家)들은 오직 우리 민족의 경제력을 보호해야만 자기들도 번창하고 또 민족들도 복리를 누리게 될 것이니 ……”⁶⁹ 이어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 “지금은 서양자본가의 정책이 다 변해서 세계 빈곤한 나라들에게 자기의 물자와 기계와 자본을 보는 나라가 많을수록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많이 팔 수 있고 또 미국의 모든 기계장이 다시 번영되고 노동자의 생활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이전에는 상업이 열리어서 남의 재정을 끌어가기로만 주장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서로 이해상반케 만들어 평균한 이익을 다같이 누리자는 것이 세계경제 대중들의 큰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이승만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을 자유주의적 경제적 기본권에서 확인하였으며,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⁷¹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냉전자유주의 이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게 자유주의적 기본권과 인권은 대개 유보적인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유보는 대개 국가권력 혹은 국가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에게 애국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다. 애국주의는 반공주의로 이어졌는데,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매국적인 가치 혹은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한국은 기꺼이 자유세계의 반공전시장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69 이승만, 1956, 「大小資本家を 糾合하여 國家經濟를 확장하라(1949. 12. 10)」, 앞의 책, 19~20쪽.

70 이승만, 1956, 「외국자본을 환영(1950. 2. 17)」, 앞의 책, 30~31쪽.

71 최상오는 이승만이 평등주의 이념과 자립경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고 보지만, 이는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부차적인 것이었을 따름이다. 최상오, 2011, 「이승만의 경제구상」, 최상오 외, 앞의 책, 65~122쪽.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로 인해 자유주의적 가치가 상당히 잠식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자유로운 통상과 무역을 통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기대는 포기되지 않았다.

IV. 박정희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1. ‘냉전의 정치화’와 ‘질서자유주의’의 영향

1950년대 냉전이 군사화되면서 핵무기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또 냉전전략이 핵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전쟁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소련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다양화하게 되면서,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봉쇄하는 전략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수단이 1963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과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전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냉전은 지나친 군사적 경쟁을 자제하면서 정치적인 경쟁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⁷²

이런 ‘냉전의 정치화’ 과정에 대해서는, 냉전이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은 경쟁이었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훨씬 취약했음에도 양국은 대등한 적수인 것처럼 가정하고 경쟁했다는 것이다. 냉전시기 소련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음에도, 이것이 미국과 경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등한 것처럼 싸운 비대등

72 이근욱, 2012, 앞의 책, 53~85쪽; 베르트 슈퇴버, 2008, 앞의 책, 137~190쪽; 존 루이스 개디스, 2010, 앞의 책, 169~266쪽 참조.

한 경쟁이 불평등을 배가시켰으며, 이런 점에서 냉전은 ‘사회주의에 대한 오랜 형벌’이었다는 것이다.⁷³

1950년대 반진영논리를 내세운 비동맹운동이 대두하고, 구미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과 ‘근대화론’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원조정책은 소련과 중국을 ‘원조게임’ 속으로 끌어들이었으며, 이는 더욱더 세계적 차원의 냉전을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⁷⁴ 물론 ‘제3세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열전이 이어지고 미국과 소련 역시 이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쟁이 국지화됨으로써 대규모 전쟁은 회피되고 있었다. 이로써 냉전경쟁이 완화되고 ‘데탕트’가 도래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이 전략핵무기 제한에 합의함으로써 데탕트가 현실화되었다.⁷⁵

냉전의 정치화는 새로운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60년대 초반 ‘한일국교정상화’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하고, NEATO(Nor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북아조약기구) 설립 움직임을 계기로 지역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경쟁이 완화되고 냉전이 경제적 차원의 경쟁으로 차츰 이전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역시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정치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1960년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 이리라.

한국에서 1960년대 냉전의 정치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으나 질서자유주

73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 박소현 역, 2015, 『갈색의 세계사(The Darker Nations)』, 뿌리와이파리, 21~37쪽. 위의 지적은 스웨덴의 사회학자 요란 테른보른의 1968년 논문을 비자이 프라샤드가 인용한 것이다.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 김남섭 역, 2016, 『실패한 제국』, 아카넷 참조.

74 비자이 프라샤드, 박소현 역, 2015, 위의 책, 98~114쪽.

75 이근욱, 2012, 앞의 책, 89~115쪽.

의는 전후 독일의 경제를 도약시킨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한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질서자유주의를 냉전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이 주도한 반공주의적 냉전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 것이었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 가운데서도 경제적 측면의 질서를 유독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프라이부르크학과 경제학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후 재무상과 연방총리를 지내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에르하르트가 질서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였다.⁷⁶

프라이부르크학과 경제학의 바탕에는 칸트의 윤리학이 깔려 있는데, 인간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소련식 공산주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다. 첫째,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안정적인 화폐가 있어야 하며 독립된 중앙은행 곧 연방은행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에 방해가 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감시자 역할을 하는 당국 곧 연방카르텔청이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 셋째, 사유재산이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이 원칙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조에 반영되었다. 첫째, 기업은 직원의 복지와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공동경영의 개념, 둘째, 새로운 연방국가는 보충성의 원칙(최소단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

76 황준성, 2011,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출판국 참조.

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⁷⁷

이처럼 독일의 전후 질서자유주의는 에르하르트트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과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는 아데나워의 경제성장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우위를 통한 (냉전)정책’을 표방한 아데나워의 전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박정희의 성장정책에서 바로 이러한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의 그림자를 짙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4·19혁명이 자유민주주의의 효과 혹은 산물이라는 점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진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가 독재로 이어졌다면, 또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 4·19혁명이었던 것이다. 4·19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두 주역 장면과 윤보선의 정치이념이 자유주의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해두어야 한다. 장면과 윤보선의 자유주의 역시 냉전자유주의 이념의 연속성 위에 놓여 있었다. 장면과 윤보선은 모두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제일주의’ 노선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각기 천주교와 개신교를 배경으로 철저한 반공주의를 체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⁷⁸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은 많은 측면에서 단절성과 아울러 연속성도 가

77 장미셀 카르트푸앵, 2015, 앞의 책, 175~180쪽.

78 장면에 대해서는 조광 외, 2003, 『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허동현, 2005, 『장면의 정치사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참조. 윤보선에 대해서는 김명구, 2011, 『해위 윤보선』, 고려대학교출판부; 해위학술연구원 엮음, 2015,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참조.

진다. 가장 강한 단절성 가운데 하나를 바로 ‘탈자유주의적 전환’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한편으로 냉전에 더욱 강하게 속박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의 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2년 이상 군정이 지속되는 동안 박정희는 ‘혁명기의 민주주의’ 곧 ‘행정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유보해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⁷⁹

군정시기 박정희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기본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재해석을 가한다. 그는 국내외의 위협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유’를 누릴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게 자유를 누릴 우선적인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이 된다. 개인은 그가 소속된 집단이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자신의 사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⁸⁰ 박정희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민족의 이익과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에 부합되도록 조절하고 행사하여야 하며,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⁸¹ 덧붙여서 자유와 권리라는 관념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방종이나 개인만을 위한 것으로 오용되거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남용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점을 경고하고 있다.⁸² 이는 어느 정도 비자유주의적인 태도로 읽을 수 있겠거니와, 이를 곧바로 반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⁸³ 박정희는

79 자유화(liberation)라는 개념을 자유주의 요소를 현실에 적용하여 억압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화로,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화로 해석하는 것은 개념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될 것이다. 복거일, 2016, 앞의 책, 136~146쪽.

80 박정희, 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41쪽.

81 박정희, 1973, 「(세계인권선언 제14주년 기념식) 기념사(1962. 12. 10)」, 『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1권, 대통령비서실, 337~339쪽.

82 박정희, 1973, 위의 기념사.

83 강정인과 하상복은 이를 두고 반자유주의라고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박정희의 정치 사상을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로 명명한다.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곧잘 자유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반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한반도의 냉전자유주의가 가진 반공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비판을 통하여 박정희는 국가권력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나중에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수출주도의 성장드라이브를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이런 태도를 정치이념에서의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즉 발전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강력한 계급 억압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미봉을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는 달랐다. 박정희가 추구한 발전주의와 그가 구축한 ‘발전국가’는 탈자유주의적인 성장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⁸⁴

박정희는 이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예컨대 ‘큰 자유’와 ‘작은 자유’를 구분하고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체제가 ‘유신체제’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자유보다 큰 자유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⁵ 요컨대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회복하여야 할 자유나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곧 개인의 자유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은 ‘유신체제’ 시기에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⁸⁶

이런 차원에서 박정희의 정치이데올로기 혹은 박정희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혹자는 최소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제3공화국 시기와 공개적 독재체제로 전환한 유신체제를 나누거나, 경제적 성장과 정

84 발전국가론에 대해서는 김윤태 편, 2017, 『발전국가』, 한울 참조.

85 박정희, 1973(1974, 10. 1),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권, 312쪽; 강정인·하상복, 2012, 앞의 글, 재인용.

86 강정인·하상복, 2012, 위의 글.

치적 억압 혹은 독재를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을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야 새로운 차원에서 박정희체제를 보는 시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⁸⁷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이런 ‘자유주의적 이분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류야말로 자유주의적 이분법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혹은 반자유주의적) 이분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던 박정희체제의 의도 혹은 행로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박정희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는 누적되어 상당한 축적을 이루어왔다.⁸⁸ 연구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혹은 반공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재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왔다. 여기서는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론과 민족주의론 그리고 근대화론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고 연결되어 있었던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⁸⁹

먼저, 박정희의 민주주의론이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면서 혹은 1964년 ‘민정이양’을 전후하여 박정희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은 더욱

87 이광일, 2011,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메이데이.

88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현진·송호근, 1994,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전재호, 1997, 「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형아, 신명주 역, 2006,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전인권, 2006, 『박정희평전』, 이학사;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정성화 편, 2006,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허은, 2007, 「1960년대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담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황병주,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 앞 장에서 이승만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주로 1차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박정희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장에서 주로 2차자료를 활용하여 박정희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주 강조되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재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 박정희의 민주주의 재해석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냉전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원론적 재해석을 제기하고 있었다. 각종 사람들의 집단은 모두 이런저런 이익집단을 통해 대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해의 다원론은, 미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곧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다원주의자들은 개별 이익집단들 사이의 영향력과 성취 사이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이익을 넘어선 사회의 일반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⁹⁰ 하지만 이런 냉전자유주의자들의 재해석이 박정희 혹은 그의 이론가들에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규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행정적 민주주의’ 혹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던 규정으로서,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수정 변형하고자 했던 것인데,⁹¹ 이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박정희의 민족주의론이다. 그가 채택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해석은,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차츰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쿠데타 직후 군정기에는 민족주의가 그다지 선호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의 참담한 현실과 아울러 그것을 배태한 ‘전통’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서구산 이데올로기 즉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가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90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2007, 앞의 책, 589~631쪽.

91 강정인, 2011,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철학논집』 27집.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⁹² 또한 ‘조국근대화’(1963~1964) 슬로건은 민족주의(민족중흥)와 근대화(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결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고 공업화 및 도시화와 아울러 농촌사회의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급속하고 강렬하게 대두하자 사정은 갑자기 변화하였다.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가 만든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이처럼 ‘처음과 다음이 다른’ 갑작스런 것이었으나, 민족주의가 제공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세 번째, 근대화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요컨대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자신의 ‘혁명’ 혹은 근대화와 민주주의 제도를 조절하고 병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달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었다. 박정희는 또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는 거리를 두되 경제적 자유주의 곧 시장경제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는 지속시키는 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여기에서 서독의 질서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쉬이 간취할 수 있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정책 혹은 산업화 정책과 그에 바탕을 둔 ‘힘에 의한 반공(승공)정책’은 서독의 발전모델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⁹³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변에서 재현하는 것이 박정희에게는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서독의 발전모델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박정희가 시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단원론적 재해석이 조국근대화를 위한 사회의 효율화 이

92 이승만정권기의 강렬한 반일민족주의는 대개 이승만 개인의 감정과 필요에서 기인하는 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정희정권기의 민족주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건우, 2009,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93 노명환, 2011, 「냉전시대 박정희의 한국 산업화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사립』 38호.

데올로기와 결합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박정희 정권 후반기의 일이었다. 1960년대 후반 ‘3선개헌’을 옹호하는 논리로서는 아직까지 설득력을 갖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유신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돌입하면서 이런 ‘효율성 테제’가 급속하게 대두되었던 것인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곧 이 시기 민주주의는 명백히 반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진 것이었다.

박정희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기본가치에 대해 재해석을 가하고 집단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에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탈자유주의 전환’을 서서히 그러나 강렬하게 수행해나갔다. 이와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를 단원론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소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었다. 한편 ‘조국근대화’ 혹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차츰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었던바, 민족주의가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가 힘에 의한 반공정책과 연결됨으로써 단원론적 민주주의 규정과 민족주의를 동원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가 최종적으로 체제의 ‘효율성테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다.

V. 맺음말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

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 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 반공주의를 설정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에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단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이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두 사람 모두 정치이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정치이념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

다.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그들의 정치이념이 당시의 정치지형을 규정하고 있던 측면도 강했다. 그런 의미에서 탈자유주의적 전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이념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근래 자유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두고 ‘접두사 자유주의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주의의 긍정성을 새로운 대안이념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이르는 것이겠다.⁹⁴ ‘공동체적 자유주의’⁹⁵·‘급진적 자유주의’⁹⁶·‘사회적 자유주의’⁹⁷·‘진보적 자유주의’⁹⁸ 등을 들 수 있겠는데, 또 하나의 자유주의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자유주의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94 최장집, 2011, 앞의 글.

95 박세일 편, 2008,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

96 윤평중, 2009, 『급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97 박동천, 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98 최태욱 엮음, 2011, 앞의 책.

참고문헌

- 박정희, 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 박정희,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5권, 대통령비서실.
- 우남실록편찬회, 1976, 『우남실록』.
- 이승만, 1952,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대한민국공보처.
- 이승만, 1956,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제2집)』, 공보실.
- 강정인, 1997,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 권용립,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 김남두 편, 1993, 『재산권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 김명구, 2011, 『해위 윤보선』,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보현, 2006,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 김석수, 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돌베개.
- 김운태 편, 2017, 『발전국가』, 한울.
- 김학준, 2000, 『구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형아, 신명주 역,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 남정욱 외, 2016, 『시간을 달리는 남자』, 백년동안.
- C. B. 맥퍼슨, 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후마니타스.
- 민정국, 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 박동천, 2010,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모티브북.
- 박세일 편, 2006,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
-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후마니타스.
- 복거일, 2016,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북앤피플.
- 서중석, 2005,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송복 외, 2011,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영익, 1996,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 유영익 편, 2000, 『이승만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평중, 2009, 『급진적 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 이근욱, 2012, 『냉전』,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2014,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 전인권, 2006, 『박정희평전』, 이학사.
- 정성화 편, 2006,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 조광 외, 2003, 『장면 총리와 제2공화국』, 경인문화사.
- 최상오 외, 2010,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최장집 외, 2017,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태욱 엮음, 201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해위학술연구원 엮음, 2015,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허동현, 2005, 『장면의 정치사상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9권 1호.
- 황준성, 2011,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출판부.
-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죽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 권현익, 이한중 역, 2013, 『또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 민음사.
-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역,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 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 김남섭 역, 2016, 『실패한 제국』, 아카넷.
-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 박소현 역, 2015, 『갈색의 세계사』(The Darker Nations), 뿌리와이파리.
- 앤서니 아블러스터(Anthony Arblaster),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강문구 역, 1996, 『자유주의 이후』.
- 장미셸 카르르푸앵, 김수진 역, 2015, 『제국의 충돌』, 미래의 창.
- 존 루이스 개디스, 장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 존 스투어트 밀, 김형철 역, 1992, 『자유론』, 서광사.

- 질 망스롱(Gilles Manceron), 우무상 역, 2013, 『프랑스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Frances Stonor Saunders), 유광태·임채원 역, 2016, 『문화적 냉점-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 강정인, 2011,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철학논집』 27집.
- 강정인·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1호.
- 강정인·하상복, 2013,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환경·미래』 10호.
- 고정후, 1986,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109.
- 김진우, 2009,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 김도형, 1999, 「근대초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발전-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17.
- 김석근, 2011,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동양정치사상사』 10-1.
- 김수자, 2004,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 22.
-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수, 1995,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
- 노명환, 2011, 「냉전시대 박정희의 한국 산업화정책과 서독의 의미와 역할, 1961-1967」, 『사림』 38호.
- 노상균, 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97.
- 박만규, 1999, 「안창호 민족주의에서의 자유주의」, 『한국사학』 17.
-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4년 여름호.
- 박찬승, 1999, 「식민지시기 조선의 자유주의와 이광수」, 『한국사학』 17.
- 선우현, 2015, 「일민주의 철학의 정립자, 이승만인가 안호상인가」, 『시대와 철학』 73호.
- 손호철, 2010,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기억과 전망』 22호.
- 양승태·전재호, 2007,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자유주의: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 『한국철학논집』 21집.

- 오영섭, 2012, 「1910-1920년대 『태평양잡지』에 나타난 이승만의 정치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 이근식, 2011,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이병수, 2008, 「문화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본 안호상과 박종홍의 철학」, 『시대와 철학』 19-2.
- 이삼성, 200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55호.
- 이평전, 2013, 「근대 자유주의의 문학적 수용양상 연구-신채호, 이광수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
- 임현진·송호근, 1994,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전재호, 1997, 「박정희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재호, 2004, 「자강론과 자유주의-식민지초기(1910년-1920년대 초) 신지식층의 자유주의관」, 『정치사상연구』 10-2.
- 정미량, 2007,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학지광』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4집.
- 정용화, 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1.
- 주진오, 1996,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
- 채오병, 2012, 「제국의 사이클과 지역 정치문화-전간기 동아일보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와역사』 94.
- 최선웅, 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담론』 75.
- 최장집, 201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하유식, 2000,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 『지역과 역사』 6호.
- 허은, 2007, 「1960년대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사학연구』 86.
- 허재훈, 2014, 「식민주의의 기초: 존 로크와 아메리카, 인디헤나의 수난사」, 『철학연구』 130집.

황경식, 2005, 「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철학연구』 71.
황병주,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毛利健三, 1978, 『自由貿易帝國主義: イギリス産業資本の世界展開』, 東京大學出
版會.

Delton, Jennifer A., 2002, *Making Minnesota Liberal: Civil Righ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ton, Jennifer A., 2009, *Racial Integration in Corporate America, 194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ton, Jennifer A., 2013, *Rethinking the 1950s: How Anticommunism and the
Cold War Made American Liber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Ryan, Alan, "Liberalism," Robert E. Goodin & Philip Pettit eds.,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ress.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윤해동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

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 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가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일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주제어: 냉전자유주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소유적 자유주의, 식민주의, 반식민주의, 이승만, 박정희, 질서자유주의

ABSTRACT

Cold War Liberalism and the Post-liberal Turn in Korean Politics: Focusing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Yun Haedong

When discussing liberalism in Korea,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Combined with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world order, liberalism has often manifested certain imperialistic traits. This stems from classical liberalism, which advocated possessive individualism, the underlying colonialism of which combined with racism provided the background for the logic of “the civilizing mission.” Received by a non-Western society or a colony, liberalism not only functioned as an ideology of domination but in its encounter with anti-colonialism was sometimes incorporated into an ideology of resistance. Such paradoxical ambivalence, coming from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was an inevitable characteristic of colonial liberalism. The same can be said of Korea’s case.

In examining the liberal aspects of the political ideologi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that were happening in the Cold War along with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rdoliberalism of West Germany. With the Korean War, the Cold War was rapidly militarized, but entered a stable phase in the 1960s as it became politicized. The militar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the Cold War were strongly connected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In conjunction with an intense anti-communism,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deeply affected the anti-communist liberalism upheld by Rhee Syngman while also helping to stabilize his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West German model of development based on ordoliberalism and a “policy of triumph over communism” through power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Park Chung Hee. It provided the source for Park’s relentless pursuit of economic growth under the flag of “homeland modernization.”

Although the Cold War liberalism of Rhee Syngman advocated liberal values, patriotism always took priority. Rhee put a great amount of faith in the liberal economic order, too. Contrarily, to Park Chung Hee, liberal individualism was essentially something that should defer to “the value of the greater freedom.” In what can be termed a post-liberal turn, Park’s regime was able to gain some latitude to evade the liberal regulations of the world system. Park also attempted to monistically redefine democracy, thereby mobilizing nationalism in pursuit of the modernization of Korea.

Keywords: cold war liberalism, post-liberal turn, possessional liberalism, colonialism, anti-colonialism, Rhee Syngman, Park Chung Hee, Ordoliberalism

냉전과 일본의 자유주의

– 마루야마 마사오의 냉전자유주의와 리얼리즘

장인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I. 머리말: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상실
- II. 냉전과 자유주의
- III. 마루야마 마사오, 자유주의, 현실주의
- IV. '민주'와 '자유':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 양태
- V. '평화'와 '자유':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
- VI. 맺음말: '자주'와 '공평'



I. 머리말: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상실

탈냉전, 탈전후 상황의 일본에서는 진보적 리버럴리즘이 현저히 퇴조하였다. 진보, 좌파가 몰락하면서 자유주의가 약해지고 보수적 견해가 우세해졌다. 냉전의 종언이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승리’를 구가하는 분위기를 초래했다면, 일본에서는 ‘자유주의의 퇴조’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유주의가 완전히 추락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보수적 국가담론이 부상하였지만, 배타적인 우파적 민족주의가 일본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한, 지구경제에서 일본 경제를 모색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전제할 때 자유주의는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삶을 민감하게 감지한 보수논객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는 탈냉전과 더불어 내셔널리즘의 욕망을 드러내는 한편 동시에 지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 사회의 사상적 혼란을 지적한다. 사에키는 이러한 사상적 혼란이 ‘리버럴 데모크라시(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힘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이념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산물로 간주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라는 역사적으로 특이한 구조”에서 사회주의라는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특정화하면서 보편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다. 그는 전후의 자유민주주의를 넓게는 20세기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라는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만들어낸 사고습관, 좁게는 냉전구조가 만들어낸 사상의 겨냥도로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냉전기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국가나 국민관념, 즉 내셔널리즘 문제를 결여하였다고 비판한다.¹ 사에키의 이러한 ‘자유민주주

* 투고: 2017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20일, 게재 확정: 2018년 3월 2일

* 본 논문은 2016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1 佐伯啓思, 1996, 『現代日本のリベラリズム』, 東京: 講談社, 70~77쪽, 사에키

의' 비판은 이 이념과 제도가 지탱해온 일본의 전후체제에 대한 부정과 연결된다.

사에키의 이러한 견해가 정당한 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냉전의 특수한 산물임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체제의 문맥에서 '55년 체제'가 성립하고 집권 보수세력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널리 통용된 말이다. 사에키의 '자유민주주의' 비판은 자유민주당의 친미보수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진보론자들이 표방한 '(전후)민주주의'를 향한 것이다. 사에키나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같은 현대일본의 보수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주의,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자유민주주의' 비판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부정을 뜻한다.

보수론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를 향한다. 사에키는 마루야마의 자유주의론과 민주주의론을 전면 부정한다.² 사에키의 마루야마 비판, 즉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은 탈냉전, 지구화의 문맥에서 전후일본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보는 관점이 탈맥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에키의 마루야마 비판은 마루야마를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시선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마루야마의 복잡한 시선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냉전 상황에서 생겨난 특수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사에키의 관점에서 전후일본의 자유주의를 냉전과 연관시켜 음미할 여지를 얻을 수도 있다. 냉전체제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냉전적 현실과 이에 조응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의미를 탐색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 글에서는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의 '냉전자유주의'를 규명하고,

의 자유주의 개념은 국가 개념 위에 성립한다. 자유란 집단적인 규칙 하에서 존재하며,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인 국가(국민)가 규칙을 구성하는 제1의 단위라는 것이다(佐伯啓思, 1996, 위의 책, 81쪽).

- 2 사에키 게이시의 보수주의론과 민주주의 비판에 관해서는 장인성, 2009,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일본비평』 창간호, 그린비를 참조할 것.

이를 통해 전후 냉전 상황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냉전의 맥락을 공유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적 지형을 의식하면서 ‘민주’와 ‘평화’를 모색한 패전과 냉전 초기의 상황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이항대립의 틀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냉전자유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후일본의 자유주의는 근대일본의 자유주의를 계승하면서 총력전 사상을 극복하려는 전후 민주주의의 내적 계기로서 표출된 동시에 민주화 개혁과 냉전 상황에 대한 외적 대응으로서 발현되었다. ‘냉전자유주의’는 후자, 즉 냉전 상황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이념이다. 이 글에서는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를 두 측면에서 파악한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 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이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 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맥락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의 양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전후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의 모습에서 냉전적 보편성을 엿볼 수 있다면, 근대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모습에서는 일본적 특수성을 읽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II. 냉전과 자유주의

1. ‘신일본’과 냉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결합한 말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패전과 냉전의 문맥에서, 특히 55년체제 성립 이전에 진보와 보수가 함께 지향한 가치 내지 제도였다. ‘신일본’과 ‘냉전’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나 제도로서 받아들여졌다. 자유민주주의는 신일본 건설과 냉전 성립이 만들어낸, 혹은 그 속에서 만들

어진 권력 상황에서 작동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일본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에키의 말처럼 냉전의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냉전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본 자유주의의 냉전적 전개로서 봐야 할 것이다.

‘신일본’은 신헌법에 규정된 ‘평화애호’와 ‘민주주의’에 정초한 국가, 즉 평화 국가와 민주국가를 뜻한다. 근현대 일본사상사에서 ‘평화애호’는 자유주의 정신과 결부되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정신이 작동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신일본 건설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신 내지 이념이 담긴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냉전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양상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이었다. 1960년 안보투쟁 때까지 냉전과 평화, 냉전과 안보가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구성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들 쟁점을 산출한 냉전 체제에 규율되거나 냉전을 의식하는 정치적 사유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규율하는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신일본 건설에서는 전전의 파시즘과 국가주의(혹은 초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그리고 냉전의 콘텍스트에서는 자유진영의 냉전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반공이념으로서 기능하였다.

전후일본에서 전체주의적 폭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 신장하려는 자유주의 이념의 출현은 근대정치 사상사의 보편적인 양상에도 부응한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전하고 확대하려는 사상 혹은 신조다. 자유주의는 고정된 이념체계가 아니라 전체주의 성향을 내장한 지배적 이념에 대항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서구에서 절대주의에 대항하여 정치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19세기의 마르크스주의, 20세기 전반의 나치즘, 파시즘, 사회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와 대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모색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성장하였다. 한편 자유시장 논리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와 결합하면서 지구적인 확산을 보였고,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 지구화의 이념적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적 자유주의는

취약해졌다.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출현은 연관된 것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이 먼저 등장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사상은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변용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⁴ 자유주의는 20세기에 서구의 정치이념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지배적인 이념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자유주의는 메이지 계몽사상가들이 수용한 이래 국민국가 형성, 다이쇼 데모크라시, 파시즘, 전시체제, 냉전체제의 각 문맥에 대응하면서 전개되었다. 일본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협의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운동의 총칭이었다. 자유주의 계몽사상이 먼저 출현하였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자유민권사상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정신을 추동하였다. 전전·전중기에도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권위주의와 파시즘에 대항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은 살아 있었다.⁵ 전후일본의 주체들이 정치적·사상적 과제를 ‘민주’와 ‘평화’에서 찾았을 때 파시즘과 국가주의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정신이 가장 유력한 사상적 자원으로 소환되었다.

전후/현대 일본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보수적 자유주의 등 여러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민주화와 안보 쟁점이 우세했을 때 진보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안보투쟁 이후 안보쟁점이 약해지면서 사적 자유의 신장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배양된 정치적 자유주의는 퇴조

3 서구자유주의의 전개 과정과 의미에 관해서는 John Plamenatz, 1978, "Liberalism," *Dictionary of History of Ideas*, vol. 3, pp. 36~61 참조.

4 田中浩, 1993, 『近代日本と自由主義』, 東京: 岩波書店, viii쪽.

5 田中浩, 1993, 위의 책, ix쪽.

하게 된다.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제경제관계를 통해 세계경제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체제에서 소득배분에 따른 중산층의 출현과 더불어 배양된 경제적 자유주의는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부추기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켰다.⁶ 이와 더불어 전전의 자유주의를 계승한 리버럴 보수의 자유주의도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일본문화론을 생산하면서 문화적 보수주의의 형태로서 힘을 얻게 된다.

2.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

소극적 의미에서건 적극적 의미에서건, 자유주의가 사회나 국가집단의 폭력이나 강제를 벗어나 개별주체의 자유를 보전, 확대하고자 하는 이념이라 한다면, 자유주의는 폭력과 강제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다. 폭력과 강제는 장소적 특성을 갖는다. 이는 자유주의가 폭력과 강제를 벗어나 네이션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이자 운동인 내셔널리즘과 밀접하게 상관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연관된 시공간적 특수성을 갖는다. 일본의 자유주의도 일본 국가/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셔널리즘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일본의 자유주의는 메이지계몽과 자유민권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각 콘텍스트에서 능동적으로 발현되었지만, 쇼와 파시즘체제의 전체주의적 폭력과 초국가주의 같은 극단적 형태의 내셔널리즘에는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했다. 근대일본의 자유주의는 국가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타났고, 국제권력 관계에서 국가존재를 생각하는 정치적 사유 및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메이지계몽사상가와 자유민권론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신장을 꾀하면서도 민권과 국

6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반전 자유주의의 사유와 행동은 시민 차원에서는 있었지만, 전쟁이 직접 일본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1950년대와는 달랐다.

권의 사이에서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을 결부시켜야만 했다. 소극적 차원의 자주독립이건 적극적 차원의 국권팽창이건 내셔널리즘은 자유주의를 규율하는 조건이었다. 한편 제국팽창 과정에서는 국가의 대내적 폭력(인권탄압)과 대외적 폭력(침략전쟁)에 대응해야만 했다. 자유주의는 개체의 적극적인 자유보다는 내향적인 자유에 만족해야 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민족자결을 표방한 윌슨의 자유주의와 국제민주주의의 국제적 상황에 호응하면서도 일본 내향적인 ‘데모크라시(민본주의)’로 나타났다.

전후일본의 자유주의는 전전의 소극적 자유주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파시즘과 초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1946)를 필두로 한 일련의 일본파시즘 비판론에서 파시즘과 초국가주의의 일본적 존재양태를 규명함으로써 자유주의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전후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즘과 전체주의적 독단과 대결했을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후 자유주의는 전후와 냉전의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미군의 점령통치에 따른 주권상실의 상황은 금세 주권회복과 국가독립을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의 부활을 유발하였다. ‘애국심’, ‘조국애’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전진, 전중의 배타적 내셔널리즘과 차별화되는 내셔널리즘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⁷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자유주의는 새롭게 대두된 냉전체제의 외적 규정력에 대응하여 네이션의 자유(주권회복)을 모색하는 문제와 대면해야만 했다. 국가(민주국가, 평화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내셔널리즘의 재구축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에게도 현실적인 사상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과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자유주의는 메이지 계몽사상과 자유민권사상을 매개로 출현한 이래 줄곧 개인적 자유(자유권)를 신장하는 한편 국가적 자유(주권)를 보전, 확대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였다.

7 전후 일본의 애국심론에 관해서는 장인성, 2013, 「현대일본의 애국주의: 전후공간과 탈냉전공간의 애국심론」, 『일어일문학연구』 제8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메이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독립발전을 위해 타국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이중적 사고를 보였다. 주권개념의 안과 밖의 이중성은 자유주의가 주권개념과 결부될 때 일상적으로 보였던 근대적 현상이기도 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말한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한다”라는 명제는 자유주의와 주권의 상관성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개인적 자유와 국가주권의 이상적 결합은 전후/냉전기에 들어서도 미실현된 상태였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개체(개인, 개별국가)의 자유를 보전, 신장하려는 이념인 한,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관한 구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국가 속에서, 혹은 이것들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국제사회/세계 속에서, 혹은 이것들에 대해 개별주권체(국가)의 자유(독립)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 둘은 상관된 문제이다. 네이션은 안에서 개체(개인)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체로서 기능하는 한편, 밖으로 더 큰 전체(세계, 국제사회)에 대해 개체로서 관계를 영위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자유를 모색하는 이념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의 안과 밖의 두 차원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관련성은 자유주의가 네이션(민족, 국가)의 내적 측면(시민)과 네이션의 외적 측면(국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국가와 민주주의가 전제되는 맥락에서 자유주의가 건전한 내셔널리즘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개인-국가(네이션)관계는 개인-사회관계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존재를 국가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고와 연관되며, 따라서 국가와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자유주의의 출현은 근대 사회와 개인이 출현하는 현상과 결부된다. 사회와 개인의 출현은 네이션 형성과정도 관련된다.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생존발전이라는 두 가치관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구성한다. ‘신일본’ 구상이 일본이라는 국가, 사회 문제에 관련되는 한, 국가와 사회의 존재양태에 관한 자유주의적 구상은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와 ‘평화’도 국가, 사회 문제와

결부되는 한, 자유주의 이념의 편차와 연관되기 마련이다. 냉전의 콘텍스트에서도 자유와 모럴(도)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이 어떠한 긴장이나 결합을 보이는지를 파악한다면 냉전자유주의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각각 냉전자유주의의 안과 밖에 해당한다. 냉전자유주의의 안이 '민주'에 부응하는 자유의 문제를 대응하는 사상적 영위라 한다면, 냉전자유주의의 밖은 '평화'에 상응하는 자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냉전자유주의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국가/국민 문제가 정초한다. '민주'와 '평화'는 냉전의 문맥에서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상상하는 자유주의 구상에 따라 규정되는 측면도 있다. 새로운 일본이 지향하는 '민주국가', '평화국가' 구상에서 자유주의가 전후 민주주의에서 갖는 대내적 의미(개인적 자유)와 자유주의가 냉전적 조건 하에서 국가(사회)에 대해 갖는 대외적 의미(내셔널리즘, 국민국가)는 상관적이다. '민주'는 대내적 차원의 자유관념과 결부되며, '평화'는 대외적 차원의 자유관념과 연관된다. 보수적 리버럴(올드 리버럴리스트)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사상적 편차를 드러냈다.

Ⅲ. 마루야마 마사오, 자유주의, 현실주의

1. 냉전적 현실과 리얼리즘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을 보여준 진보적 지식인의 한 전형이었다. 흔히 마루야마의 자유주의 정신은 전체주의(파시즘) 비판과 개인의 발견에 기초한 민주주의 지향에서 찾는다. 냉전기 마루야마의 자유주의가 냉전의 현실을 응시하는 매와 같은 시선과 그 현실을 해석해내는 부엉이와 같은 통찰력에 기초한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왔다. 자유주의가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력성에 민감히 감응하는 한, 자유주의자들이 현실

의 힘이나 이익관계에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어떠한 논리적·실제적 대응을 했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현실과 치열한 사상적 고투를 벌이는 냉전기 자유주의자라면 공산주의나 파시즘과 대결하는 이념을 ‘냉전적 현실’에 대해 투사할 뿐 아니라 ‘현실과의 적실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냉전이데올로기와 냉전권력을 성찰하는 현실주의적 시선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냉전적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자유를 구속하는, 혹은 자유가 문제되는 복합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러한 현실을 이상적 상태로 바꾸려는 의지로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상관되지만 구별되는 현상이다. 냉전기 일본의 자유주의를 파악하려면 자유가 구속받고 문제되는 상황을 읽어내는 현실인식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냉전 초기에 국제관계를 권력과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정치적 현실주의(고전적 현실주의)가 성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루야마도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가 통용된 냉전의 콘텍스트를 공유하였다. 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주의적 ‘이상’과 권력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냉전적 현실을 리얼리스틱하게 통찰하였다.

흔히 간과되지만 마루야마를 다른 자유주의자와 차별화하는 것은 리얼리즘의 정신 혹은 감각이다. 패전 공간에서 자유주의는 다이쇼 민본주의를 계승한, 교양주의에 기초한 리버럴 보수가 우세했다.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와 같은 리버럴 보수는 개인의 일상생활, 개성과 인격,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주의와, 문화예술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양주의를 영위하였다. 반속(反俗)적 엘리트의식, 문화주의, 전통의식, 교양주의는 전후 리버럴 보수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지만 동시에 급진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적·혁신적 가치에 대항하여 천황제 보존, 국민의 도덕적 의무, 사회질서의 안정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지만 권력에 저항하는 적극적 자유보다는 권력과 거리를 두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였다. 이들의 소극적 자유는 공동체 질서에 포섭될 여

지가 있었다.⁸ 마루야마는 이러한 리버럴 보수의 교양적 자유주의에 비판적이었다. 리버럴 보수의 교양주의는 리얼리즘을 결여하고 이들의 보수주의로는 ‘민주’와 ‘평화’의 문제와 대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루야마의 자유주의는 마땅히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의 자유주의에 친화적이었다.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 가와시마 다케요시[川島武宜] 등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들은 좌파 전체주의는 말할 것 없고 파시즘, 매키시즘과 같은 우파 전체주의에 맞서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 제도를 적극 옹호하였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도 받았고 급진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 가치도 혼합되어 있었다. 마루야마는 새로운 미국 사회과학을 받아들여 진보적 사회개혁을 모색한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등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유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렇다고 패전과 냉전의 현실(리얼리티)을 파악하는 마루야마의 방식이 그들과 똑같지는 않았다.

2. 비판적 자유주의와 리얼리즘

리버럴 보수와의 거리, 진보적 사회과학자와의 친화성을 들어 판단한다면, 마루야마의 자유주의는 다른 진보적 지식인들의 그것과도 유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인의 운동(행동)과 사상(이념)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리버럴 보수와의 거리는 현실감 여부와 관련되며, 진보적 사회과학자들과의 친화성은 공유된 진보 이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지식인은 어설픈 이론을 가진 만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현실’의 진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치를 만들어내 양심을 만족시킨다. 사실에 대

8 장인성, 2012,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일본비평』 제6호, 그린비.

한 굴복이 굴복으로 인식되는 동안은 아직 괜찮다. 자신의 입장과 사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존속한다. 그런데 본래 기가 약한 지식인은 이러한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쪽에서 다가감으로써 그런 껍을 메우고자 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학문이 동원된다.⁹

현실과의 긴장감은 사상의 긴장감을 의미한다. 현실과의 긴장감, 사상의 긴장감을 생각할 때 동시대의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를 떠올릴 수 있다. 마루야마는 냉전 초기의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진보적 사회과학자였다. 진보적 잡지 『세계』에 일본 파시즘을 분석한 논문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를 발표하면서 전후일본의 논단에 혜성처럼 등장하였고, 평화문제담화회의의 주요 멤버로서 전면강화와 중립을 주장하는 평화운동을 주도한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후쿠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냉전 초기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논리와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한,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문학평론가, 사회비평가였다. 탈냉전기 보수론자들의 비평에서 ‘진보주의자’ 마루야마와 ‘보수주의자’ 후쿠다의 사상적 이질성은 극명히 대비된다.¹⁰ 사에키 게이시는 마루야마의 진보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면, 후쿠다의 보수주의는 높이 평가한다. 마루야마와 후쿠다의 사상을 상극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정작 마루야마와 후쿠다는 진보와 보수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지도, 서로 비판한 적도 거의 없다. 두 사람이 젊은 날 잠시 시미즈 이쿠타로가 만든 ‘21세기 연구소’를 함께 했기 때문은 아니다. 두 사람이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현실을 파악하는 리얼리즘을 공유했기 때문일 터다.

후쿠다는 냉전 초기에 리버럴 보수의 자유주의와 진보적 지식인들의 사회과

9 마루야마 마사오, 1997a, 「‘현실’주의의 함정」,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226쪽.

10 후쿠다는 사에키 게이시, 니시베 스스무 등 현대 일본의 보수논객들이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의 원점으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자다. 이들은 후쿠다의 보수주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소환해내는 반면, 마루야마의 진보주의는 전면 부정한다.

학적 견해에 민감히 반응하였다. 리버럴 보수의 자유주의는 리얼리티를 결여하고,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주체의 심리를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후쿠다가 보기에 리버럴 보수의 자유주의는 “망령처럼 소생한,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 것이었다. 리버럴 보수는 파시즘 반동세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데 완고한 방해물”이며, “현실의 재구성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다. 일본의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빌린 물건의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에 적응하는 형태로 전개된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 빌린 옷과 같은 자유주의 표상 사이의 괴리에서 일본 자유주의자들의 도피, 무책임, 착오, 독선이 생겨났다. 물질과 정신의 대립, 정치와 문화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쿠다는 일본의 현실에 정초하여 자유주의를 구축할 것을 역설하였다. 일본의 자유주의는 “현실의 추악”을 직시하고 민중의 애고이즘을 인정하며 “인간의 악을 온전히 응시하는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후쿠다는 리얼리즘과 주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마루야마도 이러한 리얼리즘과 주체성을 보였다. 마루야마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인들의 몸(체험)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를 통해 들어왔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갭이 크며, 일본의 전근대적 인간관계에서는 상위자의 권위가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폭력성이 은폐되고 내면적 공포에서 나온 복종을 근대적인 동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¹² ‘보수주의자’ 후쿠다가 일본인의 체험을 강조하고 현실에 정초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진보주의자’ 마루야마조차 일본인의 체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상정했다는 것은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 즉 리얼리즘이 패전과 냉전 초기의 사유공간에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비판적 자유주의의 요체였음을 말해준다. 비판적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체험과 리얼리티에 대한

11 福田恆存, 1987a, 「民衆の心」(1946), 『福田恆存全集』第1巻, 東京: 文藝春秋, 537~541쪽.

12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어느 자유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187쪽.

감각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여기서 체험과 현실 감각이 주체의 문제로 연결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자유주의 정신은 근대적 주체의 발견을 지향하였다. 마루야마는 개인과 국가를 대립시키는 개인주의적 국가관이 아니라 주체적 책임의식을 가진 근대적 개인의 형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오쓰카 히사오가 민주화와 경제 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 에토스를 갖춘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과도 상통한다.¹³ 그런데 개체의 확립과 사회적 연대를 겸비하고, 권위에 대해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는 정신을 주체성을 가진 ‘근대적 인간유형(오쓰카)’ 혹은 ‘근대적 국민(마루야마)’은 서양근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반발로 상상된 ‘이상적 인간상’을 표상하는 말이었다. ‘이상적 인간상’은 경험의 사회과학적 법칙화가 아니라 경험의 내적 성찰에서 나온 것이었다. 후쿠다도 개인의 자유와 근대적 개인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상정하였다. 그는 근대유럽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절대자를 상정함으로써 현실의 경험적 세계를 상대화하고 근대적 인간상에 현실감을 부여하고자 했다.¹⁴

근대적인 이상적 인간상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신일본(민주국가) 건설을 모색하는 민주화 개혁의 콘텍스트에서 일본의 전통과 근대,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폭력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이 개입되고 ‘평화’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 들어서면 변용을 요구받게 된다. 패전의 콘텍스트에서 일본의 자유주의는 이상적 인간상이나 낭만적 기분으로 추동되었지만, 냉전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두 개의 세계’를 상정하고 ‘평화(안보)’ 쟁점이 고도화되면 자유주의자들은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이상주의와 현실

13 大塚久雄, 1997, 『社会科学における人間』, 東京: 岩波書店. 오쓰카와 마루야마의 근대적 인간상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근대적 인간과 주체성에 관해서는 나카노 도시오, 서민교·정애영 옮김, 2005, 『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전후민주주의 사상』, 삼인을 참조할 것.

14 福田恆存, 1987b, 「私小説の現実について」(1947), 『福田恆存全集』第1卷, 570~571쪽.

주의의 이념적 간극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리얼리티의 구성과 해석을 둘러싸고 리얼리즘이 차질을 보이면서 보수와 진보는 분화하게 된다.

IV. ‘민주’와 ‘자유’: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 양태

1. ‘자기결정 능력’

리버럴 보수가 소극적 자유 개념과 교양주의를 내걸고 자유주의의 소생을 시도했다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를 표방하면서 민주국가 건설을 구상하였다. 파시즘 비판, 군국주의 비판은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선행 조건이었다. 일본을 ‘민주국가’, ‘평화국가’로 새롭게 만든다는 명제는 그 자체로서 자유주의 정신을 유발하였다. 이 시점에 마루야마가 존 로크의 정치이론을 호평한 것은 시사적이다. 마루야마는 1949년 시점에서 신헌법 성립을 로크의 이론이 일본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로크의 이론이 패전국 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일본정치의 규범(norm)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루야마는 “자유주의 탄생기로 되돌아가” 로크 사상을 음미할 것을 제안한다.¹⁵

마루야마는 필머(Robert Pilmer), 홉스의 자유 개념과 로크의 자유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로크의 자유주의를 평가하였다. 왕당파 필머는 자유를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대로 생활하고, 어떤 법에도 구속받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다. 홉스는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결여”, 즉 외적 장애로서 작용하는 반대물이 결여된 상태가 자유이며, 사물은 “운동의 공간을 갖는 정도에 따라 자유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였다. 필머, 홉스의 자유 개념은 구속의 결여를 뜻한

15 마루야마 마사오, 2011a, 「존 로크와 근대정치원리」,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 휴머니스트, 412쪽.

다. 이와 달리 로크는 자유를 “행위자가 정신의 결정 혹은 사고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생각을 멈추는 일 중 어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결정 능력”으로 보았다. 마루야마는 로크의 자유 개념을 선호하여 자유를 이성적인 자기결정 능력(“자기입법”)으로 이해하였다.¹⁶

자기결정 능력은 주체성과 다를 바 없다. 주체가 자유를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길은 자기결정 능력을 높이거나 자기결정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 마루야마는 일본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토의문화에 일상적인 비민주적 양태와, 레드 퍼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요구받는 정신적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일본사회에서 영위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추궁한다. 비민주적인 토의문화를 비판하였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상호비판이 가능한, 지성의 차원에서 공통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비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이다.¹⁷

마루야마는 일본사회의 비민주적 상황을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민주주의가 일본인들의 몸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를 통해 들어와 이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의 갭”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사회의 강력한 전근대적 인간관계에서는 상위자가 행사하는 권위의 무언의 압력이나 권위의 실질적인 폭력성이 은폐되고, 내면적 공포에서 나오는 복종이 쉽게 근대적인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루야마는 일본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자형 지도자보다 보스형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독재자는 바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공공연하게 파괴하지만, 보스는 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조용히 부식시킨다는 말이다. 보스적 지배는 선전·선동을 하지 않고도 일상적인·전통적인 가치의식과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16 마루야마 마사오, 2011a, 위의 글, 420~422쪽.

17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76쪽.

의존하면서 인민의 자유로운 비판력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말이다.¹⁸

이러한 비민주적 상황은 어디에 나온 것일까. 마루야마는 ‘화(和)’를 중시하는 일본문화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면서 ‘화’의 일본문화를 비판한다. 일본사회에서 가족주의와 연관된 ‘화’의 정신은 ‘우애’의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권위 관계에서 성립하며, 일본인은 상위의 권위에 도전하면 ‘은혜를 모른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마루야마는 ‘화’와 ‘은(恩)’의 정신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일본사회에는 “은혜적 해방”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안으로부터의 총체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⁹ 안으로부터의 총체적인 혁명은 주체적 개인이 자기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2. 리얼리즘과 주체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시작된 동아시아 냉전은 공산주의자 공직추방(레드 퍼지)과 일본의 재무장 논의를 촉발하였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냉전의 현실과 대면해야만 하는 콘텍스트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마루야마는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일본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냉전적 현실을 예민하게 감지하였다. “1950년 연말 모든 직장에서 공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다. 비권력층뿐 아니라 권력자층 내지 추종자들 사이에 한층 더 큰 공포감이 가득 차 있다”. 마루야마가 관찰하기에, 지배층이 내면의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공포감이 증대되고, 도전세력이 대중적 배경에서 분리되고 고립되면서 도전세력 진영의 공포감이 증폭되는, 이로 인해 전투적 분자들이 더 전위적이 되고 “철의 규율”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공포의 악순환”이 발

18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87쪽. 이 발언은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성찰에 기초한 것이다.

19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89~190쪽.

생하는 정신적 상황, 사실에 대한 공포보다 상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공포의 악순환이 순환에 머물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테모크라시와 공포는 물과 기름 이상으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⁰

냉전 현실이 일본의 정치사회에 초래한 레드 퍼지의 상황에서 조장된 “공포의 악순환” 혹은 “확대 재생산”은 냉전의 객관적 실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체주의화의 위험”, 즉 민주주의의 위기는 냉전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국내사회의 냉전적 인식구조에서 연유한다. 마루야마는 공산당 탄압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일본과 같은 사회의, 현재의 정황에서는 공산당이 사회당과 더불어 민주화—그 래, 서구적 의미에서의 민주화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에서 탄압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전체주의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²¹

문제는 사상적 대립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공포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언론의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있다. 마루야마가 생각하기에 정치가들이나 신문 저널리즘이 “안팎의 반공사조를 틈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얼마 전까지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온상이라고 외쳐대던 이들이 ‘반공’을 표명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를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 “교묘하게 위장한 악질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²² 역설적 상황이 문제다. 마루야마는 반공자유주의자들이 언론의 자유가

20 마루야마 마사오, 2011b, 「공포의 시대」,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 521~524쪽.

21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앞의 글, 194~195쪽.

22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78쪽.

있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추상적 원칙론”에 입각해 레드 퍼지를 다룰 뿐, 추상적 원칙론이 일본의 민주적 분위기를 증대시키는지 감퇴시키는지의 현실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산주의자의 부주의한 언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실속 없이 상대의 공포심을 자극한다”라고 비판한다.²³ 마루야마는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자유주의자들이 실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적 원칙론을 내걸고 일본사회를 규율하는 냉전적 상황에 민감했다. “반공의 사조” 속에서 정치와 언론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자유주의를 왜곡시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냉전적 현실이 조성한 공포심과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비주체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마루야마는 리얼리스트한 현실인식을 요구한다. 반공주의자들은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개념적이며 놀랄 만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 “화려한 정치현상”에 정신을 빼앗겨 “그 밑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배선구조”를 보지 못한다.²⁴ 마루야마는 “서구적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이나 카테고리가 눈부시게 화려한 표면의 정치적 세트 이면의 배선 속에서 어떻게 본래의 모습에서 왜곡되는가”를 추궁하는 “리얼한 인식” 없이 “정치적 상황의 참된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²⁵ 이분법적인 사고구조에서 화려한 말의 성찬에 가려진 내부의 정치적 의도들의 배선구조를 파헤쳐 본래의 모습을 읽어낼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상황의 참된 판단”을 위한 “리얼한 인식”인 것이다.

마루야마의 리얼리즘은 추상적 논리를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성립한다. 마루야마는 추상적 이데올로기나 도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현실을 고찰하는 시선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자

23 마루야마 마사오, 2011b, 앞의 글, 524쪽.

24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앞의 글, 183쪽.

25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84쪽.

유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사상으로서 수입된 것일 뿐 일본인이 생활체험을 통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일본사회는 추상적인 이념과 구체적인 생활체험이 무매개적으로 병존해 왔으며, 따라서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와 객관적인 행동 원리의 겹”이 아주 크다. 그런데 현실의 사회문제는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간을 움직이는 행동 원리를 인간이 의식적으로 준봉하는 “주의(主義)”에서 연역해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생활환경에서의 모든 행동양식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²⁶ 진보주의와는 동떨어진, ‘보수주의자’ 후쿠다 쓰네타리가 말했을 법한 보수주의 논법과 다를 바 없다. 냉전 초기의 콘텍스트에서 생성된 리얼리즘이 이러한 상동성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리얼리즘은 실용주의와 통한다. 마루야마는 “적어도 정치적 판단의 세계에서는 고도의 실용주의자”이기를 자처한다. 그는 내재적·선천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용인할 수 없으며, 시비의 판단은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마루야마는 어떤 것이든 이데올로기의 도그마화를 “체질적으로” 저항한다고 말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열광주의에도 “본능적으로” 반발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좌익절대주의의 챔피언”으로 간주하고 “열광적 혁명주의자를 옹호한다”고 비판하는 자를 향해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오류”라고 말한다. 자신은 “정치적 실용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²⁷ “적어도” 정치적 세계에서는 “고도의” 실용주의자이지만, “절반은 진실”이라는 표현에서 짐작되듯이 이념세계에서는 “좌익절대주의”나 “열광적 혁명주의”에 얼마간 친화적이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마루야마는 “자유인”을 자임하는 “무당파적 지식인”의 주체성을 상정한다. “자유인”이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무당파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기초해서 전략이나 전술을 자각해야

26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81~182쪽.

27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94쪽.

한다는 것이다.²⁸ 마루야마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냉전적 현실에서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편, 정치적 판단의 세계에서는 무당파의 중립을 주장하였다.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실용주의는 자유인의 무당파적 스탠스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V. ‘평화와 자유: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

1. ‘두 개의 세계’, 냉전과 평화

‘두 개의 세계’에서 전개된 냉전이 일본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존재양태를 규정했을 때, 자유주의적 사유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떠한 처방을 내놓았을까. 냉전을 보는 마루야마의 자유주의적 견해는 마루야마가 기초한 평화문제담화회 명의를 「세 번째 평화에 관하여」(1950)라는 장문의 선언문에서 엿볼 수 있다. 마루야마는 미소가 구축한 ‘두 개의 세계’와 두 세계를 규정하는 ‘냉전’을 직시하면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글에서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냉전을 생각하는 마루야마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평화와 파시즘의 문제로 귀결된다. 냉전은 국내적 파시즘에 대한 비판에서 국제적 파시즘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와 시야를 넓히는 계기였다. 마루야마는 신일본 건설과 민주화를 실천하는 전제로서 일본정치의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에서 배태된 전전의 파시즘을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는 냉전적 현실에서 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보았다.

마루야마의 냉전평화론은 전쟁관에서 시작된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세계전쟁(global war)과 전체전쟁(total war)을 속성으로 하는 현대전은 전장에서의 무기사용에 한정되지 않는 파괴성을 가졌다. 현대전의 패러독스는 근대산업 및

28 마루야마 마사오, 1997b, 위의 글, 180쪽.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체화하고 국가·민족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에 놓인 한편, 정치권력들의 집단적인 조직화가 고도화하고 정치권력들 사이의 알력이 대규모화한 역사적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 결과 이제 “전쟁은 지상최대의 악”이며, 세계평화는 어떤 이상으로도 희생시킬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인식된다. 마루야마는 현대전의 새로운 형태인 핵전쟁에서 평화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찾아낸다. 핵전쟁은 “가장 현실적이고자 한다면 이상주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핵전쟁 단계에 들어 전쟁을 최대악으로 보고 평화를 최대가치로 삼는 이상주의적 입장이 오히려 고도의 현실주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평화의 역설은 냉전 상황에서 더욱 깊어진다. 그가 보전대 미소 초강대국이 ‘두 개의 세계’를 규정하는 냉전 현실은 모든 권력관계를 양극으로 수렴시켜 단순화시킴으로써 충돌의 위기를 초래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정치권력의 동적 과정에서 다각적인 권력관계가 두 개의 최대 권력 주변을 향해 흡수되고, 양극성이 현저해질수록 폭발적 충돌의 위기가 항진(亢進)하고, 반대로 힘이 다원적으로 분산될수록 일반적 균형이 성립할 가능성이 많은 국내의 경우와 국제관계의 경우를 불문하고 정치의 일반법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소라는 초강대 국가가 형성되고 세계적 규모에서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권력관계가 단순화하는 경향이 세계평화에 중대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것은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³⁰

냉전은 세계정치와 외교문제를 “적과 동지, 선과 악이라는 선천적·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경향에 빠뜨림으로써 역으로 국가행동을 구속하고 문제처

29 丸山眞男, 1995, 「三たび平和について」(1950), 『丸山眞男集』第5巻, 東京: 岩波書店, 8~10쪽.

30 丸山眞男, 1995, 위의 글, 24쪽.

리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 마루야마는 ‘두 개의 세계’의 대립을 세 측면에서 파악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 서구국가 군과 공산국가 군의 진영 대립, 미소 강대국의 대립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곧바로 전쟁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데올로기와 무장권력인 국가 사이에는 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도식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대립도 교착해 있고, 다른 유력 국가들이 꼭 미소 양국처럼 대립하는 것도 아니며, 미소 양국도 전면충돌은 피하고자 진력하고 있다.³¹ 마루야마는 이러한 생각에서 두 세계가 대립하는 냉전이 평화를 위협하지만 곧바로 전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마루야마는 ‘두 개의 세계’의 실제 대립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편, 두 세계의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고법을 배격하고 공존의 조건을 적극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마루야마가 보기에 이상적 희망을 표현한 견해와 현실의 객관적 인식에서 나온 견해 모두 “현실적 인식”이다. 주체적 입장과 전혀 무관한 “객관적” 인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루야마는 문제의 설정방식에 따라 현실처리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았다. ‘두 개의 세계’는 양립불가능하며 무력충돌에 의해서만 타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도 믿음을 갖고 조정의 여지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방향지를 것인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³² ‘두 개의 세계’의 대립을 극복하는 길은 ‘두 개의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경은 “두 세계”의 병존의 고도화(高度化)라는 말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세계정치의 양극화를 견제하는 요소들을 끌어낸다. 먼저 자유진영 국가들이 유엔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독자적 판단으로 행동하는 경향에서 “양극화 경향에 대한 위구(危懼)”라는 공통감정을 읽어낸다. 또한 독자적인 역사와 생활양식을 갖는 제3세력의 형성에 주목하면서 네루의 중립정

31 丸山眞男, 1995, 위의 글, 15~20쪽.

32 丸山眞男, 1995, 위의 글, 12~13쪽.

책이나 평화지대 구상에서 두 세계의 대립을 완화할 완충지대의 가능성을 찾고 중국의 독자화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또한 냉전이 지속되면서 자유, 공산 양 체제가 닳아가고 파시즘이 부활할 위험이 있으며 식민지 내셔널리즘이 부상하는 등 미소 양국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서 두 세계의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엔이 두 세계의 병존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소련에서 시민적 자유가 신장하고 미국에 계획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양 체제가 접근할 여지도 있음을 점치고 있다.³³

마루야마는 리얼리즘의 감각을 요구했지만, 냉전적 사고에 구속된 현실주의에는 비판적이었다. ‘현실’이란 “주어진 것”인 동시에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른바 ‘현실주의자들’은 후자의 측면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현실’은 ‘이미 그러한 사실(기성사실)’로 여겨지며(현실의 소여성), 흔히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유가 성립한다. 또한 사회적 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현실의 일차원성). 그들이 ‘현실적이 되라’고 말할 때 이미 현실의 어떤 측면은 바람직하고 다른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에 기초해서 현실의 한 측면만을 선택한다. 흔히 지배 권력이 선택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것이라 옹호하고 반대파의 선택은 ‘관념적’·‘비현실적’이라 비난한다. 지배층이 생각하는 ‘현실’을 일반적인 현실로 간주한다. 마루야마는 이러한 관점에서 강화문제와 재군비문제는 현실론과 비현실론의 투쟁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둘러싼 투쟁으로 보았다.³⁴

이러한 논의에는 기성의 현실과 구성적 현실을 구별하는 마루야마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주체적(주관적) 입장을 떠난 객관적 인식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도 상통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냉전적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이상주의적 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기성의 현실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정신이라 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자유주의는 현실의 비판적 재구성, 즉 구성

33 丸山眞男, 1995, 위의 글, 23~34쪽.

34 마루야마 마사오, 1997a, 위의 글, 218~222쪽.

적 현실을 모색하는 의지에서 성립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리버럴 보수의 보수적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비판적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대립적 냉전관에 기초한 샌프란시스코 강화를 비판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마루야마는 중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중국을 제외한 편면(片面)강화를 맺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극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동서분열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서구국가 들하고만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아시아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그럴 경우 일본은 지리적·역사적·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다. 마루야마는 “패전으로 메이지 초년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일본은 아시아의 배반자로 데뷔하려는 것인가”라고 자문한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의 감성이 입혀지는 대목이다. 마루야마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국가로 당당하게 등장했을 때 일본은 아시아 모든 민족의 희망”이었고, “일본의 발흥이 아시아민족의 독립 운동에 미친 한없는 자극”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아시아 비운의 만회”가 “메이지 초년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꿈에도 잊지 못했던 목표였고, 일본이 “유럽 제국주의의 꿈무늬에 붙어”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시아대륙을 “침략”하면서 “아시아의 희망에서 아시아의 배반자로” 급변한 데서 일본의 비극은 배태 되었다고 지적한다.³⁵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는 냉전적 현실의 비판적 재구성을 추구하는 의지와는 별도로, 메이지 초기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2. 냉전, 파시즘, 내셔널리즘

마루야마가 ‘두 개의 세계’에서 간취한 것은 이데올로기 대립이 초래한 새로운

35 마루야마 마사오, 2011c, 「병상으로부터의 감상」,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 532~533쪽. 마루야마 마사오를 비롯한 일본의 진보 지식인에게 아시아 인식, 특히 한국 인식이 결락되어 있다는 비판은 많이 이루어져왔다.

형태의 파시즘이다. 마루야마는 레드 퍼지와 역코스가 전개되고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사회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세해지면서 파시즘의 분위기가 다시 배회함을 감지하였다. 전면강화와 중립을 주장하는 진보적 평화론자들을 비판하는 보수론자들의 논리와 어조에서 전전 파시즘과 유사한 사상적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터부를 구실로 삼은 위협적 언사”가 난무하고, “충신-역신적 가치판단”이 행해지고, “적성국가”를 설정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파시즘의 기운을 느꼈다.³⁶

주지하다시피 냉전적 현실에서 조장된 파시즘적 경향은 자유진영을 이끄는 미국사회에서 두드러졌다. 마루야마는 매카시즘에서 파시즘을 떠올렸다. 그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파시즘과 관련이 없다는 식의 삼단논법이 통용되는 현실을 비판한다.³⁷ 파시즘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위협하다고 지적한다. 파시즘은 “사회의 강제적 동질화”나 “강제적 결합”이라는 의미로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파시즘을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보았다.³⁹ 민주주의 시대에는 공공연하게 ‘파시즘’이란 이름을 내걸 수는 없다. 하지만 매카시즘의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이다.⁴⁰

파시즘적 상황에서는 자유는 이단,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의견과 사고방식이 같은, 즉 신조가 같은 동질자들 사이에서만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한 자유는 현행 질서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질서를 적극 예찬하는 자에게만

36 丸山眞男, 1995, 앞의 글, 11쪽.

37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파시즘의 현대적 상황」(1953),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 546쪽.

38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위의 글, 547쪽.

39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위의 글, 551쪽.

40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위의 글, 551쪽.

인정되는 형해화된 것일 뿐이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이 만연해지면 헌법상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실히 인정되고 국가권력이 직접 탄압하지 않아도 반공을 외쳐대지 않으면 ‘빨갱이’나 ‘동조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권력에 의한 강제적 동일화가 나타난다. 냉전 상황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고방식은 파시즘적인 동일화의 논리로 바뀔 위험이 있다. 자유주의자는 민감한 문제에는 침묵을 지키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침묵의 자유’도 없어져 큰 소리로 “나는 반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식이 된다. 자유주의 전통이 오래된 미국에서조차 신앙고백을 강제하는 ‘충성조사’가 행해지고, 정부기관이 ‘빨갱이’와 ‘동조자’를 색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을 가진 일본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아주 크다.⁴¹

냉전적 현실에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자유주의 정신이 투사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내셔널리즘이다. 파시즘이 자유주의의 가장 유력한 대적 상대라면, 내셔널리즘은 자유주의를 투사하는 매개라 할 수 있다. 국제 영역에서 국가나 민족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가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될 때,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가 주권독립을 지향하는 개체의 자유문제가 생겨난다. 자유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독립생존을 모색하는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출현한다. 전후일본의 자유민주주의자들도 국제사회에서 일본 내이션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내셔널리즘을 과제로 삼았다.

마루야마는 자유당에서 공산당까지 모든 정당이 “민족의 독립”을 공통의 슬로건으로 표방하는 사태에 유의하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패전을 계기로 식민지나 반식민지였던 아시아 지역의 내셔널리즘과 공통된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적고 있다.⁴² 마루야마가 보기에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전전, 전중기의

41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위의 글, 552~557쪽.

42 마루야마 마사오, 1997c, 「일본에서의 내셔널리즘」,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199쪽.

초국가주의와 같은 “반혁명과의 결합”이 아니라 “국민적 독립”이라는 내셔널리즘의 지상명제를 공유하게 되었다.⁴³ 이는 “발전적 내셔널리즘”의 속성을 갖게 되고 발전적 내셔널리즘에 요구되는 “국민적 사명감”을 수반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내셔널리즘과 국민적 사명감은 “일본이 앞으로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마루야마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평화문화국가”라는 사명감”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등장하고 다양한 이론의 뒷받침이 있었지만 “국민에 대한 견인력”을 거의 갖지 못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전후내셔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구제국의 내셔널리즘에 필적할 정도의 흡인력”을 가진 “신선한 사명감”을 상정한다.⁴⁴

그런데 내셔널리즘의 존재양태를 규정하는 국제사회(혹은 국제민주주의)가 자유, 공산 두 세계의 대결로 인해 왜곡되는 냉전적 현실에 대면했을 때,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이를 지탱하는 자유주의 사고는 어떤 행로를 보일 것인가. 마루야마는 내셔널리즘 자체는 독립된 정치력이 될 수 없고 상위의 국제적인 정치력과 결부되어 냉전의 세계전략의 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는 한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다.⁴⁵ 냉전구조에서 생성된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진영논리가 국가를 규율했을 때 국가의 자주적 존재양태를 모색하는 내셔널리즘은 냉전논리에 포섭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라는 최고의 가치와 내셔널리즘의 국민적 사명감을 어떻게 관계지을 것인가, 평화의 실현을 위한 리얼리즘과 국가(국민)의 독립발전을 위한 리얼리즘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마루야마는 이 문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43 마루야마 마사오, 1997c, 위의 글, 216쪽.

44 마루야마 마사오, 1997c, 위의 글, 210~212쪽.

45 마루야마 마사오, 1997c, 위의 글, 215쪽.

VI. 맺음말: ‘자주’와 ‘공평’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 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양면에서 포착할 수 있다. 냉전이 자유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자유주의가 냉전을 어떻게 규율하는가의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마루야마에게 ‘냉전’과 ‘자유주의’란 무엇이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마루야마는 냉전이 1948년의 유럽 냉전이나 1949년의 중국 공산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대전의 종료와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1946년 평화헌법도 미소냉전을 전제로 성립했다고 보았다. 평화헌법 제정은 이미 미소대립이 예상되고 국제관계가 불안정해진 상황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달성할 것을 서약”(일본국헌법 전문)한 것은 유토피아적 세계를 상정해서가 아니라 미소항쟁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⁴⁶ 마루야마의 사상적 지평에서 ‘냉전’은 ‘전후(패전)’와 중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냉전자유주의’는 냉전에서 요구되는 ‘평화’와 패전에서 요청된 ‘민주’를 통괄해서 상정된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상관적인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목할 것은 ‘냉전’과 ‘자유주의’를 연계시키는 계기로서의 ‘리얼리즘’이다. 냉전자유주의는 냉전 상황에서 영위되는 자유주의일 수도 있고, 냉전 상황에 대면하는 자유주의 정신일 수도 있다. 리버럴 보수의 경우가 전자였다면, 마루야마는 후자였다. ‘민주’와 ‘평화’에의 열망이 강했던 패전과 냉전 초기의 전후공간에서 리버럴 보수와 마루야마의 자유주의는 리얼리즘에서 성격이 갈렸다. 마루야마의 리얼리즘은 그의 학술비평에서 본질적인 상수였을까, 아니면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는 상황적 표현이었을까. 마루야마는 일찍부터 사상적 원리의 선형적 규정을 통해 현실을 조망하기보다는 상황

46 마루야마 마사오, 1997a, 앞의 글, 232쪽.

(현실)과의 조응관계 속에서 원리를 찾는 사상사를 추구하였다. 그에게 자유주의와 리얼리즘은 원리와 실제 사이의 긴장감을 지탱하는 이념이었다. 하지만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을 벗어나, 특히 1960년 안보투쟁을 고비로 이념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이 약화되면, 이러한 리얼리즘도 얼마간 변용한다. 리얼리티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문화론적 해석을 덧붙이게 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⁴⁷

마루야마의 리얼리즘은 후쿠다 쓰네히리와 마찬가지로 냉전 초기에 ‘두 개의 세계’에 처한 일본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던 현실적 긴장감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루야마의 리얼리즘이 냉전 초기에 힘과 이익의 관점에서 개체들의 관계를 파악했던 미국발 고전적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자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과 평화의 일본적 존재양태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였다. 이성적 개체들의 합리적인 이익계산을 전제로 성립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와 달리, 마루야마의 리얼리즘은 전체(국가/사회) 속에서 개체를 파악하고 개체를 규정하는 외적 조건을 리얼하게 파악하는 인식론에 기초하였다.⁴⁸ 자유주의는 개체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건들을 읽어내는 힘을 제공하지만 전체를 초월하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마루야마를 포함한 냉전 초기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출현한 ‘경제대국’의 자유주의자들과는 구별되는, 약자의 자유주의였다.

냉전 초기의 마루야마에게 ‘두 개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 ‘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는 국민의 공정한 판단을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통신, 보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평해야 하고, 상이한 의견들이 공평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공평성을

47 이러한 경향은 마루야마 마사오, 박충석 역, 1998, 『충성과 반역』, 나남;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8, 『일본의 사상』, 한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 마루야마에서의 전체와 개체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笹倉秀夫, 1988, 『丸山眞男ノート』, 東京: みすず書房.

저해하는 법령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⁴⁹ 또한 국민이 자주적인 그룹을 만들어 공공의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결사가 대중의 수동화를 저지하고 파시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⁵⁰ 국민의 주체화를 보장할 ‘공평’과 ‘자주’의 발상은 ‘이성적인 자기결정 능력(로크)’을 중시하는 사고와 관련될 것이다.

마루야마가 말하는 ‘이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시민’보다는 ‘국민’을 상정한 것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작동하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시민사회론보다는 내셔널리즘론에서 상정되었다. 전후의 마루야마는 주체적 개인(이상적 인간)을 추구하였지만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는 자유주의와 리얼리즘에서 내셔널리즘론을 전개했을 때 주체적 국민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주의적인 것이 가장 현실주의적이라는 평화론의 역설은 현실주의적인 것이 이상주의적인 것이라는 내셔널리즘론의 역설과 짝을 이룬다. 비주체적 냉전의 맥락과 고투하면서 주체를 모색하는 비판적 자유주의의 역설일 수도 있다.

49 마루야마 마사오, 1997a, 앞의 글, 228쪽.

50 마루야마 마사오, 2011d, 앞의 글, 563~564쪽.

참고문헌

- 김석근·가루베 다다시 엮음, 2014, 『마루야마 마사오와 자유주의』, 아산서원.
- 나카노 도시오, 서민교·정애영 옮김, 2005, 『오쓰카 히사오와 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전후민주주의 사상』, 삼인.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7,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8, 『일본의 사상』, 한길사.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2011, 『전중과 전후 사이 1936-1957』, 휴머니스트.
- 마루야마 마사오, 박충석 역, 1998, 『충성과 반역』, 나남.
- 장인성, 2009, 「현대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일본비평』 창간호, 그린비.
- 장인성, 2012,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일본비평』 제6호, 그린비.
- 장인성, 2013, 「현대일본의 애국주의: 전후공간과 탈냉전공간의 애국심론」, 『일어일본학연구』 제84집, 한국일어일본학회.
- 大塚久雄, 1977, 『社会科学における人間』, 東京: 岩波書店.
- 笹倉秀夫, 1988, 『丸山眞男ノート』, 東京: みすず書房.
- 田中浩, 1993, 『近代日本と自由主義』, 東京: 岩波書店.
- 佐伯啓思, 1996, 『現代日本のリベラリズム』, 東京: 講談社.
- 福田恆存, 1987, 「私小説的現実について」, 『福田恆存全集』第1巻, 東京: 文藝春秋.
- 「三たび平和について」(1950), 『丸山眞男集』第5巻, 東京: 岩波書店.
- Plamenatz, John, 1978, "Liberalism," *Dictionary of History of Ideas*, vol. 3.

냉전과 일본의 자유주의 - 마루야마 마사오의 냉전자유주의와 리얼리즘

장인성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

‘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 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작동하였다.

주제어: 마루야마 마사오, 냉전자유주의, 전후일본, 민주와 평화와 자유, 현실주의, 내셔널리즘

ABSTRACT

Cold War Liberalism in Postwar Japan: An Interpretation of Maruyama Masao's Realistic Liberalism

JANG In-Sung

This paper explains what Japanese progressive liberalism was in postwar Japan by clarifying Maruyama Masao's "Cold War Liberalism," focusing especially on his realism and nationalism searching for "democracy" and "peace" in the context of the early Cold War Japan. Maruyama's Cold War liberalism can be grasped from two perspectives: how the Cold War defined his liberalism and how Maruyama interpreted the Cold War as a liberalist in postwar Japan. The liberal interpretation of the Cold War captures the spatial manifestations of liberalism in the Cold War while Cold War liberalism was to grasp the temporal succession of modern Japan.

Maruyama revealed his liberal thinking by combining it to his idea of nationalism and realism. He was concerned about the reshaping of the fascist atmosphere provoked by anti-communism emerging from

the Cold War confrontation structure. He sought “neutrality” and “peace” to overcome the so-called “two worlds” of the Cold War. And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fair judgment” and “autonomous association” to restrain the fascist atmosphere in postwar Japan. For Maruyama, subjectivity aimed at the concept of “nation” rather than “citizen,” and nationalism was a condition for “democracy” and “peace” in postwar Japan. Maruyama’s critical liberalism worked through nationalism and realism.

Keywords: Maruyama Masao, Cold War liberalism, Postwar Japan, democracy, peace, liberty, realism, nationalism

일본의 ‘교과서우익’과 전쟁 피해의 전략적 활용

–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정치권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종문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1990년대까지의 상황
- III. 새역모와 역사교과서 파동
- IV. 양대 교과서우익의 피해의식 활용
- V. 맺음말



I. 머리말

그동안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를 다룬 수많은 연구 성과가 배출되었다. 1970년 함성광의 석사 논문 「중·일 양국의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상의 한국사에 관한 서술 문제 연구」가 첫걸음을 내디뎠다.¹ 이후 축적된 관련 연구를 거칠게 분류하자면,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국사 관련 사안의 진단이 가장 많고, 전쟁책임 문제와 ‘우경화’를 연계시킨 정치·사회적 배경의 분석이 뒤를 잇고 있으며, 독일 등 타국과의 비교 연구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까지 시야에 넣은 동아시아사와의 관련성과 일제강점기 교과서의 해부로부터 확대되고 있다.²

이상의 제반 연구는 역사왜곡이라는 단어로 표상되었던 제국주의 일본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 천착한 결과물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영토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가해자 일본이며, 가해 사실의 무화와 은폐를 파헤치는 것이 으뜸가는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피해 사실이 적지 않게 기술되어 있으며, 그 양상은 1970~1980년대 이후 점증하고 있다. 가령 원자폭탄 투하는 2015년판 중학교

* 투고: 2017년 9월 5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18년 2월 24일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1 함성광의 논문을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의 효시로 판단한 것은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의 검색 결과가 근거다.

2 지면 관계상 최신 연구만을 소개하자면, 황용섭, 2017, 「일본 初·中學校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6; 서종진, 2016, 「일본 보수세력의 교육개혁과 교과서 공격: 제3차 교과서 공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김정분, 2017, 「미국 세계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분석: 서술 관점과 발문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6(1); 김정현, 2016,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박경수·김순진, 2017, 「일제강점기 역사교육과 和歌의 상관성 고찰: 1920~1930년대 초등학교 〈歷史〉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73 등이다.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실려 있다. 그중에서 자유사[自由社] 교과서는 “원폭 투하는 피해 규모에서도 20세기 최대의 전쟁범죄”(248쪽, 이하에서 교과서 인용은 쪽수만 명기함)라고 부르짖는 반면, 마나비사[学び社] 교과서는 “인간을 돌려다오-원폭 투하”의 제목 아래 2쪽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구사하며 원폭이 초래한 비인도적 참상을 그려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피해 기술에 대한 분석이 등한시되어 왔다. 도쿄서적의 2012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는 도중에 “희생의 장소를 소거시키며 보편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속에서 일본인의 피해자의식을 안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짚막하게 언급하거나,³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국민도 그 피해자라는 논리를 통해 그들의 전쟁협력에 대한 죄의식을 걷어내”려 한다는 지적에 그친다.⁴ 본고의 일차적인 문제의식은 한국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담긴 피해(자)의식(이하 피해의식)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피해 기술 분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1973년 설립된 일본평화학회의 취의서는 “피폭 체험에 바탕을 둔 전쟁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평화 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⁵ 21세기가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쟁이 나쁘다, 전쟁은 잔인하다고 함으로써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⁶는 부정의(不正義)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가해책임이 결여된 일국 중심의 피해의식·평화주의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가해와 피해를 아우르는 전쟁관과 역사인식의 구

3 신주백, 2014, 「1990년대 전후 일본 중학교 역사교육의 목표와 교과서 서술의 변화: 『근린제국조항』이 말하는 ‘배려’의 실체를 찾아서」, 『역사교육연구』 20, 262쪽.

4 김가영, 2016,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전쟁에 대한 기억과 반성」, 『역사교육연구』 24, 172쪽.

5 [https://www.psj.org/本学会について/設立趣意書/\(2017년 4월 26일 조사\)](https://www.psj.org/本学会について/設立趣意書/(2017년 4월 26일 조사)).

6 林博史, 2016, 「加害と被害の重層構造-日本人の戦争体験をとらえ直す」, 『立命館平和研究』 17, 8쪽.

축이 시급하다. 국경을 넘어 공유 가능한 피해의식의 조형, 이것이 본고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체가 아니라 이른바 ‘교과서우익’의 역사교과서에 한정하여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기술 현황과 그 함의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교과서우익은 1997년 창립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새역모 탈퇴자가 2006년 세운 일본교육재생기구(이하 재생기구)의 두 그룹을 가리킨다. 새역모는 2001년부터 후소사[扶桑社]에서 역사·공민을 출판했으며(2009년 이후 지우사), 재생기구는 2011년부터 이쿠호사[育鵬社]와 제휴하고 있다.

본고가 교과서우익의 교과서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⁷는 먼저 교과서우익 교과서의 피해 기술은 양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여타 교과서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밝히듯이 역사수정주의 교과서의 선봉장 격인 2001년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도쿄 대공습의 아비규환을 감성적으로 기술하고 도쿄재판의 부당함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최신의 2015년판에서는 지우사와 이쿠호사 교과서 공히 2011년판에 이어 오키나와 전투의 피해 상황을 대서특필했다. 본고는 교과서우익이 여타 교과서와 달리 왜 과도하게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피해자적 요소를 부각시키는가의 답으로서 피해의식을 내서널리즘으로 치환하는 ‘피해의식 내서널리즘’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교과서우익의 교과서 편찬과 기술 내용은 보수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새역모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출발부터 ‘정치적’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전후민주주의’를 통해 건인된 평화주의와 보수 정치의 연결고리를 공격·해체하려 했으며,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일본

7 현재 지우사와 이쿠호사의 교과서 외에 고교 교과서로 일본 최대의 우파 단체 ‘일본회의’에서 펴낸 『최신일본사』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한적인 언급에 그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와는 구성과 체제가 다른데다 관련 단체의 움직임을 아우르는 본고의 일관적 분석 방법을 살려나간다는 측면과 더불어 『최신일본사』의 피해 기술이 소략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군 ‘위안부’ 기술을 초래한 고노[河野] 담화·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의 ‘사죄외교’를 질타하고 배격했다. 교과서우익은 지난 20년의 활동 기간 내내 역사갈등의 전담 공격수로서 개헌 추진의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본고는 그 내부의 정치동학을 면밀히 추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미’를 둘러싼 견해차로 인해 교과서우익이 2차에 걸쳐 분열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상술하며, 당해기의 정국 상황과 교과서의 피해 기술 변화가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가해의 미화·은폐를 넘어 피해의식의 재해석·활용을 살핍으로써 교과서우익과 우경화를 아우르는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공략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교과서우익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도쿄 대공습, 원폭 투하, 오키나와 전투, 시베리아 억류 등의 전쟁 피해를 어떻게 기술해왔는지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헌을 둘러싼 논란과 연계되는 도쿄재판에 관한 기술의 변화도 검토할 것이다.

II. 1990년대까지의 상황

1. 피해의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1) 피해의식의 형성과 평화주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입은 피해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담론으로 거론된 것은 점령 통치의 종료와 맞물린다. 특히 전쟁 피해의 구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법정이 구성되면서 국가는 공식적인 전쟁 인식·평가를 직접 피력하기에 이른다. 사실 일본 정부의 전쟁관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에 따라 매듭이 지어졌다. 피해국으로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의 설정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원폭 피해자의 사례다.

1955년 4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묻는 소송을 냈다.⁸ 1963년 12월 도쿄지방법판소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무차별 원폭 투하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강화조약을 근거로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피해를 안긴 가해자는 그 존재부터 불투명해지며, 원폭 피해는 사실상 태풍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치부되었다.

이번에는 보통의 일본인에게 피해의식이 어떻게 조형되는가를 쫓아가 보자. 패전 직후부터 미국에 의해 일본 국민은 피해 공동체라는 이미지가 부식·확산되었다. GHQ는 1945년 12월 8일부터 17일에 걸쳐 모든 전국지에 ‘태평양전쟁사-진실 없는 군국 일본의 붕괴’를 게재하게 하는 동시에 12월 9일부터 NHK 라디오에서 연속 방송 ‘진상은 이렇다’를 10회에 걸쳐 내보냈다. ‘군국주의자’가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했다고 강조함으로써 군국주의적 지도자와 그들에게 속은 국민이라는 도식, 즉 ‘지도자 책임관’이 퍼져나갔다.⁹

가해의 규명·추궁을 비껴가는 모호한 피해의식은 진보적인 ‘전후역사학’에서도 일부 관찰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성찰하고 비판했지만, 민중은 가해자인 국가와 대치시켜 피해자로서 끌어안고자 했다. 에구치 게이이치[江口圭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종전의 역사학 연구에서는 민중을 역사의 추진력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민중미화론에 빠지기도 했고, 한편으로 민중의 전쟁책임 추궁은 전쟁 지도자의 면죄부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정치적 배려에서 민중 자신의 전쟁 지지·협력

8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荒井信一, 1995, 『戦争責任論』, 岩波書店, 213~228쪽을 참조했다.

9 요시다 유타카, 하종문 역, 2004,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44~45쪽. 민중사상을 파고들었던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도 패전 직후 일본의 대다수 민중은 “전쟁과 패전에 이르는 과정을 『속았다』라는 논리로 파악하고 납득했”으며, 거기에는 “전쟁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의식”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安丸良夫, 1977, 『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前夜』, 朝日新聞社, 214쪽).

문제의 해명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¹⁰ (밑줄은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

‘정치적 배려’는 패전 이후 일본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던 피해의식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바뀌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듯 전후의 ‘평화주의’는 보통의 일본인이 피해자라는 집합의식 위에 구축되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일본평화학회는 가해가 아닌 피해의 기억을 발판으로 ‘보편적인 평화 연구’를 추진하려 했다. 거기에서는 피해자 민중을 가해자 국가와 분리하려는 발상이 뼈대를 이룬다. 일본평화학회는 전후 40주년인 1985년을 기념하여 추계연구대회를 개최했다.¹¹ 전쟁하에서의 민중을 둘러싸고 ‘가해자론’과 ‘피해자론’이 격돌했지만,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일찍이 1971년 하니 고로[羽仁五郎]는 사오토메 가쓰모토[早乙女勝元]의 『도쿄 대공습』 간행에 대해 “나는 일본인이 써야 할 것은 도쿄 대공습보다 먼저 남경 학살의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통렬한 비판을 던졌지만,¹² 15년이 흘러도 가해와 피해를 아우르는 방법론적인 통합은 곤란하다는 것이 일본 평화학계의 현주소였다.

이렇듯 가해의 직시를 가로막는 피해의식은 피해의식 자체의 풍화와 왜곡을 낳게 된다. 오랫동안 반핵운동에 헌신했던 피폭자는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로 고초를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피해자로서의 의식이 희박하다. 피해자로서의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야말로 가해자로서의 의식도 인식도 희박”하다는 뼈아픈 성찰을 남겼다.¹³

10 江口圭一, 1986, 「書評・大沼保昭『東京裁判から戦後責任の思想へ』」, 『歴史学研究』 1986년 11월호; 吉田裕, 1987, 「一五年戦争史研究と戦争責任問題: 南京事件を中心に」, 『一橋論叢』 97-2, 212쪽에서 재인용.

11 吉田裕, 1987, 위의 논문, 204·214쪽.

12 羽仁五郎, 1971, 『日本軍国主義の復活』, 現代評論社; 요시다 유타카, 하중문 역, 2004, 앞의 책, 163쪽에서 재인용.

13 岩松繁俊, 1982, 『反核と戦争責任』, 三一書房; 요시다 유타카, 하중문 역, 2004, 위의 책, 234쪽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보통의 일본인은 전쟁에서 희생을 강요했던 가해자인 정치 지도자에게도, 원폭과 공습의 주체인 미국에게도 전쟁 피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다. 피해의식의 확인과 공유는 뒤늦리고 굴절될 수밖에 없었으며, 분산적이고 폐쇄적인 피해의식의 연장선에서 전쟁의 전체상을 파악하거나 가해를 직시하는 힘이 배양되기 어려웠다.

2) 역사교과서 서술의 변화

패전 후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으로 입은 피해 양상이 서술되기 시작한 것은 점령 통치가 종결된 1952년부터의 일이다. 그 출발은 다음의 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의 참전으로 인해 만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겪은 피해와 시베리아 억류,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가 그것이다. 전후의 역사교과서에서 세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먼저 소련의 참전에 관해서이다. 전후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이던 소련에 관한 부정적인 서술이 어려웠으나, 1952년도 교과서부터 소련의 참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1952년도에 도쿄서적은 처음으로 소련의 참전에 관해 “소련도 일본에 전쟁을 선언했다”(194쪽)는 사실만 짚막하게 기술했다. 이어진 1957년도에는 자세한 기술이 담기게 된다. 니혼[日本]서적의 경우 “소련은 알타협정에 따라 일소중립조약을 깨고 일본에 선전을 포고했”(하권, 129쪽, 본문)으며, “일소중립조약은 [...] 46년 3월까지의 유효했다”(하권, 129쪽, 주)고 썼다. 오사카[大阪]서적도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하권, 136쪽)와 같이 소련의 참전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했다. 이후 소련 참전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시베리아 억류에 관한 기술은 매우 지체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기

14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小山常実, 2001, 『歴史教科書の歴史』, 草思社の 기술을 참조했다.

다려야 했다. 북방 영토 반환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오사카 서적의 1988년판에 관련 기술이 확인되며,¹⁵ 이후 주로 본문이나 각주에서 1~2줄 정도의 언급이 이루어졌다. 2001년판에도 전체 8종 중 2종에 관련 기술이 없다.

원폭 투하에 관한 기술은 소련 참전과 마찬가지로 1952년도 교과서부터 ‘해금’되었다. 1952년도에 도쿄서적이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194쪽)고 사실 자체만 간단히 거론한 것이 시초였다. 하지만 1974년까지 원폭 투하에 관한 비판적인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가 생긴 것은 1975~1977년도 사이였다. 먼저 니혼서적이 “미국은 전후 소련에 대해 우위에 서기 위해 [...] 원자폭탄을”(316쪽)과 같이 미국의 의도를 명기했고, 오사카서적도 비슷한 기술을 했다. 시미즈[清水]서원은 “미국의 힘으로 일본을 항복시킨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282쪽)라고 투하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후 원폭 투하의 원인을 기술하는 교과서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8~1980년도에는 교이쿠[教育]출판이, 1981~1983년도에는 도쿄서적이, 1984~1986년도에는 주교[中教]출판이 각각 가세했다. 가령 1981~1983년도 도쿄서적의 교과서에는 “전후 예상되는 소련과의 대립에서 우위에 서는 것 등을 생각하여”(297쪽)라는 설명이 기술되었다.

소련의 참전과 원폭 투하에 비해 도쿄 대공습에 관한 서술의 등장은 훨씬 뒤에 성사되었다. 이는 1970년대에 들어와 각지에서 공습 피해 체험을 말하고 기록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과 연관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1971년 사오토메 가쓰모토가 펴낸 르포 『도쿄 대공습』이 효시로 평가된다. 이런 기록을 반영하듯 1975~1977년도의 교과서 기술에서 처음으로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교이쿠출판은 8만5천 명이 사망했다고 했고, 시미즈서원은 9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1978~1980년도에는 도쿄서적과 갓코[學校]도서가 가세했으며, 그 이후 4~5종의 교과서가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1990~1992년도 이후에는 모든 교

15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eimei_05-.htm(2017년 8월 25일 조사).

과서가 서술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1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서술 방식이 일반적이다.

2. 교과서우익의 등장

1) 새역모의 출범

1996년 6월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제히 일본군·위안부¹⁶에 관한 기술을 실었다(고교는 1993년부터). 일본군·위안부¹⁶의 국제적 쟁점화로 점화된 동아시아의 ‘역사전쟁’은 이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장까지로 번졌고, 보수파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¹⁶ 세 부류의 집단이 새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정계는 ‘위안부’를 위시한 역사문제의 대두로 몸살을 앓았다. ‘고노 담화’가 발표된 것이 1993년 8월 4일. 그 닷새 뒤에는 ‘55년 체제’가 붕괴되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내각이 출범했고, 새 수상은 ‘침략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견해를 당당히 천명했다. 동 23일 자민당의 야스쿠니신사 관계 3단체는 “도쿄재판으로 오염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한다며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¹⁷ 약 20회의 회합을 가진 뒤 1995년 8월 15일 펴낸 『대동아전쟁의 총괄』에는 새로운 ‘교과서 싸움’이 역설되어 있었다. 초선 의원 아베 신조는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6 1990년대에 가해의식의 자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1942년 야마구치[山口] 현의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수몰된 희생자의 추도 방식이 그러하다[<http://xd505063.html.xdomain.jp/histry/chousei4.htm>(2018년 2월 24일 조사)], 사망자 183명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으나, 1982년 세워진 추도비에는 그런 사실조차 새겨지지 않았다. 1991년 가해의식을 자각하는 관련 단체가 결성되고 한국 측 유족들과 교류를 나눈 끝에 2013년 새롭게 “이런 비극을 낳은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 타민족을 짓밟는 포악한 권력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추도비가 건립되었다.

17 藤原彰·森田俊男, 1996, 『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19~20쪽.

1994년 사회당·자민당의 연립정권 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수상은 공약으로 ‘부전결의’의 채택을 언명했고, 자민당 보수파의 불안은 다시금 높아졌다. 동년 12월 ‘망언 제조기’라 불렸던 오키노 세이스케[奥野誠亮]를 회장으로 ‘중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이 결성되었다(아베는 사무국장 대리). 역사·검토위원회의 후신 격이었으며, 부전결의의 의미를 퇴색(참의원은 부결)시킨 다음 1996년 6월에는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 무렵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정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분야를 전담하는 교과서우익이 처음으로 태동했다. 당시 도쿄대학 교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의 ‘자유주의사관연구회’는 1996년 1월 『산케이[産経]신문』에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연재했고, 12월이 되어 후지오카 그룹은 새역모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기인은 후지오카,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등 9명으로 정해졌고, 1997년 1월 니시오를 회장으로 새역모는 정식으로 출범했다(후지오카는 부회장).¹⁸

1996년 12월의 새역모의 발기 성명에는 교과서우익의 인식과 전망이 집약되어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 근현대사 전체를 범죄의 역사로 단죄하며 기술”하는 ‘자학사관’이 팽배하며, “증거도 불충분한 ‘중군위안부’의 강제연행설을 일제히 채용한 것도 이런 자기악역사관이 다다른 하나의 귀결”이라고 성토했다. 자신들의 임무는 “다음 세대에 자신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양식 있는 역사교과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새역모 등장에 발맞추듯 보수운동을 총괄하는 민간 사령탑이 닳을 올렸다. 1997년 5월 30일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된 ‘일본회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신토[神道]와 불교 쪽의 보수적인 종파를 주축으

18 앞서 언급한 역사·검토위원회의 발제자로 니시오,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등 새역모의 주축 멤버가 참가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로 1974년 결성되었으며, 후자는 1981년부터 재계와 학계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헌을 외쳤다. 일본회회의의 힘은 수백 명의 정치가가 가입한 자매 조직을 거느린 데서 확연하다. 발족하기 전날에 조직된 ‘일본회회의국회의원간담회’에는 2015년 9월 현재 281명(자민당 256명)의 국회의원이 속해 있다.¹⁹

한편 정치권에서는 1997년 2월 5선 이하의 국회의원 87명이 모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새롭게 꾸려졌다. 오쿠노 세이스케로부터 “역사왜곡의 ‘영재교육’을 받고 리더 격이 된”²⁰ 아베 신조는 사무국장직으로 발탁되었다(2004년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으로 개명). 모임은 문부성, 교과서 회사, 연구자 등을 불러 연구회를 열었는데, 특히 고노 담화의 주인공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²¹ 2014년 외신을 달구었던 고노 담화 재검증의 불씨는 정계 입문 초기부터 배양되었던 셈이다.

이렇듯 1997년은 역사전쟁에 임하는 일본 보수파의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춘 해로 기록되며, 새역모는 자학사관으로 물든 교과서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들의 활동에는 보수 언론이 날개를 달아주었다. 먼저 『산케이신문』은 신생 교과서우익 그룹을 선전하고 떠받치는 사실상의 기관지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일찍부터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교과서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기획하여 교과서 문제에 ‘불을 부치’는 적

19 2016년 일본회회의를 파헤친 단행본으로서 『日本會議の研究』(菅野完), 『日本會議の正体』(青木理), 『日本會議とは何か-「憲法改正」に突き進むカルト集団』(上杉聡), 『日本會議の全貌-知られざる巨大組織の実態』(依義文), 『日本會議-戦前回帰への情念』(山崎雅弘) 등 5권이 3개월 사이에 쏟아져 나와 새삼 그 무게감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 「戦後70年」, 『赤旗』, 2015. 1. 17.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사무국장 다와라 요시후미[依義文]의 발언이다.

21 http://chushingura.biz/p_nihonsi/episodo/epi_ndx_box/tukurukai02.htm(2016년 10월 3일 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편, 1997, 『歴史教科書への疑問: 若手国会議員による歴史教科書問題の総括』을 참조할 수 있다.

극성을 보였다고 할 정도이다.²² 그리고 새역모가 편찬하는 역사교과서는 계열사인 후소사에서 발간하도록 지원했다. 새역모의 관계자는 물론 우파 논객들은 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공격하고 역사수정주의를 발신해 나갔으며,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이 ‘넷우익’이 대열에 합류했다.²³

2) 반미라는 새로운 전략

자학사관이라는 프레임은 교과서우익의 봉화를 든 새역모의 신무기였으며, 기존 교과서와 진보 진영의 공격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에 더해 새역모는 또 다른 전략을 준비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둘러싼 피해의식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거기에 ‘반미’를 결합시키려 했다.

그 실례로서 원폭 투하를 살펴보자. 미국을 공습과 원폭으로 인한 피해와 그 비인도성을 부각시키며 반미적인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인데, 그 모델은 첫 교과서 출간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니시오 간지가 정립하였다.

1944년 9월부터 일본의 본토 상공은 거의 제공권을 상실했다. 미군의 공습은 발버둥치는 무방비의 일본 시민의 집단 살육 행위와도 같았다. 소이탄에 의해 전국의 주택 밀집 지역에 가한 효과적인 용단 폭격은 단순한 ‘전쟁범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틀을 벗어나 ‘인도에 대한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1997년 말 유네스코의 제20회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미국과 중국의 반대를 누르고 히로시마 원폭 돔을 세계유산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은 대개는 신사 불각 등의 문화유산이 대상이지만, 인류의 수치가 되는 ‘부의 유산’은 3개밖에 없다. 히로시마의 원폭 돔 외에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유적과 노예무역의 거점이었던 세네갈 고레 섬이다. [...] 일본에 군국주의가 있었듯이 미국에도 군국주의

22 依義文, 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学習の友社, 42쪽.

23 넷우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문을 집필 중이어서 관련 기술을 생략했다.

가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는 일본 이상의. 일본인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을 마음 깊숙이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국주의는 피차일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을 일본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²⁴

미군의 공습은 ‘집단 살육 행위’이며 ‘전쟁범죄’를 넘어서는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된다. 히로시마의 원폭까지 곁들이면서 니시오는 미국이 일본과 피차일반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전후 일본에서 친미와 반미를 가르는 가장 간단명료한 잣대는 미일안보조약의 찬반 여부였다. 반미는 안보조약 폐기를 외치는 공산당·사회당과 시민 세력의 전유물이었고, 안보조약을 부정하는 보수 우파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 위의 인용문은 새역모의 반미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아니 ‘대동아전쟁’의 복권과 미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도구로 기획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승자가 패자를 판결했다며 도쿄재판사관을 비난하는 논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일안보조약과 현재의 미일 관계는 논외의 사안으로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군국주의에 희생된 피해자로서의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의 숨은 견인차였다. 그런 피해의식의 전개 속에서 내셔널리즘의 맹아를 찾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질적인 벡터는 어디까지나 평화주의로 쏠렸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새역모의 강점은 그런 피해의식의 작동 방향을 뒤집는 전복을 시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절제된 반미를 통해 피해의식 내셔널리즘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한편 일본의 진보 세력에게 교과서우의 새역모의 등장은 그다지 신선하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가령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씨는 1997년 초, 자유주의 사관과 같은 내셔널리즘을 방어하는 두 가지 기제가 일본 사회 내부에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이 대미 수출을 능가하는 상황 하

24 西尾幹二, 1999, 『国民の歴史』, 扶桑社, 584~585쪽.

에서 “일본 정부로서도 당연히 대아시아 관계의 안정화에 종래 이상으로 부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후지오카도 “지금까지의 근현대사 가운데에서 미국과 손을 잡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으므로 미일안보조약의 규정성이 내셔널리즘을 제어할 것으로 예측했다.²⁵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다.

III. 새역모와 역사교과서 파동

1. 2001년판의 전쟁 피해 기술과 그 저의

1) 피해 기술의 검토

2001년 새역모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해 137곳의 오류를 고친 이 교과서에는 피해의식의 전면화라 불려야 할 정도로 전쟁 피해의 기술이 가득했다. 오키나와 전투, 도쿄 대공습, 원폭 투하, 시베리아 억류, 도쿄재판에 관한 기술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01년판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피해 기술

<p>오키나와 전투</p>	<p>1945년 4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미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전함 야마토[大和]를 투입하여 최후의 해상특공대를 출격시켰으나, 맹공을 받고 야마토는 오키나와에 도달하지 못하고 격침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철혈군황대 소년과 히메유리 부대의 소녀들까지 용감히 싸웠으며, 일반 주민 약 9만4천 명이 생명을 잃었고 10만 명 가까운 병사가 전사했다.(본문-암전되는 전황, 279쪽)</p>
<p>도쿄 대공습</p>	<p>한편 1944년 가을부터 미군의 일본 공습이 개시되었다. 1945년 3월에는 미군은 B29 폭격기의 편대로 도쿄의 고토[江東] 지구를 공습했고,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도쿄 대공습). 미군은 나아가 인구가 많은 순으로 전국의 도시를 불태웠다. 어린이들은 위험을 피해 부모 곁을 떠나 지방의 절 등에 소개했다.(본문-전쟁의 참화, 285쪽)</p>

25 吉田裕, 1997, 「閉塞するナショナリズム」, 『世界』 1997년 4월호, 75~76쪽.

	<p>도쿄 대공습에서는 동서 4km 남북 6km에 소이탄을 떨어뜨려, 불의 장벽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막고 용단폭격을 했다. 이 대공습 체험담의 일부를 소개한다.</p> <p>……빙글빙글 회오리가 일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도 버렸습니니다. 고토바시[江東橋]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다, 몸에 열기가 밀려온다. 불덩어리가 되어 구르는 사람, 울려 절규하다가 불길에 휩싸여 강에 뛰어드는 사람, 도망을 가도 도망을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p> <p>“엄마, 죽을 것 같아. 불이 불고 말거야. 강에 뛰어들자. 괜찮지, 손을 잡아. 놓치지 마”라는 나. 엄마는 무인,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타죽고 만다. 죽을 순 없어, 살아야 해. 자 강으로 뛰어. 엄마와 뗏목 위로 뛰어 내렸다. 뒤이어서 불길에 쫓긴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몸 위로 계속해서 뛰어내렸습니다.</p> <p>그것이 나와 엄마의 영원한 이별이 되어 두 번 다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자료해설 - 도쿄 대공습, 285쪽)</p>
원폭 투하	<p>그러자 8월 6일 미국은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원폭)을 히로시마에 투하했다. 8일 소련은 중립조약을 깨고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만주를 침공했고, 9일 미국은 나가사키에도 원폭을 투하했다.(본문 - 성단 내려지다, 287쪽)</p> <p>19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세계유산에 인류의 '부의 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그 외에 나치스의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폴란드)의 시설과 아프리카의 노예의 집(세네갈) 등이 있다.[사진해설 - 원폭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산업장려관(원폭 돐), 289쪽]</p>
시베리아 역류	<p>한편 많은 일본 병사나 민간인도 희생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은 만주에 침입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 살해와 약탈, 폭행을 거듭한 데다, 포로를 포함한 약 60만의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연행하여 가혹한 노동에 종사시켜 약 1할을 사망하게 했다. 또 미군에 의한 일본의 무차별 폭격이나 원폭 투하에서도 막대한 수의 희생자가 나왔다.(칼럼 - 전쟁과 현대를 생각한다, 288쪽)</p>
도쿄 재판	<p>점령군은 일본의 육해군을 해체했고, 1946년 5월부터 3년 반에 걸쳐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개정하여 전쟁 중의 지도적인 군인과 정치가를 '평화에 대한 죄' 등을 범한 전쟁 범죄자(전범)로서 재판에 회부했다(약칭으로 도쿄재판). 그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p> <p>이 재판은 일본이 9개국조약과 부전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지만, 이들 조약에는 위반한 국가의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p> <p>또 '평화에 대한 죄'는 자위전쟁이 아닌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만, 이런 죄로 국가의 지도자를 벌하는 것도 그때까지의 국제법 역사에서는 없었다. 게다가 재판관은 모두 연합국 측에서 선출되었고, 사실 심리에서도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의 대부분 그대로 채용된 데 비해 변호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쿄재판에서 오직 한 사람의 국제법 전문가였던 인도의 라다·비노드·팔 판사는 이 재판은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GHQ는 이 팔 판사의 의견서 공표를 금했고, 기타 재판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다.</p> <p>오늘날 이 재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는데, 역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긍정하는 의견이 있다.</p>

이 도쿄재판에서는 일본군이 1937년 중일전쟁에서 난징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난징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의 실태에 관해서는 자료상으로 의문점이 제기되어 여러 견해가 있으며,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문-73절 극동국제군사재판, 294~295쪽)

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 이하 7명이 사형, 16명이 종신금고형이었다. (사진해설-극동국제군사재판, 294쪽)

사진해설-통상의 전쟁 범죄를 재판한 BC급 재판소 고쿠라(小倉,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 295쪽)

단 한 번의 등장에 그쳤지만 도쿄 대공습 관련 기술은 양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강렬했다. 『도쿄대공습·전쟁지(戰災誌)』에서 인용한 체험기는 공습 피해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도쿄재판은 본문에서 장문으로 부당성을 일일이 거론하고 사진까지 2매 첨부했다. 오키나와 전투는 전함 아마토의 침몰을 특기하고 철혈근항대와 히메유리부대를 언급하며 피해자 규모를 적시했다. 원폭은 본문에서 사실 관계를 간략히 언급했다가 앞의 니시오 글을 전재하듯 원폭 돔의 세계유산 등재의 경과를 상술했다. 우익 공통의 역사관에 따르면 소련의 참전은 ‘중립조약의 무시’를, 원폭은 ‘미국의 대소련 우위 표시’를 기술해야 하는데도 전자만 담겨 있다.²⁶ 시베리아 억류는 칼럼 「전쟁과 현대를 생각한다」를 빌려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맥락에서 풀어냈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도록 유도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칼럼 「페리가 전한 백기」(176쪽), 「오렌지 계획」(257~258쪽), 칼럼 「시로후네[白船] 사건」(258~259쪽) 등을 연결시키면 미국=가해국이 연상되는 사실상의 반미 교과서의 데뷔였다.

공습과 원폭을 예로 들어 기존 7종의 교과서와 간단히 비교해보자. 다른 교과서들도 피해 상황을 기술함으로써 피해자라는 관점을 전면에 드러냈다. 하지만 기술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실 중심이며, 니혼서적의 경우는 일본군의 충칭[重慶] 폭격까지 언급하기도 했다(186쪽). 요컨대 7종의 교과서는 피해의식을 매개로 한 반전·평화를 제시했다고 봐도 대차는 없을 듯하다.

26 小山常実, 2001, 앞의 책, 57쪽. 『최신 일본사』는 둘 다 누락되어 있다.

2) 피해의식 내셔널리즘의 정립

새역모의 회장이자 대표 집필자였던 니시오 간지는 2001년판 역사교과서의 집필 과정에서 반미 색채를 강하게 밀고나갔다. 집필진 중 유일한 일본사 관련 전공자인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가 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원고를 향해 ‘반미색이 옅다’며 질타한 뒤에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로부터 하여금 ‘반미 일색’으로 새롭게 쓰도록 했다고 얘기될 정도이다.²⁷ 그런 소동 속에서 세상에 내보낸 첫 작품에서 새역모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피해의식을 포착해냈다. 그것은 새로운 피해의식 내셔널리즘의 창출과 전략화의 시작이었다.

먼저 새역모와 후소샤 교과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와 상당 부분 차별화되는 피해의식의 구축에 성공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보 내지 전후역사학이 가해의식과 유리된 피해의식의 거론이라는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면, 보수는 피해 사실 자체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후소샤 교과서의 선배격인 『최신 일본사』 2002년판은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를 단 한 문장으로 사실 관계만 다루었다.²⁸ 그런 진보와 보수의 ‘틈새’에서 미국이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에 희생된 피해자로서의 국민=일본인이라는 주체화가 가능했고, 전후 재편된 내셔널리즘과 반전·평화는 큰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니시오의 글이 전형적이듯이 피해의식을 보강·증폭시켜 주는 미국의 가해를 끌어안음으로써 보수 진영을 뛰어넘어 ‘일본인 전체’를 향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된다. 반미를 개재시켜 재해석한 피해의식 내셔널리즘은 그만큼 획기적이었고 파괴력 또한 충분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일본인들은 그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27 <https://ameblo.jp/kororin5556/entry-12089182941.html>(2017년 8월 25일 조사).

28 도쿄 대공습은 “일본의 60여 도시는 B29에 의한 소이탄 집중공격을 받았고, 1945년 3월 10일 야간의 도쿄 무차별 대공습을 비롯해서 피해는 전국에 미쳤다”(252쪽)고 썼고, 원폭 투하는 “8월 6일 미군은 히로시마에 세계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투하하여 두 도시를 괴멸 상태에 몰아넣었다”(252쪽)고 기술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덧칠된다. “이런 곤란 속에도 많은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잘 싸웠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행동이었다”(284쪽)라는 기술이 그러하다. 그 의도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 하나는 ‘아시아해방전쟁’ 내지 ‘자위전쟁’과 같은 보수 진영의 기존 역사관과 보조를 맞춰 침략전쟁의 의미를 탈색하고 불식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호한 피해의식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배양되어온 전후 일본 사회의 반전 무드를 차단하고 축소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새역모의 작업은 ‘부유’하던 보수의 전쟁관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부유는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침략전쟁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시아해방과 대동아공영을 지향한 정의로운 전쟁이라 강변할 것인가를 놓고 취해지던 어정쩡한 태도를 가리킨다. 『대동아전쟁의 총괄』에서 “일본은 그 결과(미일 간의 알력, 인용자) 남방으로 나아가 분명히 남방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배한 결과 동남아시아는 하나같이 독립했다”²⁹라고 ‘지배’를 부인하지 못했지만, 니시오는 “일본 국내에 있던 침략전쟁을 옳다고 하는 주의 주장은 박멸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로 좋다. 그렇다면 미영 양국도 오랜 동안 침략전쟁을 옳다고 하는 주의 주장으로 살아온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박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⁰며 침략전쟁의 인식 자체와 선을 긋는다. 보수=친미라는 해묵은 구도에 새롭게 반미의 활용 여부를 장착하는 일, 새역모는 이 작업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베이스캠프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새역모의 출현을 전후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보수=친미를 넘어 반미도 불사하는 역사 서술과 언행을 거듭해 나갔다. 앞서 소개한 내셔널리즘의 방어 기제

29 歴史・検討委員会 편, 1995, 『大東亜戦争の総括』, 展轉社, 48쪽.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繁]의 발언 중 일부이다.

30 西尾幹二, 1999, 앞의 책, 658쪽.

는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나 다름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피해의식 내서널리즘에 반미를 접목시킨 새역모의 카드는 분명 새로움과 흡인력을 겸비할 수 있었다. 경제 대국이 손에 잡힐 듯하던 1964년의 일본에서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대동아전쟁 긍정론』이 역사수정주의의 불씨를 지폈다면, 버블 붕괴로 ‘액상화’된 채 21세기를 맞이한 일본열도에는 교과서우익의 대두라는 역사의 퇴행이 일어났던 것이다.³¹

2. 교과서우익의 1차 분열

2001년 4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자학사관의 시정과 더불어 피해의식에 반미를 연계시킨 전쟁관의 정립을 강점으로 앞세웠다. 하지만 8월에 집계된 채택률은 10%의 목표는커녕 0.039%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엄연한 완패였다. 첫 싸움의 좌절은 새역모 내부 구성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채택전이 끝나자마자 터진 이른바 ‘9·11사건’으로 인해 새역모는 심각한 내용에 휩싸였다.

9·11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일본의 보수 진영 전체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원래 정통 우익의 공통분모는 서구(혹은 서구 문화) 특히 미국에 대한 강렬한 적대 의식이다. 일본의 패전과 좌절은 물론 현행 평화헌법을 ‘강제’한 것도 미국이었다. 우익과 보수를 나누는 잣대 중 하나는 반미의 수용 여부에 있는 만큼, 우익이라면 미국에게 일격을 가한 이슬람의 테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

31 니시오는 하야시와 기묘한 접점을 갖는다. 『대동아전쟁 긍정론』에서 하야시는 니시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니시오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등을 향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악’을 긍정하는 용기”라며 반감을 드러낸 것을 호평하면서, “패전 20년을 거쳐 ‘아들 세대’가 각각 올바르게 공부하고 확실히 성장하여 자주독립의 사상을 자신을 갖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아들들은 결코 일본 민족의 역사와 부조(父祖)의 이상과 고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다(林房雄, 2001, 『大東亞戰爭肯定論』, 夏目書房, 447~449쪽). 하야시의 예언은 니시오에게는 적중했던 것이다.

땅하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인 친미 정책을 폈고, 개헌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같은 우경화의 추진은 미국의 엄호와 비호 없이 불가능했다. 결국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익은 9·11을 언급하지 않으며 논란을 피해갔다.³²

새역모 또한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시달렸다. 첫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인데다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고바야시 요시노리, 새역모의 이사로 가담한 뒤 공민교과서를 집필했던 평론가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등이 테러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고바야시는 9·11 직후 『SAPIO』 2001년 10월 10일호에 실린 「신오만주의 선언」에서 테러를 긍정하는 태도를 표명했다. 2002년 2월 13일호의 「신오만주의 선언」에서는 9·11에 대해 “나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테러를 일으키는 심정의 일단은 이해가 된다. 이세[伊勢] 신궁에 미군이 주둔하고, 반라의 여군이 걷는 도중에 껌을 빨는다면 테러도 하고 싶어진다. 미국이 사우디에서 한 것은 강압적이고 오만한 문화 파괴이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니시베는 2002년 『정론』 2월호에서 알카에다의 자폭 테러를 지지했다.

니시오 간지는 『정론』 3월호에 게재된 논고 「보수파의 반미주의에 이의 있다」에서 테러는 ‘비열’하며 이슬람 과격파는 근대 국가를 만들지 못한 ‘낙오자’라고 날을 세웠다. 첫 교과서의 감수자로 참가했던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도 같은 지면에 ‘그래도 반미에는 국익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2002년 2월 7일 새역모의 심포지엄 『『전쟁론』 2를 읽는다』 석상에서는 9·11의 평가를 놓고 참가자 간에 격론과 고성이가 오고갔다. 기조 강연을 맡은 고바야시가 아프간 전쟁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간다고 미국을 비판하자, 니시오 간지 등은 “사상과 정치는 별도. 사상은 반미라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는 반미를

32 가령 일수회(一水會)는 초기부터 테러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으며, ‘국가사회주의일본노동자당’은 “그 순간 유태인 금권 왕조의 상징은 인류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논평을 지금도 신고 있다 [http://nsjap.com/jp/(2016년 10월 19일 조사)].

선택할 수 없다”면서 고바야시를 비판했고, 청중석에서도 고바야시를 비난하는 야유가 날아들었다.³³

고바야시는 니시오 등을 ‘충미(忠美)·충견(忠犬) 보수’라 부르며 반박에 나섰다. 2002년 3월 13일호 「신오만주의 선언」에서는 “미국의 실체는 총과 차별, 약육강식의 폭력적 국가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역사나 국가상을 이해하게 될 때, 미국은 경계해야 될 국가가 되는 것이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포지엄 후에 고바야시는 니시베와 함께 새역모를 탈퇴했고, 두 사람은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이라며 반미적 언행을 멈추지 않았다.

1차 분열극 이후 새역모는 고이즈미 수상이 매진하던 이라크 전쟁 대응책, 예를 들면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의 방침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다. 그렇게 교과서우익은 반미 그룹을 축출하고 친미의 기치를 내걸음으로써 자민당의 보수 우파와의 제휴를 지속하게 된다.

이상의 경과를 쫓아가면서 과연 새역모에게 반미의 실체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니시오는 반미를 ‘사상’과 ‘정치’의 영역으로 분리한다고 했으나, 그 내실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9·11 이전인 2001년 5월 25일 TV 토론에 출연한 니시오는 미국이 가져다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핵무장을 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³⁴ 스스로는 보수의 금도인 미일안보조약 폐기를 공언하면서 현실 정치에서의 반미는 불가하다는 니시오에게 사상으로서의 반미는 존재 여부도 의미도 모호해 보인다.

33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iryu20060314.htm>(2016년 10월 4일 조사).

34 와다 하루키, 2001, 6. 17, “전쟁 지기 전엔 행복?”, 『한겨레신문』.

3. 2005년 개정판과 후폭풍

1) 피해 기술의 축소와 반미의 퇴조

초전의 좌절을 딛고 ‘복수’를 외쳤던 새역모는 2005년 다시금 역사교과서를 내놓았다. 피해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전쟁 피해를 그린 서술은 양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2001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도쿄 대공습 체험기는 사라지고 사진으로 대체되었으며, 오키나와 전투와 원폭 투하의 본문 분량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담는 정도로 그쳤다. 시베리아 억류는 공습·원폭 투하와 같이 「20세기의 전쟁과 전체주의의 희생자」라는 칼럼 속에 배치되었다. 도쿄재판의 기술은 본문의 독립절이 아니라 「도쿄재판에 대해 생각한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바뀌었으며, 난징 대학살에 관한 언급은 물론 사진 매수까지 줄었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제1차 분열로 인해 초판본의 반미적 성향은 2005년 판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칼럼 「페리가 전한 백기」와 「오렌지 계획」, 칼럼 「시로후네 사건」은 사라졌고, 진주만 기습 직전의 미일 교섭에 관해서도 “미국은 일본 측의 비밀 전보를 도청·해독하고 [...] 일본과의 교섭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했다”(275쪽)는 구절이 삭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해자로서 미국 대신 소련을 띄우려는 의도가 읽힌다. 시베리아 억류 관련 기술에서 ‘전체주의’라는 단어와 “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을 깨고”(214쪽) 등이 가필되고 사진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2005년 개정판에는 반미 색채를 덜어내는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는 자신이 감수자 겸 집필자로 가세하여 교과서가 좋아졌다고 자평했다.³⁵ “러일전쟁 이래 미국은 일관되게 동아시아의 경쟁자·일본의 파멸을 꾀했다는 사상이 배후에 흐르”는 반미적인 서술은 전부 삭제

35 오카자키가 집필진에 들어간 경위는 『中央公論』 2006년 6월호 (「教科書問題に火をつけた日本国内の人々を非難する」)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했다는 것이다.³⁶ 타이 대사를 지낸 정통 보수파가 직접 나서서 역사교과서에 가위질을 했다는 사실은 초판본의 반미가 던진 충격파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오카자키가 고친 반미적인 내용은 주로 니시오의 집필분이었고, 개정을 꺼려하던 니시오 대신 오카자키를 끌어들이는 것은 후지오카였다.³⁷ 개정판에 대해 니시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고, 급기야 2006년 새역모의 2차 분열(후술)에 즈음하여 명예회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새역모를 탈퇴했다. 탈퇴의 첫 번째 이유로서 “구판 『새 역사교과서』의 중요 부분이 개정판에서는 나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오카자키 히사히코 씨(개정판·감수자)의 손으로 대폭 고쳐져 친미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지만,³⁸ 방점은 친미로의 선회라는 ‘사상’이 아니라 ‘아무런 연락 없이’에서 표출되는 주도권 다툼 쪽에 찍혀 있었다.

2) 교과서우익의 2차 분열

2005년에 펴낸 새역모의 교과서는 목표로 내건 10%는커녕 1%에도 못 미치는 0.39%의 저조한 채택률에 머물렀다. 연이은 참패는 새역모 내의 불협화음을 재차 현재화시켰다.³⁹

구도를 간략화하면 후지오카 일파와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일파의 대결이었다. 법학자 야기는 전술한 일본회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2006년 초반

36 “遊就館から未熟な反米史観を廃せ”, 『産経新聞』, 2006. 8. 26. 참고로 오카자키에게 친미는 최우선 가치였다. 이 무렵에는 뉴딜정책으로 불황을 타개하지 못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가서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는 유슈간[遊就館]의 전시 내용이 미일 간의 현안으로 대두했다. 오카자키는 ‘반미사관’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유슈간은 2007년부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공개했다.

37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http://tadasukai.blog58.fc2.com/blog-date-20060606.html>(2017년 8월 30일 조사)을 참조했다.

38 西尾幹二, 2006, 「私が〈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を去った理由」, 『SAPIO』.

39 자세한 경과는 俵義文, 2008, 『〈つくる会〉の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の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까지 벌어진 난투극은 야기 일파가 새역모를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새 회장으로 후지오카가 취임했다. 그리고 10월 야기를 이사장으로 옹립한 일본교육재생기구(이하 재생기구)가 출범했다. 즉 2차 분열의 내막은 일본회의와 선이 닿은 후발 교과서우익 야기가 창립 멤버인 후지오카 그룹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독자적인 조직을 꾸린 것이었다. 새역모의 역대 회장 중 니시오를 제외한 4명이 재생기구로 옮겨간 데서 자명하듯이 교과서우익의 본류를 뒤엎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2차 분열을 일본회의를 포함한 보수 정치권의 셈법과 연계시켜 재구성하면 ‘관변 학자’로서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후지오카 대신 야기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볼이 합리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먼저 1차 아베 내각 출범에 맞춰 추진된 교육기본법 개정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떠맡을 새 민간 연대체가 필요해졌다. 그와 연동하여 『산케이신문』은 새역모를 버리고 재생기구를 선택했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8월과 9월 일본의 일간지는 출범이 예고된 아베 내각의 ‘5인방’을 기사화했다. 재생기구를 창설하는 야기 히데쓰구와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가 들어 있었다.⁴⁰ 12월 아베 정권은 애국심 교육을 노골화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감행했고, 2007년 7월 재생기구는 자매단체로서 ‘개정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교과서 개선을 추진하는 유식자 모임’(이하 개선모임)을 신설했다. 역시 새역모에서 나온 야야마 다로[屋山太郎]가 대표, 야기는 사무국장을 맡았다(오카자키도 개선모임의 고문으로 옮겨가서 2011·2015년판 역사교과서의 집필자가 됨). 재생기구의 별도대로서 교과서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40 나머지 세 사람은 일본회의 상임이사 이토 데쓰오[伊藤哲夫], 일본인 납치문제를 추궁하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와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등이며, 이토가 좌장 격이었다고 한다. 또한 『문예춘추』 2013년 2월호는 나카니시와 야기 등이 총선거 압승으로 2012년 12월 출범한 2기 아베 정권의 ‘공정표’를 작성했다고 전한다 [http://gekkan.bunshun.jp/articles/-/530(2016년 11월 10일 조사)].

한편 후소샤는 2007년 5월 새역모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잇단 분열이 이유로 거론되었으나, 저조한 채택률로 인한 손실에다 정치적 고려가 결정적이었다. 교과서 관련 사업은 자회사인 이쿠호샤로 이관하고 개선모임을 새 집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다. 후지오카의 전언이 내막을 알려준다. 이쿠호샤의 변신은 후소샤의 이탈로 곤란해진 야야마가 아베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후지산케이 그룹 회장이 3억 엔을 출자하게 하여 성사되었다.⁴¹ 『산케이신문』은 아베 수상의 의향에 따라 재생기구와 개선모임 쪽으로 말을 갈아탔던 것이다. 반면에 새역모는 교과서 발행을 이어가기 위해 동 9월 지유샤와 손을 잡았다.⁴²

IV. 양대 교과서우익의 피해의식 활용

1. 2011년판 교과서의 검토

1) 지유샤

새역모는 새 파트너인 지유샤와 협력하여 2009년, 2011년, 2015년 등 세 차례 역사교과서를 간행했다. 피해에 관한 기술은 면모를 일신했다.

2009년판의 피해 기술은 초판본을 훨씬 능가한다. 양이 대폭 늘어난 데다 새로 창안된 항목도 상당하다. 도쿄 대공습은 체험기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2매로 늘리고 해설 또한 장문으로 바꿨다. 날개 주 형식으로 ‘국민들 간에 어떤 고난과 희생이 생겼는가’를 신설하여 학동 소개, 미국의 오키나와 공격

41 <https://ssl.nishiokanji.jp/blog/?p=622>(2016년 10월 5일 조사). 월간지 『자유』 2008년 2월에 실린 좌담회에서 나왔으며, 후지오카는 야야마에게 들었다고 한다.

42 양 단체의 신경전은 난징 사건의 기술을 놓고 일찍부터 표면화되었다. 2007년 9월 개선모임 측이 검정을 염두에 두고 학설상의 대립과 실태 파악의 미비 정도를 지적하겠다고 한 데 비해 새역모는 학살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비난을 가했다(表義文, 2008, 앞의 책, 45~47쪽).

과 도시 공습에 따른 민간인의 대량 희생을 열거했다(209쪽). 원폭 투하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피폭 후유증을 거론했으며, 이어진 칼럼에서는 과거와 같이 ‘희생되었다’는 간접 표현이 아니라 주어로 미국을 등장시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고 명기한 것이 눈에 띈다(211쪽). 도쿄재판의 경우는 ‘BC급 전범’에 관한 기술이 본문은 물론 장문의 설명과 함께 사진 자료에 담겼으며, 본문의 경우 “이 중에는 본인이 아니거나 전혀 무관한데도 처형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는 서술로 맺고 있다(212, 214쪽).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앞세운 비판도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반미의 색채가 되살아난 것이다.

2011년도에는 피해를 설명한 분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반미의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오키나와 전투의 경우는 제목과 내용을 대폭 바꾼 칼럼 「오키나와 전투의 비극」에 상술되었다(238~239쪽). “미군이 상륙하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주민 가족 전체가 집단자결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와 같이 ‘집단사’가 최초로 언급되며(만주와 사할린에서도 집단사가 일어났음을 첨가), “동굴에 숨어든 사람들은 화염방사기로 가차 없이 공격했습니다”는 묘사는 관련 사진과 해설까지 곁들이면서 피해를 넘어 적개심까지 고취하려는 듯 보인다. 도쿄 대공습에 관한 표현은 “많은 민간인이 표적이 되”었다거나 “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와 같이 과격함이 더해졌다(239쪽). 원폭 투하 관련 기술 또한 전면 개편되었다. 「전시국제법과 전쟁범죄」 칼럼 속의 항목은 ‘20세기 최대의 전쟁범죄’로 설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B29 조종사는 사령관에게 ‘이것은 전시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는 기술은 물론 “원폭 투하는 피해 규모에서도 20세기 최대의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는 결론을 직접 내리고 있다(239쪽). 1955년 사법부에서 원폭을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한 뒤 처음으로 교과서에까지 언급되기에 이른 것이다.

도쿄재판에 관해서는 본문에다 칼럼 형식을 더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노골화했다(247쪽). ‘승자의 재판’임을 보강하기 위해 “① 이긴 쪽이 진 쪽을 재판했다, ② 재판관도 검찰관도 대다수가 이긴 쪽이었다, ③ 이긴 쪽의 전쟁 범죄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등의 서술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

은 나쁜 국가로서 연합국이 정의라고 하는 선전과, 도쿄재판의 판결은 일본인에게 자신들이 배운 역사에 대한 신뢰를 앗아가는 효과를 낳았습니다”를 강조하고자 밀란 쿤데라의 글까지 인용했다. 칼럼의 말미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하다. “이것은(쿤데라의 글, 인용자) 공산주의의 독재 지배를 비판하기 위해 쓰인 말입니다만, 미국의 점령 지배나 전체주의 국가의 행동에도 들어맞습니다”에서는 전체주의에 비교하면서까지 미국의 점령 지배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 이쿠호사

재생기구는 자매단체인 개선모임을 통해 역사와 공민을 2011년과 2015년에 발간했다. 지류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분량은 물론 항목도 많고 다양하며, 피해를 매개로 주창되는 반미의 기류 또한 거침없고 강력하다. 2011년판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1년판 이쿠호사 역사교과서의 피해 기술

<p>오키나와 전투</p>	<p>4월이 되자 미군은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했고,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현민과 함께 필사의 방어전을 전개했고, 미군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 젊은 병사들의 항공기에 의한 육탄 공격(특공)과 전함 야마토에 의한 수상 특공이 이루어져,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키나와의 중학생과 여학생 중에는 이 전투에 중군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맹공으로 도망칠 곳이 없어 집단자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본문 - 공습의 피해와 오키나와 전투, 219쪽)</p> <p>오키나와에 상륙하는 미군. 일본 측은 도쿄 대공습을 능가하는 18만~19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그 반수 이상은 일반 시민이었다.(사진해설 - 오키나와 전투, 219쪽)</p> <p>칼럼 - 1945년, 전쟁의 악화와 종전 - 여러 생각(222쪽)</p> <p>전화에 감광질광하는 오키나와 현민</p> <p>1945년 3월 미국의 기동부대가 오키나와에 진공해 왔을 때의 모습을 오키나와 현 모토부초[本部町]에 살던 어느 모친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p> <p>“미군이 상륙해 오고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우리 10명 가족은 다른 피난민과 함께 그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산 속을 우왕좌왕할 따름이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빗재 팔도 총탄을 맞아 죽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공포에 떨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어디로 이동해야 했다. ... 어두운 산길을 넘어 어느 산에 닿았는데, 이미 식량은 거의 없어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면서 말라리아(전염병)의 맹위 앞에 속수무책으로 매일 같이 누군가가 죽어갔다.”</p>
----------------	---

	<p>오키나와, 히메유리 학도대의 간호 활동</p> <p>한편 이때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와 오키나와 현립 제일고등학교 교사 18명, 생도 222명의 ‘히메유리 학도대’는 오키나와 야전병원의 간호요원으로 동원되었습니다.</p> <p>언덕 사면에 굴을 판 ‘호’라는 것이 40곳 가까이 있었고, 흙투성이 벽에 2단 침대를 두어 병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메유리 학도대는 거기서 헌신적으로 부상병의 간호에 임했고, 그런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p> <p>“4월도 말이 되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각 호에는 부상병이 넘쳐났다. 새로 옮겨진 부상병은 받아도 군의관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호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나무 밑에서 들것에 실린 채 있었다.</p> <p>『간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부상병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곧 치료가 끝나면 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짐작과 통이랄 ...”</p> <p>끊임없이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 위험한 간호 활동을 했고, 히메유리 학도대 중 반수 이상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p> <p>오타 미노루 소장의 전문</p> <p>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해군 육상부대를 지휘한 것이 오타 미노루 소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진 1945년 6월, 그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전투 협력에 감사하여 해군차관에게 다음과 같이 타진했습니다.</p> <p>“적이 오키나와 공략을 개시한 뒤 육해군은 방위전투에 전념했고, 현민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현민들은 청년·장년 전부가 방위소집에 응모해 주었다. 게다가 젊은 부인은 솔선하여 군에 헌신하여 간호사나 취사부는 물론 포탄 운반을 자청하는 사람도 있다. 간호사는 군의 이동으로 남겨진 중상자를 돕고 있다”(요약) 하며 “오키나와 현민 그렇게 싸웠다. 현민에 대해 후세에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멸했고, 오타 소장은 사령부가 있던 나하[那覇]의 해군 호에서 자결했습니다.</p> <p>사진해설 - 전투 세워진 ‘히메유리탑’(앞이 ‘호’의 흔적)</p>
<p>도쿄 대공습</p>	<p>미군은 마리아나제도, 나아가 이오섬을 점령한 다음 일본 도시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의 학동은 부모 곁을 떠나 집단으로 지방의 농산촌에 소개되었습니다(학동 소개).</p> <p>폭격은 군 시설이나 군수공장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 금지된 상업지, 주택지에도 무차별로 행해졌으며, 군인 이외의 비전투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1945년 3월의 도쿄 대공습은 하룻밤에 사망자 약 10만 명, 소실 가옥 약 27만 채라는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본문 - 공습의 피해와 오키나와 전투, 219쪽)</p> <p>미군은 동서 5km, 남북 6km의 구역 내에 소이탄을 떨어뜨려 불의 장벽으로 사람들의 퇴로를 막고 폭격했다.(사진해설 - 도쿄 대공습의 참상, 219쪽)</p> <p>공습 등의 위험을 피해 지방으로 향하는 어린이들(사진해설 - 학동 소개, 219쪽)</p>
<p>원폭 투하</p>	<p>1945년 8월 6일 미국은 원성 직후의 원자폭탄(원폭)을 히로시마시에 투하했습니다. 인류사상 첫 핵무기는 상공에서 작렬했고, 상상을 초월한 고열과 폭풍, 그리고 방사능이 약 14만~15만 명의 일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3일 후 원자폭탄은 재차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약 7만~8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본문 - 원</p>

	<p>폭 투하와 소련의 참전, 220쪽)</p> <p>메이지의 건설 이래 나가사키 기독교도의 신앙을 결집시켰던 천주당도 파괴되었다.(사진해설 - 파괴된 우라카미[浦上] 천주당, 220쪽)</p> <p>핵무기 사용의 비참함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미국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1996년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사진해설 - 원폭 돔, 221쪽)</p>
시베리아 역류	<p>전장의 군인 복원과 민간인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는 군인 약 110만 명, 민간이 약 50만 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만주·북한에 있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소련군의 공격과 약탈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또 소련은 만주와 사할린, 조선 등에서 무장해제한 군인 등 약 57만~70만 명을 시베리아에 연행하여 장기간 가혹한 노동에 종사시켰기 때문에 약 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본문 - 일본의 패전, 221쪽)</p> <p>증언을 토대로 강제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재현한 것(사진해설 - 시베리아 역류, 221쪽)</p>
도쿄 재판	<p>또 일본군은 해산되었으며, 전쟁의 계획과 실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간주된 군인이나 정치가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습니 다.(본문 - 패전 후의 민주화와 재건, 230쪽)</p> <p>칼럼 - 도쿄재판(232쪽)</p> <p>전범으로 재판받은 사람들</p> <p>맥아더는 전후에 만들어진 재판소조례에 근거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을 열었습니다. 죄를 추궁하는 검사와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모두 전승국과 그 식민지에서 임명되었으며, 일본인 변호인단은 소수였습니다.</p> <p>재판은 전쟁 지도에 관여한 정치가와 군인을 침략전쟁을 행한 '평화에 대한 죄'로 판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죄는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며 과거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각하된 채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p> <p>1948년 11월 25명에게 판결이 내려졌고, 다음 달 도조 히데키 이하 7명이 사형되었습니다. 판결에 즈음하여 인도와 네덜란드 등 5개국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도 대표인 팔 판사는 “복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단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친 데 지나지 않는 방식은 국제 정의의 관념과는 매우 동떨어진다”며 전 피고를 무죄로 하자는 의견을 말했습니다.</p> <p>또 포로 학대 등의 전쟁 범죄가 물어진 군인 등도 요코하마와 싱가포르, 마닐라 등 각지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p> <p>도쿄재판에 대한 관점</p> <p>이렇듯 도쿄재판에서는 일본의 정치가·군인들이 전쟁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았 습니다. 반면에 미소 등의 전승국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법으로 봐서 전쟁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라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p> <p>도쿄 대공습이나 원폭 투하 등 미군에 의한 도시 공습은 많은 일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소련군의 만주 침공에서도 만주에 살던 일본인에 대한 폭행이나 일본인 포로의 시베리아 역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승국의 이런 행위를 심판하는 재판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p>

그 외에 도쿄재판에 대해서는 ‘평화에 대한 죄’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한 것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계 평화를 향해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제시한 재판으로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의견도 있으며, 그 평가는 현재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구석이 재판관석, 오른쪽 구석이 피고석. 실제 심리에서는 검찰 측의 증거 대부분은 그대로 채용되었지만, 변호 측의 증거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사진해설-도쿄재판의 법정)

도쿄재판에서 오직 혼자 피고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사진해설-라다·비노드·팔(1886-1967)]

2011년판에서 최대 분량을 점하는 항목의 경우 지유샤 교과서 쪽이 도쿄재판인 반면 이쿠호샤는 오키나와 전투에 할애했다. 본문에서는 “일본군은 오키나와 현민과 함께 필사의 방어전을 전개했”다는 서술을 바탕으로 “미군의 맹공으로 도망칠 곳이 없어 집단자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고 씌으로써 집단사에서의 일본군의 가해성을 부인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어 칼럼 「1945년, 전황의 악화와 종전」을 빌려 오키나와 현민의 피해를 체험기 형식으로 설명한 다음, 히메유리 학도대의 간호 활동과 해군의 책임자였던 오타 미노루[大田実] 소장의 전보를 연결하여 서술했다. 오키나와 현민의 피해보다는 협력 쪽으로 판단을 몰아간다.

도쿄 대공습을 다룬 기술에서는 본문에서 “국제법에서 금지된 상업지, 주택지에도 무차별로 행해졌으며, 군인 이외의 비전투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는 구절이 특징적이다. 지유샤의 경우 칼럼에서 국제법 위반을 거론한 것과 대조적이다. 원폭 투하에 관한 묘사는 훨씬 자세하며, 사진 자료에서는 세계유산에 등록된 원폭 돔에 대해 “미국의 반대를 받으면서도”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다. 시베리아 억류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만주·북한에 있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소련군의 공격과 약탈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는 구절을 부기해놓았다.

도쿄재판 관련 기술 또한 지유샤 버전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다. 본문 서술에 더해 칼럼의 형식을 차용하여 법정 구성의 ‘편파성’, 소급 입법의 문제, 재판사의 무죄 의견 상술, BC급 전범 재판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이어 “미

소 등의 전승국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법으로 봐서 전쟁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라도 죄를 묻지 않았습다”고 한 뒤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에 관한 미국의 책임, 만주 침공과 시베리아 억류에 관한 소련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국 일반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직접 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2. 2015년판 교과서의 상황

1) 지류사

현재 중학교 현장에 쓰이고 있는 2015년도 버전은 구판의 취지를 이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가미했다. 오키나와 전투와 관련해서는 칼럼에 있던 내용과 사진 자료를 본문으로 옮기는 형식을 취했다(244쪽). 날개 주의 형식으로 오타 미노루를 소개하며 “현민의 헌신적인 협력과 참극”을 부각시키고 “일본군은 잘 싸웠고, 오키나와 주민도 잘 협력했다”고 끝을 맺는다(오타 미노루의 소개는 이쿠호사의 모방으로 여겨진다). 도쿄 대공습의 경우 “민간인을 향한”이라는 표현을 첨가했고, 새롭게 200여 도시의 공습과 50만 명의 피해 사실을 적시했다(243쪽). 2011년판에 이은 칼럼 ‘전시국제법과 전쟁범죄’에서는 오키나와 전투와 “무차별” 폭격을 묶어 민간인에게는 “비무장”을 사망 규모에 대해서는 “대량으로”를 덧붙여 피해의 표현을 더욱 강화했다(248쪽).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시베리아 억류 항목이다. 먼저 칼럼에서는 “소련은 일본의 항복 후에도 침공을 멈추지 않았고, 일본 고유의 북방영토 점령을 마쳤을 때는 이미 9월이 되어 있었습니다”와 “포로는 즉각 귀국시킨다는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이 신출 문장이다(248쪽). 이는 말미의 “전쟁의 승자인 연합국 측의 이런 전쟁 범죄는 전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와 연동하며 소련을 빌려 전쟁의 승자인 연합국, 즉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교과서 본문에 처음으로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 문제와 더불어 시베리아 억류를 서술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254쪽).

도쿄재판에 관해서는 칼럼 말미의 ‘맥아더의 반성’이라는 항목이 특별히 눈

길을 끈다(255쪽).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결여한 채 맥아더를 앞세워 ‘평화에 대한 죄’를 의문시하는 기술 방식은 이른바 ‘도쿄재판사관’ 부정론의 극치를 보여 준다. 게다가 검정에 떼밀려 말미에 도쿄재판 수락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 것은 교육적 관점이 실종된 교과서의 현주소를 노정하는 듯 하다.

2) 이쿠호샤

2015년판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오키나와 전투 쪽만 표현이 다소 수정되고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다. 본문의 날개 주에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있었음을 새로 첨가했다(239쪽). 집단사 문제는 “전투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도망칠 곳이 없어 집단자결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바뀌었다. 그리고 칼럼에서 오키나와 전투 직전에 부임했던 지사 시마다 아키라[島田勲]의 행적을 신설했다(222쪽). 이는 오키나와 현민의 대량 희생과 집단사 문제의 책임 소재를 희석하기 위한 안배로서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국가의 복원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쿄재판에 관한 본문의 서술에서 2011년도의 제목 「패전 후의 민주화와 재건」이 2015년도에는 「패전 후의 점령과 재건」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254쪽). 민주화에서 점령으로 바뀐 것은 명백히 점령개혁의 긍정적 측면을 제거하려는 의도의 발로이며, 최근 가시화된 개헌 준비와 연동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3. 교과서 내용의 변화와 채택률

새역모의 2차 분열극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야에서는 자유사와 이쿠호샤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새역모와 재생기구(개선모임)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우익의 본류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불리를 절감한 새역모는 운동의 구심력을 유지하고자 2009년 자유사 교과서로 포문을 열었

다.⁴³ 후소샤판의 복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했으나, 피해 기술과 반미 색채는 대폭 강화되었다. 도쿄 대공습에 관한 기술에서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대량 살상이라는 비인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BC급 재판의 문제점을 상술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도쿄재판을 의문시하는 논법도 가미했다.

성과는 있었다. 지유샤 교과서는 ‘생명선’이던 요코하마[横浜]를 사수하고자 교육위원회를 움직이는 필사적인 공략 끝에 1.1%의 채택률을 기록했고, 기존의 후소샤는 0.6%에 머물렀다.

2011년은 지유샤와 이쿠호샤가 교과서를 놓고 본격적으로 격돌한 첫 싸움이었다. 지유샤는 이전 교과서를 대폭 개편한 기술로 대응했고, 원폭은 ‘20세기 최대의 전쟁범죄’로 규정했으며, 점령의 주체였던 미국은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로 치부했다. 미국의 점령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나아가 GHQ는 ‘전쟁에 대한 죄악감을 일본인의 마음에 심기 위한 정보 선전 계획(war guilt information program)’을 군사 작전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본인이 ‘자신들에게는 나쁜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246쪽)라는 서술도 새롭게 첨가했다(2015년에도 이어짐).

그럼에도 이쿠호샤의 피해 기술은 지유샤에 비해 양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우수했고, 교과서로서의 완성도까지 높았다.⁴⁴ 2011년 5월 아베 신조는 재생기

43 2008년 4월 새역모는 후소샤와의 결별 과정에서 기존 교과서의 저작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였음에도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했고, 1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수정을 거친 뒤 2차에서 통과했다.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의 발행 시도는 저작권은 물론 경영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이후 후소샤와 산케이신문까지 가세한 저작권 소송이 벌어졌다. 관련된 내용은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 편, 2009, 『教科書レポート』 52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30~36쪽이 자세하다.

44 이는 문부과학성의 검정 의견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정확성, 표기 및 표현’의 오류는 지유샤가 230곳, 이쿠호샤가 145곳이었으며, 내용 이전의 단순 오류(오기, 탈자 등)는 각각 95곳과 39곳이었다(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 편, 2011, 『教科書レポート』 54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13~14쪽).

구와 개선모임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교과서는 이쿠호샤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⁴⁵ 반면에 지유샤 교과서 쪽은 동 6월 도쿄서적의 도표를 도용한 것이 발각되어 후지오카 회장이 사표를 던지는 지경이었다. 그런 대조적인 양상은 2011년의 채택률에 반영되어 지유샤의 0.07%에 비해 이쿠호샤는 3.7%를 거머쥐었다. 지유샤의 생명선 요코하마는 이쿠호샤가 차지했으며, 양 조직의 우열은 확연히 드러났다.

지유샤의 완패로 끝난 서전의 결산표는 2015년도 교과서의 준비 작업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쿠호샤는 거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지만, 만회를 노리는 지유샤는 표현을 강화하고 시베리아 억류와 도쿄재판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중일전쟁을 다루며 난징 사건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통저우[通州] 사건’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기술 내용은 “중국 측이 일본인에 대한 습격 등의 도발을 멈추지 않은 것도 있어 본격적인 전투 상태로 나아갔다[날개 주, 베이징 동방의 통저우에는 친일 정권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7월 29일 일본 주둔군의 부재를 틈타 정권의 중국인 부대는 일본인 거주지를 습격하여 일본인 거류민 385명 중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223명이 참살되었다(통저우 사건)]”(233쪽)고 되어 있으며, 책의 피지에도 “히구의 난징 사건을 신지 않고 실재한 통저우 사건을 쓴 첫 교과서 탄생!”이라는 선전 문구를 달았다.

그럼에도 두 교과서의 채택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유샤는 0.04%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고, 이쿠호샤는 당초 목표 10%에는 미달했지만 6.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⁴⁶ 이런 기세라면 4년 뒤인 2019년에는 이쿠호샤의 독무대가 될지도 모를 형국이다.

45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 편, 2013, 『教科書レポート』 56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31쪽.

46 2015년의 채택률 상승에서 증가분의 73%를 오사카 부가 달성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본회의의 주도면밀한 공작이 확인되는데, 상세한 분석은 上杉聡, 2016, 앞의 책, 제5장이 참조가 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확인했듯이 새역모와 재생기구의 양대 교과서우익은 일본 평화주의의 한계와 피해의식의 모순적 양상 속에서 활동 기반과 에너지를 구축해냈다. 교과서우익의 ‘참신성’과 위험성의 규명은 그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희생과 평화와 번영의 삼중주”⁴⁷로도 표현되는 일국적 평화주의와, 도쿄 대공습 70주년인 2015년 3월 10일 “귀한 희생 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연설 사이에 엄존하는 논리적 위화감과 정치적 거리감에 일본 국민들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 ‘회색지대(gray zone)’를 파고든 것이 교과서우익의 강점이었다.

그들은 피해의식이라는 탈정치적 공감대를 내셔널리즘으로 치환하고자 했으며, 필요에 따라 반미의 코드를 가감했다. 그 필요성은 자민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 정치 상황에서 제기된다. 2011·2015년판 자유샤·이쿠호샤 교과서에서는 강력한 반미 드라이브가 관찰되는데, 그 저변에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과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대미 관계 경색 등의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할 말은 하는 정치가’ 아베에게 ‘반미도 서슴지 않는 교과서’가 원군으로 가세하는 구도는 개헌으로 대표되는 우경화의 진척과 더불어 더욱 고착화·강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교과서우익의 반미는 결코 ‘정치’적인 장식물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사상’으로 체화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피해의식을 내셔널리즘으로 치환하는 데 활용하는 부수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니시오는 반미도 친미도 아닌 미국에서 벗어나는 ‘이미(離米)’를 주장하며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일본이 전시에 받은 공습 기타 미국의 전쟁범죄와, 미국이 세계 각지의 군사적 개입의 현장에서 저지른 사건을 감정적

47 田中伸常, 1998, 『さよなら、『国民』: 記憶する『死者』の物語』, 一葉社, 127쪽.

으로 동일시”하는 “단순한 반미론의 유혹”이라 비판하는 다쿠보의 친미적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⁴⁸ 미국의 동맹군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선택지가 미국과 다시 ‘대동아전쟁’을 벌이는 쪽보다는 현실적이며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노학자는 교과서우익의 반미 슬로건에 내재된 사상적 파행을 일찍부터 꿰뚫어 보았다.

소박한 내셔널리즘 감정의 선동은 아무리 대미 비난을 거듭하더라도 지금의 국제관계 하에서는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대미 종속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일미안보체제라는 국제전략(‘집단지 자위권’으로 귀착된다) 구조를 뒷받침하는 ‘강한 일본’ 지향에 봉사하게 되는 쪽이 훨씬 높다.⁴⁹

현실은 그의 날카로운 예측 그대로 전개되었다.

사실 전쟁 체험 혹은 피해의식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반드시 반미나 친미의 양자택일로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택지와 가능성은 엄존한다.

2004년 3월 도신사[童心社]에서 『우리들의 아시아·태평양전쟁(わたしたちのアジア・太平洋戦争)』(전3권)이 간행되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쟁 체험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서, 동 출판사가 1969년에 펴낸 『아버지가 전하는 태평양전쟁(父が語る太平洋戦争)』과 비교하면 전쟁 체험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으로 진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의 작업 모두에 편집자로 참가한 아동문학자 후루타 다루히[古田 田日]는 1969년판의 문제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했다.⁵⁰ 피해의식에 과도하게

48 <http://soneaozora.jugem.jp/?eid=1020>(2017년 8월 25일 조사).

49 永原慶二, 2001, 『歴史教科書をどうつくるか』, 岩波書店, 137쪽.

50 http://www.doshinsha.co.jp/longsaler/asia/asia_02.html(2016년 11월 4일

경도되었다는 점, 아버지의 시선만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2004년판에서는 1931년의 만주사변부터 다루었으며, 가해자의 시점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 병사들의 체험담이 수록되었다. 일본 외에 조선·중국·동남아시아가 체험한 전쟁의 양상에 주목하여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병사, 동남아시아의 희생자의 목소리가 첨가되었다. 패전 후에는 반전평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쟁책임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려는 일본인의 삶도 담았다.

가해와 피해의 접목을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일본군 희생자 230만 명 중 절반이 아사(영양실조, 병사 포함)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피해 문제를 파헤치다 보면 많은 병사의 목숨이 허참게 다뤄진 이유가 곧 일본의 가해도 낳게 된 것이므로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한다.⁵¹

가해국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과거 사건의 실감을 지금 시점에서 체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후루타와 같이 ‘일상적’이며 위 연구자처럼 ‘전문적’인 작업과 문제의식이 확대·심화됨으로써 일본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왔던 피해와 전쟁의 기억은 비로소 민족과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 역사화해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관점은 그렇게 공유된 전쟁 체험을 학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을 갖추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조사).

51 林博史, 2016, 앞의 논문, 8쪽.

일본의 ‘교과서우익’과 전쟁 피해의 전략적 활용 -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정치권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중문

패전 이후 일본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을 배양·공유해왔으며, 역사교과서 속에서는 피해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피해의식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이 공존한다. 자민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은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의 위험을 알리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육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가해와 전쟁책임을 응시하지 않는 피해의식에서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평화의 연대는 싹을 틔울 수 없었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일본교육재생기구’ 등의 교과서우익은 일본 평화주의의 한계와 피해의식의 모순적 상황에서 활동 에너지를 얻어냈다.

본 연구는 교과서우익이 펴낸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을 대상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피해 실태 기술이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도쿄 대공습, 원폭 투하, 오키나와 전투, 시베리아 억류 등의 전쟁 피해와 더불어 개헌을 둘러싼 논란과 긴밀하게 연루되는 도쿄재판에 관한 기술의 변화를 추적했다. 구체적인 기술의 변화와 함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와 연동하

는 교과서우익 내부의 동향과 정치권과의 연결을 조망하고자 했다.

교과서우익의 ‘참신성’은 이렇게 발현되었다. 피해의식이라는 공감대를 내셔널리즘으로 치환하고자 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반미의 코드를 삽입했다. 그런 면에서 2011년과 2015년 교과서에 담긴 강력한 반미 드라이브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감과 2013년 12월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대미 관계 경색 등의 국내의 정치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할 말은 하는 정치가’ 아베에게 ‘반미도 서슴지 않는 교과서’가 원근으로 가세하는 구도는 개헌과 같은 우경화의 진척과 더불어 더욱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주제어: 역사교과서, 역사인식, 피해의식, 전쟁책임, 아시아·태평양전쟁, 평화주의, 전후역사학, 교과서우익, 반미주의

ABSTRACT

“Textbook Right-wing” and Strategic Use of War Damages: Focussing on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Descriptions and Political Trends

Ha Jongmun

After Japan’s defeat in 1945, the country developed and distributed a victim mentality concerning the Asia-Pacific War. Descriptions were derived from such contexts as government-approved history textbooks, which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Japan’s victim mentality resulted in contrasting pros and cons. Conservative political agendas l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ucceeded in spreading a message of anti-nuclear, anti-war, and pacifism from that victim mentality, whereas the denial of a perpetrator perspective and of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shunned further possibilities for a universal alliance for peace. Right-wing revisionist groups, including the Japanese Society of History Textbook Reform and the Japan Education Rebirth Institute, were motivated by the ironical side of victim mentality.

This study explains how descriptions of destruction during the Asia-Pacific War have changed over time by examining two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edited by right-wing revisionist groups. The focus was specifically on Japan's war damage, such as the bombing of Tokyo, the atomic bombings, the Battle of Okinawa, the Siberia Internment, and the Tokyo Trial, which had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recent issue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By tracking specific changes and their meanings over time, this paper reveals the connection of right-wing revisionists in the textbook committee with politics.

The right-wing revisionist groups were “innovative” in the sense that they substituted empathy for the victim with nationalism and added anti-American sentiment to their needs. In this respect, the anti-American context in 2011 and the government's approval of history textbooks in 2015 may be explained by rel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roversies surrounding visits to Yasukuni Shrine in December, 2013. The mechanism of “anti-American to the extreme” history textbook committees supporting the “outspoken” Prime Minister Abe Shinzo consolidates the conservative swing.

Keywords: History textbooks, Victim mentality, War crime responsibility, Asia-Pacific War, Pacifism, Post-war history, Right-wing revisionists, Anti-Americanism

중국 당안관 자료 현황과 자료 해제

–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중심으로

윤명숙 | 역사학자 · 상해사범대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재 서울) 연구원

- I. 머리말
- II. 중국 당안관 공개 자료와 국내 수집 현황
- III. 자료 이해를 위한 지역과 시대 배경 개관
- IV. 자료 「진화(金華)성구 근황표」와 ‘진화(金華)계림회 명부’
- V. 맺음말

I. 머리말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군‘위안소’와 ‘위안부’ 관련 자료 중에 중국 당안관(檔案館)¹ 자료는 의외로 많은 편은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남경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위안소가 대량으로 설치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소재 일본군 관련 자료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1932년 상해사변 때 상해에는 이미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문헌자료가 밝히고 있으니 중요한 자료가 묻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선총독부가 그러했듯이 중국에서도 일본군이 패전 직전에 대부분의 자료를 소각, 폐기하였다. 현재 공개된 주요 자료는 동북지역 당안관이 공개한 자료이다. 이들은 일본군이 소련 참전에 밀려 급하게 후퇴하면서 전부 소각하지 못한 채 남겨진 자료들이다. 길림성 당안관이나 흑룡강성 당안관 등이 공개한 소장 자료가 그 예다. 게다가 중국 당안관은 오랫동안 폐쇄적이었고 또 자료를 공개한다 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중일 양국의 정치·외교관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한국의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 해당한다. 해방 이전의 역사 자료는 대전기록관, 서울기록관(성남), 부산기록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 가든 열람 가능하다. 또 서울기록정보센터나 광주기록정보센터에서 디지털 자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중국 당안관은 행정 단위로 구분되어 소재한다. 그래서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성급(省級) 당안관만 20여 개가 넘고 각 성에 두 자리 수가 넘는 현(縣) 혹은 시(市), 구(區)급 당안관이 있다. 소장 자료는 급과는 상관없이 당안관마다 다르다. 2017년 현재 당안관 자료 열람은 주요 성 당안관의 경우 상당히 디지털화가 진척되어 자료를 이미지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시급 당안관의 경우는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Ⅱ장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자료를 개괄하기로 한다. 즉 중국 정부가 공개한 ‘위안소’·‘위안부’² 관련 자료와 국내 수집 현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화 지역과 시대 배경을 개관한다. Ⅳ장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 「진화성구 근황표」가 국내에 ‘진화계림회 명부’로 알려진 자료의 교차 분석을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중국 당안관 공개 자료와 국내 수집 현황

먼저 중국 당안관 측이 공개한 위안소·위안부 관련 자료 현황을 살펴보자.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소개하면, 중국 정부가 승전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당안국 중앙 당안관(中华人民共和国国家档案局中央档案馆) 홈페이지에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자료선[档案选](이하 ‘자료선’)〉이라는 이름의 링크를 달아 공개한 자료가 있다.³ 이곳에 공개된 자료는 길림성 당안관을 비롯해서 중앙 당안관, 남경시 당안관, 상해시 당안관, 흑룡강성 당안관, 랴오닝성(辽宁省) 내몽고자치구 당안관, 허베이성(河北省) 친황따오시(秦皇島市) 당안관 등에서 그간 발굴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에 수집되어 있다. 당안관 소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화동지구, 상해시 당안관과 난징시 당안관 자료는 2013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재단 외 전문가 등 자료조사팀을 꾸려서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⁴ 둘

2 위안부나 위안소라는 용어는 역사용어로 사용한다. ‘위안’이라는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생략한다.

3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 <http://www.saac.gov.cn/>,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자료선 링크 <http://www.saac.gov.cn/waf/waf.html>.

4 제2역사 당안관(난징시 소재)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위안소·위안부와 직접 관련된 자료라기보다 일본 패전 직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의 조선인,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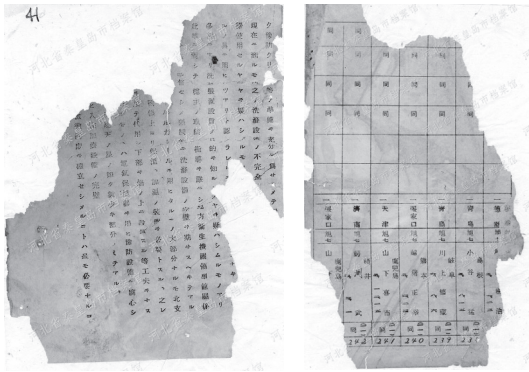
제, 동북지구. 길림성 당안관 자료는 2014년 6월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문가 등 자료조사팀을 꾸려서 해당 당안관을 방문하여 디지털화된 자료를 열람하였다. 길림성 당안관 자료는 『철증여산-지린성 신 발굴 일본의 중국침략 자료 연구(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이를 제공받았다.⁵ 동북지방 당안관 자료는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한 것이어서 소각과 습기 등으로 보존 상태가 썩 좋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서 자료 내용이 단편적인 것도 적지 않다. 귀국 후 자료조사팀이 공동으로 자료 해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료 발표회를 가졌다. 2014년 방문을 계기로 동북아역사재단은 길림성 당안관과 자료 교류 등의 MOU를 체결하고 이후 당안관 소장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⁶

흑룡강성 당안관 자료 역시 중국 측에서 먼저 공개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집하였다. 중국이 오랫동안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었는데 길림성 당안관과 흑룡강성 당안관 자료를 각각 2014, 2015년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난 이후 시작했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년 6월 10일 중국 외무성이 정례회견에서 남경대학살 자료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했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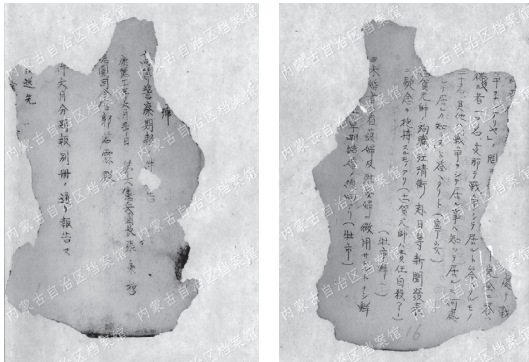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 국내에 수집되어 있지 않

인, 일본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5. 卍양옌(卍严) 편집, 116~187쪽, 지린 출판 그룹 유한책임회사(吉林出版集团有限责任公司), 2014, 이 자료집은 길림성 당안관이 『불멸의 증거 - 지린성에서 새로 발굴한 일본의 침략서류 연구』로도 번역(한국어), 출간하였다. 서지사항은 동북아역사자료실(<https://hflib.kr/#/search/detail/210081>) 참조.
6. 길림성 당안관 측은 총 10만 건에 달하는 문건이 소장되어 있고 이들 중에 2014년 검토한 자료 중에 일부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14년 6월 방문 당시 자료 열람은 기본적으로 당안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방식이었다.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는 자료를 인식하기 힘들 경우 예외적으로 원본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 컴퓨터 열람만이 허락되었다. 이후 길림성 당안관은 5개년 계획으로 자료 검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성 친황따오시 당안관



랴오닝성 내몽고자치구 당안관

그림 1 중국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내 미수집 자료 예시

은 자료는 내몽고자치구와 친황따오시 당안관 자료 등이다.⁷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들 자료도 조각으로 훼손된 상태가 확인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당안관 측이 중요하다고 여긴 페이지가 부분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

7 중국 중앙 당안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국내 수집 자료 내역과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국내에 수집되지 않은 당안관 소장 자료는 앞으로 직접 추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공개된 자료 중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자료는 이미 언급한 길림성 당안관 자료 이외에 중앙 당안관 자료가 있다. 중앙 당안관 자료는 여타 자료와 달리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이다. 그중 일부가 국가당안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日本侵华战犯笔供选)>(이하, '진술서선') 서문에 자료 설명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0년부터 1956년까지 후순(抚顺)과 타이위안(太原) 두 곳에 일본 전범자가 압송되었다. 그들은 1945년부터 해방전쟁 기간 중에 체포된 140명과 1945년 8월에 소련 홍군에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체포되었다가 1950년 7월 중국 정부에 이관된 969명으로 총 1,109명이다. 일본 전범 용의자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중 전쟁범죄자 처리에 관한 결정(关于处理在押日本侵略中国战争中战争犯罪分子的决定)>에 따른 혁명인도주의정신이라는 관대한 처리 방침에 따라 처분받았다.⁸ 1951년부터 1956년 6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 검찰서(후에 검찰원으로 개칭)에서 조사받고, 1956년 6월과 7월에 1,109명 중 도중에 사망한 47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소가 면제되고 죄행이 엄격한 45명만이 선양(沈阳)과 타이위안에 설치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특별군사법정에서 공개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자료를 중앙 당안관이 보존하고 있다.⁹ 중앙 당안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일본 전범 자필진술서는 이들 자료 중에서 '자료선'에 9건이 공개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진술서선'에도 31명의 전범 자필진술서가

8 1956년 4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56년 전범재판의 한계에 관해서 이선이 논문(「중일전쟁시기 덩링[丁玲]의 일본군 성폭력재현과 1956년 전범재판 그리고 피해자 증언의 의미」, 『중국학보』 제 80집, 2017년 5월) 참조.

9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日本侵华战犯笔供选)의 서문(<http://www.saac.gov.cn/zt/zfbg/qy.htm>);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处理在押日本侵略中国战争中战争犯罪分子的决定(http://www.110.com/fagui/law_6974.html) 참조.

공개되어 있는데,¹⁰ 중국이나 조선 부녀를 강간한 범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전범의 자필진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외에 2015년 8월에 『중앙당안관 소장 일본의 중국 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 선편(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50권)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2년 후 2017년 7월에 70권이 추가로 출간되어 총 120권 발간에 842명의 자필진술서가 수록되어 있다.¹¹ 120권 안에 ‘위안부’ 관련 진술이 200여 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자료집 120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입하여 2017년 12월 현재 정리 중이며 정리를 마치는 대로 공개될 것이다.

덧붙여서 후인핑(胡銀平) 논문에 따르면 “텐진(天津), 산시(山西) 등지의 당안관”에도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한다.¹² 텐진 당안관 자료는 1990년대에 일본 거주 중국인 연구자가 발굴한 것인데, 소지량 교수에 따르면 중앙 당안관에서 출간되었다고 한다.¹³

Ⅲ. 자료 이해를 위한 지역과 시대 배경 개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저장성, 진화, 우이현 등 자료에 나오는 지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지도 ①은 저장성 위치이다. 지도에서처럼 중부

-
- 10 <일본 중국침략 전범 자필 진술서선> <http://www.saac.gov.cn/zt/zfbg/index.htm>.
- 11 「《中央档案馆藏日本侵华战犯笔供选编》120册出齐」(『인민망(人民网)』, 2017.7.21)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7-07/21/content_1792301.htm.
- 12 胡銀平, 2004, 「中国‘慰安妇’问题研究综述」, 『周口师范学院学报』, 제24권 제1기, 2004년 1월.
- 13 텐진 당안관 자료집 제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한국에는 수집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서는 WAM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① 저장성(浙江省, 별표 표시)



② 진화(金华, 동그라미 표시)



③ 지도의 맨 위 화살표시가 시야양(下杨), 우이현(武义县, 네모 표시), 진화현(동그라미 표시)

그림 2 저장성 및 진화시, 우이현 지도

지역 오른쪽 끝에 있다. 상하이에서 출발하면 남서방향으로 조금 내려온 지점에 저장성 진화시가 있다. 지도 ②에 보면 저장성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다. 자료를 발굴한 우이현은 지도 ③에서 보면 진화시보다 약간 동남쪽 아래(네모 표시)에 있다. 둘째, 진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군이 진화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과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 일본군이 진화현과 우이현을 점령한 것은 약 5년 후의 일이다. 즉 1942년 5월 일본군이 진화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우이현을 비롯한 금화 지역이 일본에게 중요했던 것은 형석(불화칼슘)이라는 광물 자원 때문이었다.

형석은 “제철 과정이나 비철 제련 과정 등에서 광석이나 고철 등의 용해를 촉진하기 위한 용제(融劑)로 사용”하는 천연광석이다.¹⁴ 자외선을 쬐면 형광으로 빛을 발해서 ‘호타루이시(螢石)’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이 일본 한자 이름으로 불린다. 진화를 가운데 두고 주위를 둘러싸듯이 위치해 있는 이우현(义烏县)이나 우이현 등지에 매장되어 있던 형석은 일본의 철강 산업에 매우 중요한 광석이었다. 특히 우이현은 ‘형석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¹⁵ 1931년 이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국에서 21개 현 80여 곳에 형석 채광구가 있었는데 이 중 40개소가 우이현에 있었고 생산량의 58%를 넘게 차지하였다. 당시 중국은 아직 산업이 발전되지 못해서 채굴한 형석은 주로 상해에 있는 무역회사인 삼양행(洋行), 黒木양행, 小林양행에서 사들여 일본 하치망(八幡)제철소(1901년 조업 개시, 설립 당시 농상무성 관할)에 공급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의 형석을 수입한 것은 1914년부터 개인 무역상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이후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중국의 “민족대의”에 따라 채굴

14 「보고서 용어 정의」, 3쪽[『平成24年度中小企業支援調査(フッ素(螢石)の安定供給確保に向けた課題の調査)報告書』2012. 2,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과 발행; 미쓰비시(三菱)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 위탁],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3fy/E003423.pdf#search=%27%E8%9B%8D%E7%9F%B3+%E4%B8%AD%E5%9B%BD%27.

15 陈祖南·徐瑛·胡彬·赖耀卿, 「萤乡血泪」(『今日武义』, 신문 7면, 2010. 9. 15). http://jrwy.zjol.com.cn/html/2010-09/15/content_7_1.htm.

이 중지되었다가 이듬해 6월 우이현의 장화불광회사(璋华氟矿公司)를 통해 연간 4천~5천 톤의 형석을 어렵게 다시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고 나서 일본은 저장성 Ningbo시(宁波市) Siyangshan현(象山縣)에서 형석을 수탈하였다. 그러나 채광의 규모가 작아서 국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이현의 대규모 형석의 수탈을 도모하게 되었다. 1941년 흥아원 화중연락부 경제 제1국과 70사단은 군의 명령에 따라 우이, 진화, 동양, 이우, 주지(诸暨), 성(嵊), 신창(新昌) 등 7개 현에 정보원을 잠입시켜 형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우현 50만 톤, 우이현 170만 톤, 진화 5만 톤의 형석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중 우이의 매장량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곳은 함락 지역이 아니어서 입산이 곤란하다고 보고되었다.¹⁶ 또한 제13군 작전명령 강제184호에 따르면, 제70사단이 수차례 조사한 결과 우이, 진화, 이우 일대에 형석 매장량이 350만 톤에 달하며 그중 우이현에 약 90%가 매장되어 있는데다 품위가 80%에 달할 만큼 양질의 광석이었다. 일본은 1942년 6월부터 1945년 3월 우이현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33개월 동안 40만 톤이 넘는 형석을 채굴해갔다고 한다.¹⁷ 일본군은 1942년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절공작전에 14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하였다. 우이현은 5월 23일에, 진화는 5월 28일 함락되었다.¹⁸

진화현과 우이현은 인접해 있는 현이지만 1942년에는 아직 두 현 사이에 직통으로 연결된 철로가 놓여져 있지 않았다. 철로는 1943년 3월에 시공하고 9월

16 형석에 관한 기술은 다음 두 편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陈祖南·周祖华·赖耀卿, 「萤乡血史」, 228~236쪽; 陈南山, 「日军武力掠夺我县萤石资源的内幕」, 236~237쪽(中华明招文化研究院 편, 2016, 『萤乡蒙难暨抗战实录』, 인민일보출판사).

17 《武义敌伪采砾石(萤石)地点及大工调查》(앞의 기사「萤乡血泪」(7면)에서 재인용).

18 위의 陈南山·周祖华·赖耀卿의 글.

에 완공하여 1944년 4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운행이 개시되었다.¹⁹ 앞서 서술한 대로 진화 지역은 1942년 5월 이전에는 일본군 점령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인(조선인 포함)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술한 대로 1930년대 형석 무역도 상해에 거점을 둔 무역회사가 거래를 했으므로 진화 지역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일본인이나 조선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5월 중 일본군이 이 지역을 점령한 직후였을 것이다. 우이가 5월 23일, 진화가 28일에 함락되었으니 아마도 이때 이후가 될 것이며 대체로 6월 전후로 보편될 듯하다.

저장성 당안관 소장 자료 중 1940년대 진화 일대 인구 자료는 검색되지 않았다. 아마도 1945년 8월 이전 인구통계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인데 그 이유 중에는 비공개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현지』나 『우이현지』 등을 보면 단편적이거나 인구에 관한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진화의 경우 『진화현지』에 1941년 인구 통계가 있는데 진화현 총인구는 318,941명이고 이 중에 남성은 181,614명, 여성은 137,327명이다. 직업 분포도를 보면, 농업 74,947명, 공업 10,156명, 상업 13,609명, 어업 74명, 교통운수 1,805명, 의료업 545명, 기술자 218명, ‘프리랜서[自由职业]’ 1,235명, 당(党) 262명, 정(정치 공무원, 관료 포함) 3,232명, 군 6,942명, 경(警) 634명, 가사 관리(家务管理)(집사나 가정부 등)²⁰ 58,958명, 총 172,617명이다. 통계에는 취학자와 무직자, 실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진화 거주 소수민족 인구 통계에 조선족 인구는 1964년 2명, 1982년 6명이 확인되지만 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거주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²¹ 일본군 점령 기간 동안의 인구 통계 자료는 없어서 인구 변동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다만 1947년 진화현 총인구 242,579명과 1941년

19 「掠夺萤石的吸血管」246쪽(中华明招文化研究院 편, 2016, 『萤乡蒙难暨抗战实录』, 인민일보출판사).
 20 중국어 家务管理에 전업주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1 『진화현지(金华县志)』, 절강인민출판사, 1992, 93~95쪽.

인구수를 비교하면 76,362명이 감소되어 있다. 인구 감소 원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우이현의 경우 『우이현지(武义县志)』(1990)에서는 1941년 총 183,337명, 1942년 167,426명으로 15,911명 감소하였는데 감소 이유가 일본 군이 태우고, 죽이고, 빼앗아서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IV. 자료 「진화(金華)성구 근황표」와 「진화(金華)계림회 명부」

여기서 소개할 자료는 한국에 ‘진화계림회 명부’로 이미 알려진 자료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이다. 2017년 8월 저장성(浙江省) 우이현(武义县) 당안관에서 발굴한 위안소 자료로 처음 공개하는 자료이다.²³ 「진화성구 근황표(金華城區近況表) 三二年六月二〇日」은 『公職候選人檢覈卷宗』(우이현정부, 1945년)이라는 문서철에 들어있으며 총 8쪽이다. 이 자료에 일본군이 책임 관장하고 있는 위안소와 군인클럽 소재지와 건물명, 책임관장(主持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화성구 근황표(金華城區近況表)」에는 야탕가(雅堂街)와 산파이팡(三牌坊) 두 곳의 위안소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유의미한 이유는 「진화계림회 명부(金華鷄林會會則及名簿, 이하 ‘명부’)」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²⁴ 앞서 일본군이 진화 일대를 점령한 목적

22 『우이현지(武义县志)』, 절강인민출판사, 1990, 91~92쪽.

23 우이현 당안관에서 위안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천주난(陈祖南), 라이야오칭(赖耀卿) 두 분 덕택이다. 두 분은 앞의 주15에서 인용한 글 「螢乡 血泪」의 저자이다. 특히 천주난 선생님 덕택에 여타 당안관과 달리 이를 동안 제약 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4 ‘진화계림회 명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박정애, 2017, 「중국 저장성(浙江省) 진화(金華)의 위안소와 조선인 위안부 - 진화계림회 명부(金華鷄林會名簿) 분석을 중심으로」(『페미니즘연구』 제17권 1호)가 있다. 이보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이인선·황정임·양예경·김동식·강정숙·조운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에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박정애는 이 논문에서 각 위안소의 상황과 위안부의 실태 및 귀국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 형식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군 점령과 함께 이주해온 조선인과 일본인은 주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부류일 것이다. 즉 형식 채광 관련 인력, 운반에 필요한 인력, 일본으로 보내는 일련의 ‘무역업’ 관련자 등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 외에는 어느 지역처럼 ‘위안업’과 같이 군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었을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진화 조선인 형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재지반도인명록』(제4판)을 보자.²⁵ ‘명부’에서 먼저 진화현에 소재하는 조선인의 직업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객업 관련업자는 뒤에서 「진화성구 근황표」와 『재지반도인명록』(4판)과 교차 비교하기로 하고 먼저 접객업 이외의 업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직업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5종류로 구분될 수 있겠다. 첫째, 사진업자(滄口사진관, 金岡사진관, 사진업), 둘째, 대외무역 외국인 회사 익민양행(益民洋行), 환일양행(丸一洋行) 사원, 셋째, 회사이름에 업종이 명확한 것으로는 화중운수회사(華中運輸會社)·해성공업사(海星工業社), 넷째, 상세한 업무는 알 수 없지만, 유흥업이 아닌 회사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절골물산회사(浙贛物產公司)·합리회사(合利公司)·흥남회사(興南公司)·원등상사(遠藤商社)·삼하흥업(三河興業)·삼익사(三益社)·백양사(白洋社) 등이다. 다섯째, 형식을 채광하는

25 이 글에서는 『재지반도인명부』(제4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전 판본은 금화일대가 함락되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지사항을 언급해두면 다음과 같다. 제1판은 1940년 12월 31일 발행되었고 정식 명칭은 『화중반도인명록(華中半島人名錄)』이다. 제2판 이후는 『재지반도인명록』(기념호)이고 1941년 12월 26일 발행. 조사기간은 중지판 표제지에만 명시되어 있는데, 1941년 2월부터 10월 까지 9개월간 백천양행(白川洋行) 인명록계가 조사하였다. 제3판은 1942년 11월 5일에 발행. 4판은 조선징병제도 실시 기념호이고 1944년 2월 5일 발행. 덧붙여 『재지반도인명록』 국내 소장처는 박정애의 선행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2판부터 4판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을 통해 볼 수 있다. 박정애는 선행 연구에서 진화계림회 명부 분석에 『재지반도인명록』과 『지나재류방인인명록(支那在留邦人民名錄)』을 교차 분석하였다. 나는 후자인 『支那在留邦人民名錄(日文)』(194109) 원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해 체재 중(2015. 9~2016. 1 및 2016. 9~2017. 8)에 상해당안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했으나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는 1941년에 발간된 자료이므로 제외해도 1942년 이후 진화 분석에는 지장이 없음을 밝혀둔다.

인력업과 관련 있을 것 같은 곳으로는 대택조(大澤組)·능등조(能登組)·소서조(小西組) 등이다.²⁶

사진업은 일본군 점령지에는 어디에나 있는 직종이다.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지역적 특성이 있을 테지만 명부만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는 『재지반도인명록』(제4판, 진화편)과 교차 비교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명부’에 회사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조선인의 구체적인 직업을 밝히도록 한다. 먼저, 화중운수회사(華中運輸公司) 소속은 5명이다. 이 중에 나카노 기준(中野基淳)은 사원이고 도미타 토모미(富田致巳)²⁷와 리무라 타케오(李村武夫)²⁸는 운전수이다. 두 번째, 절공물산회사라는 동일 회사에 가장 많은 조선인이 소속되어 있다. 진화계림회 회장 기시지마 코미네²⁹(岸島子峰, 28세)가 절공물산회사 소속이다.³⁰ 『재지반도인명록』 4판 진화편에서 그는 진화계림회 이사장으로 소

26 중국에 있던 회사 이름이 당지에서 중국식으로 불렸는지 일본식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 편의상, 한국 한자 이름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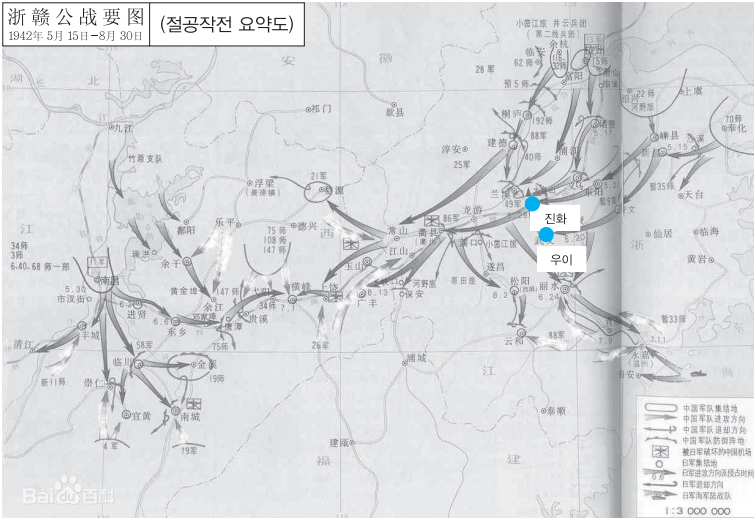
27 『재지반도인명록』(4판)에 실린 조선인은 거의 창씨개명한 성명이다.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와 제20호에 따라 6개월 이내로 모든 조선인이 씨를 새로이 만들고 이름 변경은 허가제로 한 황민화 정책이다. 이에 따른 조선인의 창씨개명 방식은 크게 세 종류이다. 성만 일본식 성으로 바꾸거나 성과 이름 모두를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어 부윤이나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거나, 새로운 씨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선 성을 그대로 일본 한자 발음으로 부르는 방식이었다. 이 글에서는 창씨개명한 성명을 표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읽히는 한자명으로 표기하였다. 일본 성씨는 같은 한자 성씨라도 읽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성씨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성씨는 『일본성씨대사전』(1997)에 따르면 291,129개라고 한다.

28 李村武夫는 진화계림회명부에는 李村載夫라고 되어 있지만 본적과 현주소가 일치하므로 동일인물이다.

29 子峰라는 일본인 이름은 일본야후 검색 결과 인명한자사전(kanji.reader.bz)에서는 검색물이 없고, 페이스북 사용자로 사이토(齊藤)라는 사람이 한 건 검색되었지만 한자발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읽어 표기하였다.

30 박정애가 앞의 논문에서 “명부 자체에는 계림회 회장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61쪽)한 것은 오류임을 밝혀둔다.

浙贛公战要图 (절공작전 요약도)
1942年 5月 15日~8月 30日



절공작전에서 굵고 진한 색 화살표 방향이 일본군의 진로. 위쪽 파란 점이 진화현, 아래쪽 파란 점이 우이현

그림 3 절공작전 요약도

개되어 있고 회사도 같다. 그런데 절공물산회사 소재지가 두 군데인데 허우가 (後街) 55호와 난시가(南市街) 32호이다. 먼저 허우가 55호에 소재한 절공물산 회사 소속으로 4명이 더 있다. 이 중에서 가나자와 히데키치(金澤秀吉, 28세)는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에서는 절공물산회사 이사장이고 이름이 가나자와 히 데오[金澤秀雄, 창씨 이전 김경재(金璟載)]이며 상해에 거주하고 있다. 이름 끝자 리가 다르지만, 가나자와는 둘 다 황주군으로 본적이 같다.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은 1943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명부’는 1944년 4월 현재 상황이니 그는 1943년에는 상해에 거주하다가 1944년 4월 현재 진화에 이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선인의 이동 경로는 <그림 3>의 일본군의 진로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일본군은 5월 20일부터 동으로는 항저우(杭州)에서 서로는 난창(南昌) 방면에서 양쪽으로 진격해 내 려오기 시작해서 동양(东阳), 이우, 용강(永康), 우이, 탕시(汤溪), 란시(兰溪) 등

계속 점령하면서 5월 28일 진화성구까지 입성한다. 여기서는 상해에서 진화로 이동한 조선인이 하나 확인되었지만 그 외는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진화성구 근황표」에 관한 자료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는 황자오핑(黃肇峰)³¹이라는 자가 국민당 우이현 현장 차이이밍(蔡一鳴)³²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내용은 1943년 6월 20일자 진화 성구(城区)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이다. 일본군이 진화를 점령하고 약 1년이 지난 시기이다. 황자오핑은 「진화성구 근황표」를 보내면서 일본군이 진화성구를 점령한 이래 상업 부문이 이미 적과 적을 이롭게 하는 무치한 무리(친일 중국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진화성구 근황표」에는 진화 시내에 있는 일본군 군사 시설과 주요 시설물에 관해서 소재지, 원 건물명과 현재 사용처(명칭), 책임관장이 친일세력인지 일본군인지를 구별해서 정리하고 있다. 일본군 시설로는 22사단부, 22사단 참모처, 7934연대부, 헌병대, 병기고 등이 있고, 그 외 일본군이 책임관장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는 화중철도회사, 화중광업회사(華中壙業公司) 진화출장소 창고, 백목회사(白木公司) 등이 있다. 또 “위안소(慰安所)”와 “군인클럽(軍人俱樂部)”이 일본군이 책임관장하고 있는 주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위안소는 야탕가에 있는 전화국과 후(胡○○) 변호사 주택에 설치하였고 군인클럽은 산파이팡(三牌坊)에 있는 승리반점(勝利飯店)을 접수하였다. 문제는 두 곳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서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안소’와 두 곳이 겹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홍지아샹(洪加祥)·황쯔지(黃子奇) 글(이하, 홍·황 글)에 따르면 진화 소재 위안소 5곳보다 “장교 클럽 위안소”가 조금 늦게 생

31 황자오핑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보고하는 지역이 란시시(兰溪市) 근교 시아양(下楊)이다. 본문 <그림 2>의 ③ 지도는 현재 행정명이지만 동일한 지명으로 판단된다. 진화시 당안판에는 일본군 점령시기 지도는 없고 1958년도 진화현 지도 4종류가 남아 있다.

32 자료에는 서류 형식상 우이현장의 성(姓)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름을 앞의 글 「螢乡血泪」(앞 신문 8면)에서 보완하였다.

겼다고 한다.³³ “장교 클럽 위안소”가 「진화성구 근황표」에 있는 ‘군인클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지적에 따르면 적어도 ‘명부’의 ‘군인클럽’과는 겹치지 않는다.³⁴ 다만 문제는 야탕가의 진화국과 변호사 주택을 이용한 위안소와 ‘명부’의 5곳 위안소의 소재지가 겹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탕가 소재 진화국과 변호사 주택의 번지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상 아직 소재 파악이 어렵다.³⁵

교차 비교에 앞서 일단 앞서 얘기한 ‘명부’에 나오는 위안소를 정리하면 모두 5곳이다. 진화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곳은 야탕가이다.³⁶ ① 야탕가 20호³⁷에 기쿠스이(菊水) 위안소가 있다. 홍·황 글에 따르면 1993년 11월 현지 조사 당시 건물 문 위에 “菊水”라는 검은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석환(河錫煥)이 경영자이고 히야마 덕진(檜山德晋)³⁸은 ‘관리자’로 보인다. 같은 주소에

-
- 33 홍지아상(洪加祥)·황쯔치(黃子奇), 「저장 일본군 위안소 비문(浙江日軍慰安所秘聞)」, 376쪽[구싱웨이(顧行偉) 편집, 1994, 『당대 사회 포커스 사진-《노동보》 특집 기사 정선(當代社會熱點寫真-《勞動報》大特寫精選)』, 중국공인출판사(中國工人出版社)], ‘진화계림회 명부’가 처음 발굴된 것은 1993년 11월경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보다 꽤 이른 시기이다. 두 필자가 진화 일대의 위안소를 조사하면서 진화시 당안관에서 ‘진화계림회 명부’를 발견하였고 이때 조사한 내용, 즉 ‘진화계림회 명부’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위안소 실태 조사가 상기 서적에 실려 있다. 나는 이 글 복사본을 2015년 11월 왕쑤엔(王選)에게서 제공받았다.
 - 34 홍·황 글에서 언급된 “장교 클럽”은 야탕가의 “西湖飯店(현재 城隍法院)”에 개설되었으며 일본 여성이 위안부였다고 한다(376쪽).
 - 35 일본군 점령시기의 야탕가 지도가 남아 있지 않은데다 중국은 행정구역이 상당히 바뀌어서 1940년대 지면을 현대의 것과 비교하여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진화국과 변호사 주택 소재지를 아직 찾기 못하였다. 또한 산파이팡도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군인클럽의 정확한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진화 성곽은 1990년대 재개발로 없어지고 지명에 일부 흔적만 남았다고 한다. 2015년 12월 방문했을 때 주민의 말에 따르면 야탕가 주변이 이미 상당히 변화했으며 조만간 재개발이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장소 확인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 36 중국 자료이긴 하지만, 위안소는 일본군과 군속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일본어 발음으로 불렀을 것이다. 따라서 위안소 이름은 일본어 표기로 하겠다.
 - 37 주소의 호수는 ‘명부’ 자료에 있는 당시의 것이다.
 - 38 진화계림회 명부에서는 원자료는 이미지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성이 檜小인

17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 ② 야탕가 31호(현재 진화5중학교 기숙사)³⁹에 긴센칸(金泉館)⁴⁰이라는 위안소가 있다. 기가와 창현(木川昌賢)⁴¹이 주인이고 도요시마(豊島英澤)가 관리인으로 보인다. 17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 ③ 야탕가 38호(현재 21호)에는 하나니쿠즈키(花肉月)⁴²라는 위안소가 있다. ‘명부’에는 위안소 이름과 업자 이름이 없지만,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 진화편에는 가네모토(金本一成, 본적 평북 철산군)가 야탕가 38호에서 하나니쿠즈키를 하고 있다. ‘명부’는 1944년 4월 현재 상황이고 제4판은 1943년 6~11월 상황이므로 ‘명부’에 경영자 이름이 없는 것은 누락되었거나 경영자가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바뀌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에는 28명의 여성 이름이 있다.⁴³ ④ 야

지 檜山인지 명확하지 않다. 추후 당안관 원본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필사본에는 한자가 檜小徳普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 진화편에서 檜山貞治라고 되어 있다. 둘 다 본적이 해주군인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로 추정되지만 히야마는 사다하루(貞治)라는 이름이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다. 다만 貞治가 ‘사다하루’가 아니라 개명하기 전의 ‘정치’라는 이름일 수 있다. 또 徳普은 일본인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 조합이므로 현재로서는 동일인물인지의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재지반도인명록』(2~4판)을 분석한 결과 창씨개명하면서 처음엔 성만 바꿨다가 나중에 이름까지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부기해 둔다.

- 39 야탕가 위안소 5곳 중에 4곳에 괄호 안 현재 주소 기준은 1993년 11월 흥·황의 조사 당시이다.
- 40 속칭 팡유엔(芳園)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앞의 흥·황 글, 375쪽.
- 41 『재지반도인명록』 제4판 진화편에는 기가와 창현 이외에 기가와 창서(木川昌瑞)가 있는데, 창현과 본적(평양)도 같고 현주소도 동일하다. 이름으로 보아 친형제거나 사촌형제로 추정된다. 1943년 6~11월 사이에는 창서와 창현이 긴센칸에 같이 있었는데 1944년 4월 현재 창현이 주인으로 남아 있다. 창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가와와는 창씨만 하고 일본어 개명은 하지 않은 듯하다. 당시 이름을 조선어로 발음했는지 일본음으로 발음했는지 알 수 없어 여기서는 조선어 표기로 해둔다.
- 42 흥·황 글에 따르면 기쿠즈키(菊月) 혹은 우지양로우(婺江樓)위안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고 한다. 여러 이름으로 불린 이유는 알 수 없다.
- 43 28명의 이름 중에 최상두(崔相斗)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머지는 명백하게 여자 이름이다.

근거하여 진화에 조선인 업자가 운영했던 위안소 현황이 밝혀졌다. 이에 더하여 자료 「진화성구 근황표」 발굴에 따라 명확해진 점은 적어도 1943년 6월 진화에서 일본군이 책임관장으로 운영했던 위안소와 장교용 오락시설(위안소 포함)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V. 맺음말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명부’의 위안소와 ‘근황표’의 위안소 소재지를 밝혀 두 자료에 명기된 위안소가 별개의 것인지 혹은 중첩되는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둘째, 중국인 연구자 홍·황 글과 당의 글에서 언급한 장교클럽 “시후호텔(西湖飯店)”과 「진화성구 근황표」의 성리호텔(勝利飯店)에 개설한 군인클럽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도 소재지 파악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중국 당안관 소장 자료는 앞으로 더욱 발굴에 힘써야 하며 조사 대상은 위안소제도·위안부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내용까지로 범위를 넓혀 자료 발굴과 연구가 동시에 심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와 달리 중국 자료 수집은 한중 정치외교 관계와 밀접하고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또 중국 당안관은 자료 열람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도 하다. 일례로 개인 외국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할 때 중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안관에 따라서는 대학 외사와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⁴⁸ 조사 여건 자체가 까다롭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 자료 발굴은 좀 더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자료 조사는 위안소·위안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일본군과의

48 외사와 추천서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등 대학 추천서보다 자격과 결재 등이 까다롭다.

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 소재 당안관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 지역 당안관은 해당 당안관에서 직접 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열람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당안관과의 교류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중국 중부 및 이남 지역에 소재한 당안관에는 민국시기(1912~1949) 중국어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⁴⁹ 자료 조사에 중국어만 능하다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조사 경험상 위안소제도·위안부 연구자와 중국어 가능자를 조사팀으로 꾸려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 정부기관(외교부)의 협조하에 자료를 수집해본 적도 있고 개인 연구자로서 수집해 본 경험에서 말하자면 한국정부기관의 현지 협조가 매우 유효하였다. 자료 수집비 등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는 특히 한중 정부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외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프로젝트 수행 기관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상호 협조하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후세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제공 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49 중국 정부가 민국시기 자료 공개 범주를 선별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15~2017년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자가 일본군 범죄행위나 위안부 관련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매우 까다롭게 대응하고 있었다. 다만 방문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읽기

– 김형종(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장배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 I. 1880년대 한중관계와 국경회담 연구의 필독서
- II. 경진개척과 함경도 지방당국의 개척지 경영
- III. 1885·1887년의 국경회담과 차지안치론
- IV. 학문공동체의 논의와 사실 확인

I. 1880년대 한중관계와 국경회담 연구의 필독서

1885년과 1887년의 제1·2차 조선-청 양국의 공동 국경조사와 국경회담을 다룬 저자의 책은 574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짧은 논문 차원에서는 담기 어려운 국경회담 실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다. 특히 이 책은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자료총서 제17, 총 1,163쪽)이라는 사전 작업을 통해 기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바탕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 두 책은 모두 관련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로서 주목할 성과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사료의 원문을 가능한 한 모두 끌어와 쓰다 보니, 생각 밖으로 문장이 늘어져서 깔끔한 내용이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¹ 했는데, 사실 서평을 쓰는 입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특히 서평자의 역량 측면에서 깔끔한 내용이 되기 쉽지 않다. 이 서평은 이 역저에 대한 본격적인 서평이라기보다는 저자가 거론한 사항과 문제 중 일부를 음미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연구사 개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각주와 참고문헌만으로도 큰 미덕을 가진 책이다. 저자는 근래 본격적인 학술연구와 토론을 위한 학술토대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었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청말 시기의 조선-청 국경·영토 관련 자료는 이미 정리가 거의 끝난 셈이나 마찬가지”다.² 그러나 여전히 연구에 미진한 점이 있고 진작에 불식될 수 있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사

1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iv쪽.

2 김형중, 2018, 위의 책, 13쪽.(이하 김형중, 2018, 00쪽으로 표시)

실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자료집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충분히 이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료집들이 대부분 최근에 와서야 공개되었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다.”³

저자는 이 책의 의도가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파악과 전달”이라며 이 책이 “약간의 새로운 자료나 사실의 확인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기본적인 방대한 사실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서술 작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⁴ 저자는 “기초적인 사실의 재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연구의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충분히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재현은 “내셔널리즘의 강한 영향력” 등으로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나 오독이 넘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한 학술적 절차타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렇게 저자의 학술적 목표는 기초적인 사실의 재구축과 그를 통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와 오독의 방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경진개척과 함경도 지방당국의 개척지 경영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공들여서 설명하고 추론한 부분은 ‘경진개척’과 함경도 지방당국의 ‘식민지 경영’일 것이다. 저자는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洪南周)가 독단으로 추진한 ‘경진개척(庚辰開拓)’ 이후 두만강 중류지구 북안으로 대규모의 조선백성이 월간하는 단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⁶ “경진개척이란 1880년 회령부사로 부임한 홍남주의 묵인하에 진행된 두만강 북안으로의 대

3 김형중, 2018, 14쪽.

4 김형중, 2018, 18·36쪽.

5 김형중, 2018, 14쪽.

6 김형중, 2018, 33쪽.

규모 월경·개간이었다. 이 경진개척에 관한 유일한 사료로 정해지는 것은 윤병석 교수가 전체를 소개한 윤정희(尹政熙)의 회고록 『간도개척사』이다.”⁷ 이에 따르면, “경진개척”을 통해 1880~1881년 사이 두만강 상·중류 북부 지역으로 조선백성의 대규모 월간과 이주가 이루어진 것”이다.⁸ 1880년대 회령부사 홍남주라는 지방관의 적극적인 월간 장려 정책 때문에 함경북도 지역 경제 전체가 ‘강북(江北)’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진개척은 “함경북도 주민의 월경·월간의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방당국이 실질적으로 “세금의 수납과 잡역의 수응이 내·외지의 차이가 없는” ‘개척지 경영’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무사나 관찰사 등 함경도 상층당국도 줄곧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두만강 건너편의 ‘개척지’가 간도(間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진개척 이후 함경북도 “지역의 농업과 경제는 분명하게 두만강 북부의 ‘간도’에 심각하게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 제2차 국경회담을 진행한 이중하는 간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간도(間島)는 중성과 온성 사이에 두만강의 지류가 있는 곳에서 몇 궁(弓)을 넘지 않는 (좁은) 땅을 말합니다.…… 통칭 간도라고 부르는 것은 즉 애초에 개간을 시작한 곳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물 가운데 섬이 되는 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¹¹ 이중하는 ‘경진개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정축(1877)년부터 분거하던 사람들이 누차 호소하는 글을 올려 비로소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간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서술하였다.¹² “간도토지대장”을 「간도야초(間島野草)」라 제명(題名)

7 김형중, 2018, 77쪽.

8 김형중, 2018, 92쪽.

9 김형중, 2018, 477쪽.

10 김형중, 2018, 240쪽.

11 김형중, 2018, 256쪽.

12 김형중, 2018, 259쪽.

하니 이것이 바로 간도라는 명칭의 원인이다.”¹³ 이러한 “『간도개척사』의 설명은 어쩌면 가장 유력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저자는 이에 대해 ‘간도’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⁴

저자는 “두만강 북쪽 조선월간민의 존재양태는 단순하게 생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빈민의 월경이라는 기왕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셈이다.…… 일종의 식민지 개척과 경영을 시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¹⁵ 본다. 요컨대 조선월간민의 월경은 함경도 지방당국의 ‘식민지 경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개척지 경영’이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간도한인들의 생존권적 이해가 깔려 있었다”고 진단한 긍정태의 견해에 대해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감추고 있었지만, 진영의 보고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현지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분석·추론은 일단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⁶ 이러한 자료들, 특히 공문서로 확인된 정보들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간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개척지 경영’이라는 추론에 머물고 있지만 비교적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에 따르면, 1880년대의 국경회담 때 “논쟁의 초점은 결국 두만강 북쪽 너머의 간도지역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를 따지는 것이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역사적 근거(백두산정계비와 압록강·두만강의 상류)를 찾아서 공동감계를

13 김형중, 2018, 81쪽.

14 김형중, 2018, 92쪽.

15 김형중, 2018, 424쪽.

16 김형중, 2018, 425쪽.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답판을 나누었다.¹⁷ “경진개척과 그 이후의 공동감계·국경회담은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로서의 확립을 위한 영토 확보 내지는 일종의 ‘식민지화’를 노린 확장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월경민의 구휼을 요청하는 천조상국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관리들이 전통적인 중화질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¹⁸ “경진개척과 그 이후의 감계·회담의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사이의 분쟁에서는 ‘만국공법’에 기초한 근대국민국가의 주권·영토·국민에 대한 논리와 전통적 중화질서(사대질서)의 ‘사대-자소’의 논리가 아주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혼재하게 되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혼재’는 과도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청-조선 관계는 전통적인 사대-자소의 중화질서에서 점차 만국공법에 기초한 국제법적 질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에 들어가고 있었다.”²⁰ 이 연구는 한편으로 외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의 사상지형을 보여준다.

저자는 “천조상국과 속방 사이의 불균형·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국공법적 근대질서로의 전환을 피하는 조선 측의 시도는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고²¹ 한다. 동시에 국경사뿐 아니라 이주사로 접근하는 측면도 지적한다. 그런 차원에서 “1880년대 전후 조선인의 해외 이주사는 최근 해외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주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의 특이한 사례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명한다.²² 몇몇 연구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의화단운동 전후에 “만주 지역 청조 권력의 공백화를 배경으로 만국공법적 시각이 크게 보급되면서 조선월간민의 존재를 이제는 ‘범월’이 아닌 ‘이주’로 간주하

17 김형중, 2018, 2쪽.

18 김형중, 2018, 90쪽.

19 김형중, 2018, 91쪽.

20 김형중, 2018, 480쪽.

21 김형중, 2018, 480쪽.

22 김형중, 2018, vi쪽.

는 관점이 출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청-조선 역학관계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시각을 낳을 수 있게 하였”다고²³ 추론한다.

III. 1885·1887년의 국경회담과 차지안치론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조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심화되었는데 “그 가까운 기원을 따져보면 청조의 新疆 지배체제 붕괴를 틈탄 1871년 러시아의 일리 점령에서 비롯되었다.”²⁴ “광서 7년(1881) 2월 증기택(曾紀澤)이 러시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하여 위기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청조는 보다 장기적인 변경방어 강화를 위한 이민실변(移民實邊), 즉 백성을 이주시켜 변경지역을 튼튼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²⁵ 오대징(吳大澂)은 광서 8년(1882) 초 영고답으로 이동하여 특히 이민실변을 위한 둔간사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금용이 지시를 받고 두만강 북안 약 2백 리의 지역을 조사하여 대규모 조선월경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니고, 오대징이 길림 동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실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결과 파생된 부산물임을 알 수 있다.”²⁶

앞서 요약한 바와 같이 때마침 1880년 회령부사로 부임한 흥남주는 ‘경진개척’을 단행하여 두만강 너머에 조선인 월경민의 개척지를 만들었다. 오대징의 이민실변과 흥남주의 경진개척이 1880년대 공동국경조사와 국경회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경회담 시기의 한중관계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선 측의 문제 제기는 청조의 적극적인 간섭

23 김형중, 2018, 331쪽.

24 김형중, 2018, 92쪽.

25 김형중, 2018, 97쪽.

26 김형중, 2018, 100쪽.

정책에 대한 조선 나름의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1885년의 국경회담이 ‘경진개척’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함경북도 지방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방관들의 요청에 따라 어윤중이 공감한 결과로 본다고 생각된다. 주목되는 점은 “문제 제기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중앙관료가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저자도 지적했다시피 1881년 초 총리아문이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조선에게 서구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조선정책을 전담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의 의정(議定)과 더불어 시작된 사실상 조선에 대한 청조의 적극적인 개입 방침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²⁷ “특히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이러한 양국 관계 변모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 현실화된다는 것 역시 기존연구에서 널리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²⁸

여기서 문제는 조선 측의 준비 부족과 정보 부실과 정부 차원의 대응력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사실상 공동감계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아래 체계적인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²⁹ 이중하는 “어윤중의 성급한 변계문제의 제기와 주도가 도리어 “우리의 가장 존엄한 땅”을 위협받게 만든 중대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³⁰ 저자도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제 1차 공동감계에서 사전에 지리적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 측은 종전에 내세운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³¹ “조선정부는 이러한 변계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논의

27 김형중, 2018, 207쪽.

28 김형중, 2018, 123쪽.

29 김형중, 2018, 175쪽.

30 김형중, 2018, 384쪽.

31 김형중, 2018, 498쪽.

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담당자나 정권 실세의 교체에 따른 개인 차원의 정책선택에 맡겨 두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과의 변계문제 교섭에서 결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없었다.”³²

1885년 제1차 공동감계에서 중국 측의 “‘토문-두만양강론’ 비판과 ‘정계비 이설론’을 보면 조선 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길림 측의 주장 역시 정확한 지식과 잘못된 정보·추측 사이를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조선 측의 ‘두만-토문양강론’이 잘못된 지리정보에 기초한 오류였다고 한다면, 정계비 ‘이설론’ 역시 정계 당시 목극등의 ‘실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측에 근거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³⁴ 정계비를 세운 장소에 있는 물길이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대로 두만강의 상류를 확인하지 못한 목극등의 실수,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린 조선 측의 얼버무림 때문이다.”³⁵

저자에 따르면,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土門江’은 바로 ‘송화강’의 원류가 되고, 비문의 내용대로라면 송화강의 남쪽이 모두 조선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 측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계속 이후에도 여전히 정계비의 신뢰성을 트집을 잡거나 ‘移設’되었다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 측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천조상국’에 내세울 수는 없었다.”³⁶ 길림성 관리들은 목극등이 세운 “비석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장래에도 의혹으로 남아 또 다른 말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송화강에도 방해가 된다”고 했다. 이것은 “정계비가 공동감계·국경회담에 임한 중국 측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 즉 아킬레스건이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 제1·2차

32 김형중, 2018, 324쪽; 325쪽.

33 김형중, 2018, 209쪽.

34 김형중, 2018, 166쪽.

35 김형중, 2018, 27쪽.

36 김형중, 2018, 218쪽.

공동감계·국경회담에서 중국 측의 대응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정계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³⁷ 사실 목극 등에 대한 비판은 중국 학계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성과의 하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극등의 변방 조사는 중국이 적지 않은 영토를 잃게 하였고, 특히 장백산의 절반을 잃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이후 수백 년 동안의 변방 경계 논쟁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³⁸ 물론 이증하가 1880년대 당시에 “백두산의 반이 조선에 속해 있다(白山之半屬朝鮮)”(김형중, 2014, 477쪽)고 공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식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1880년대의 국경회담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고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712년 당시 정계비와 돌무더기 등을 인정한다면 당시에 타협을 이룰 수도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길림당국의 강경한 태도와 만주 황실의 발상지 명분 계기로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당시 “가경연간(1796-1820)에 세워진 백두산신묘가 있다”는³⁹ 것 등을 근거로 이증하는 ‘홍단수경계론’을 비판했지만, “홍토산수가 경계가 된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중국 관원 세 명이 함께 머리를 모으고 기세를 올려 계속해서 말하면서 강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증하는 “큰 소리로 ‘제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나라의 영토를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옛 기록에도 있는 바인데, 어찌 이렇게 서로 강요하십니까?’라고 완강한 거부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증하의 확고한 태도에 방랑 역시 “강토의 중요함은 서로 마찬가지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제2차 공동감계에 나섰던 이증하가 보기에 “공동재감계는 옛날의 경계를

37 김형중, 2018, 390쪽.

38 楊昭全·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6쪽.

39 김형중, 2018, 313쪽.

40 김형중, 2018, 360·367쪽.

밝히는 것, 즉 ‘두만강경계론’을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 공동감계에서 주장하였던 ‘토문강경계론’으로 얼마간의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기대’도 이미 무너졌고, 더구나 조선 측에서 제안한 ‘차지안치론(借地安置論)’도 이미 거부를 당하였으므로 공동감계에 나서더라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⁴¹ 이중하는 월경민들에 대한 처리에 부심하였다. “두만강 북쪽으로 조선족이 이주하는 과정과 정책에서 1890년대 초반의 시기는 하나의 중요한 획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길림당국은 처음부터 모색해 오던 조선월간민에 대한 동화정책을 이때 적극적으로 수행할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비록 조선월간민의 이주(즉 以韓實邊)이기는 하지만 ‘이민실변’ 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를 확보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² 저자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척지 개발은 결과적으로 청조의 이민실변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고, 청조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었던 덕분에 조선월경민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경민들은 간도에 터를 잡았고, 조선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대국가로 탈바꿈해가고 있었다.

IV. 학문공동체의 논의와 사실 확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80년대 조선 당국자들은 ‘경진개척’과 ‘토문-두만 양강론’, ‘차지안치’론 등을 제기하며 조선월경민을 포용하고 국익을 지키려고 부심하였다. 이것은 청조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서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근거 없는 주장들을 걸러내려고 노력한 논저로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취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당사자 모두가

41 김형중, 2018, 336쪽.

42 김형중, 2018, 463쪽. 여기서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 학계에서 ‘정계비 이설론’이 오래도록 회자되었다면, 한국에서는 ‘토문강=송화강’ 설이 회자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토문강=송화강’ 설은 제1차 공동감계 이후 조선정부에 의해 폐기되었으나, 1894년의 청일전쟁과 뒤이은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다시 부활하여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⁴³ 이런 학술적인 문제는 학문공동체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이 점에서 저자의 역주와 저술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문제들보다 잠재적으로 제기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예컨대, 자료집에 나오는 남강(南岡, 즉 延吉지방)과 북강(北岡) 중에서 북강이 어디인지⁴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여러 군데서 엄격한 학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번역의 정확도 문제가 그 하나다. 저자는 “중국 측 자료를 탐색하던 중 가장 중요한 문헌 가운데 하나인 오록정(吳祿貞)의 『연길변무보고(延吉邊務報告)』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이 너무 무성의하게 이루어져 도저히 참고자료로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 비슷한 지적도 있다. “李重夏의 『勘界使騰錄』은 이왕무 등, 『역주 감계사등록』 상·하(동북아역사재단, 2008, 2010)로 번역본이 나와 있으며, 이중하 및 『勘界使騰錄』에 대해서는 이 책의 解題(pp. 80-54)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역주 감계사등록』은 원문의 표점·번역에 부적절하거나 오류인 곳이 많아 이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⁴⁵ 여러 모로 이 저작은 학계에 자극을 주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여러 전문가들

43 김형중, 2018, 28쪽.

44 김형중, 2014,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08쪽.

45 김형중, 2018, 141쪽.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자료집과 연구성과는 자료검토와 역사적 현실의 진중한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연구의 표본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의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

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대외협력처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실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9호(2018. 3)

초판 1쇄 인쇄 2018년 3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3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